

계간 KIPF 재정동향

제1권 제4호(통권 제4호)

2010년 11월

[목차]

| | |
|---------------------------------|----|
|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5 |
| I. 재정정책 동향 | 7 |
| 1. 2010회계연도 집행 | 7 |
| 2. 2011회계연도 계획 | 8 |
|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8 |
| 4. 최근 재정상황 | 19 |
| II. 이슈 및 분석 | 24 |
| 1.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 손원익 | 24 |
| 2.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시스템 / 원종학 | 36 |
| III. 국내외 보고서 | 48 |
| 1. 주요 보고서 요약 | 48 |
| 2. 보고서 목록 | 67 |

| | |
|--|-----|
|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 83 |
| I. 주요국 동향 | 85 |
| II. 미국 (FY2011: 2010.10~2011.9) | 88 |
| III. 일본 (FY2010: 2010.4~2011.3) | 95 |
| IV. 영국 (FY2010-11: 2010.4~2011.3) | 106 |
|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 119 |
| VI. 독일 (FY2010: 2010.1~2010.12) | 133 |
|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 145 |
| VIII. 호주 (FY2010-11: 2010.7~2011.6) | 158 |
| | |
|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 169 |
| I. 미국 (2010년 9월 기준) | 171 |
| II. 일본 (2010년 8월 기준) | 176 |
| III. 영국 (2010년 9월 기준) | 182 |
| IV. 프랑스 (2010년 9월 기준) | 187 |
| V. 독일 (2010년 6월 기준) | 191 |
| VI. 캐나다 (2010년 8월 기준) | 196 |
| VII. 호주 (2010년 8월 기준) | 201 |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I. 재정정책 동향

II. 이슈 및 분석

III. 국내외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1. 2010회계연도 집행 (10월까지의 집행실적)

-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 현재 주요사업비 271.3조 원 중 219.8조원을 집행(진도율 81.0%)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175.1조원 중 146.0조원 집행(진도율 83.4%)
 - 기금은 31.3조원 중 24.2조원 집행(진도율 77.2%)
 - 공공기관은 64.9조원 중 49.6조원 집행(진도율 76.6%)

〈표 1-I-1〉 월별 재정집행 추이

| 구 분 | 조기집행 대상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금액(조원) | | | | | | | | | | | |
| 합 계 | 271.3 | 24.5 | 50.9 | 84.1 | 108.6 | 131.2 | 165.4 | 178.6 | 190.0 | n.a. | 219.8 |
| 예 산 | 175.1 | 16.0 | 34.9 | 57.8 | 74.3 | 88.6 | 109.3 | 117.9 | 125.9 | n.a. | 146.0 |
| 기 금 | 31.3 | 2.5 | 5.1 | 8.8 | 11.9 | 14.4 | 18.2 | 19.7 | 20.9 | n.a. | 24.2 |
| 공공기관 | 64.9 | 6.0 | 10.9 | 17.5 | 22.4 | 28.2 | 38.0 | 41.0 | 43.2 | n.a. | 49.6 |
| 진도율(%) | | | | | | | | | | | |
| 합 계 | - | 9.0 | 18.8 | 31.0 | 40.0 | 48.4 | 61.0 | 65.8 | 70.0 | n.a. | 81.0 |
| 예 산 | - | 9.1 | 19.9 | 33.0 | 42.4 | 50.6 | 62.4 | 67.3 | 71.9 | n.a. | 83.4 |
| 기 금 | - | 8.0 | 16.3 | 28.1 | 38.0 | 46.0 | 58.1 | 62.9 | 66.8 | n.a. | 77.3 |
| 공공기관 | - | 9.2 | 16.8 | 27.0 | 34.5 | 43.5 | 58.6 | 63.2 | 66.6 | n.a. | 7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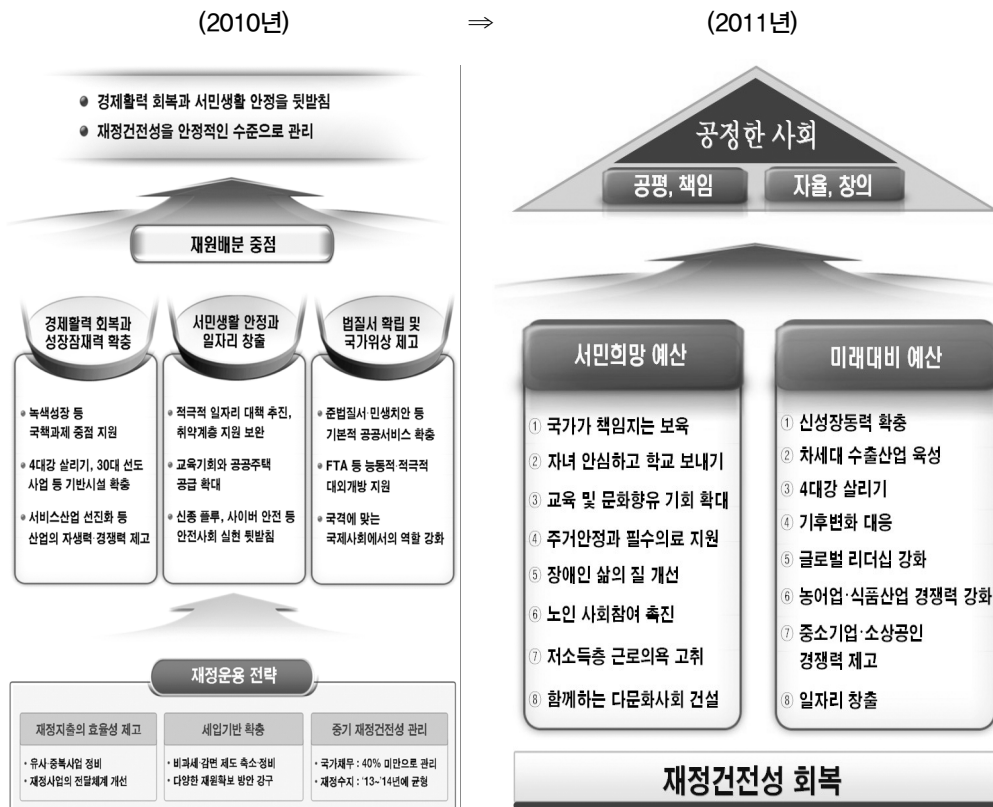
- 금년중에 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1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준비를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도 국가재정이 우리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2. 2011회계연도 계획

가.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 9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10. 1(금) 국회제출
- 재정운용방향 : 2010년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의 3대 재정운용 전략 등 재정건전화 기초에서, 2011년에는 개선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구현’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을 보다 구체화



□ 2010년 재정의 모습

○ 세입 전망 : 2011년 총수입은 2010년 예산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으로 전망

(단위: 조원, %)

| | '09 | | '10 (B) | 증감률 ¹⁾ (B/A) | '11안 (C) | 증감률 (C/B) |
|---------------------|--------|-------|------------|----------------------------|-------------|--------------------|
| | 본예산(A) | 추경 | | | | |
| ◇ 총수입 ²⁾ | 291.0 | 279.8 | 290.8 | Δ0.1 | 314.6 | 8.2 |
| ○ 예 산 | 196.9 | 185.7 | 194.8 | Δ1.1 | 212.3 | 9.0 |
| - 국 세 | 175.4 | 164.0 | 170.5 | Δ2.8 | 187.8 | 10.2 ³⁾ |
| - 세외수입 | 21.5 | 21.7 | 24.3 | 13.0 | 24.5 | 0.6 |
| ○ 기 금 | 94.1 | 94.1 | 96.0 | 2.1 | 102.3 | 6.5 |
| * 조세부담률 | 21.6 | 20.5 | 19.3 | - | 19.3% | - |

주: 1) 증감률은 '09년 본예산 대비

2) 통합재정수입(총수입-용자수입): ('10년)262.4→('11안)285.0조원(8.6% 증)

3) '10년 국세수입 전망(175.0조원) 대비로는 7.3% 증가

○ 지출 규모 : 2011년 총지출은 2010년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으로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개선

(단위: 조원, %)

| | '09 | | '10 (B) | 증감률 (B/A) | '11안 (C) | 증감률 (C/B) |
|---------------------|--------|-------|------------|--------------|-------------|--------------|
| | 본예산(A) | 추경 | | | | |
| ◇ 총지출 ¹⁾ | 284.5 | 301.8 | 292.8 | 2.9 | 309.6 | 5.7 |
| ○ 예 산 | 204.1 | 210.3 | 205.3 | 0.6 | 215.9 | 5.2 |
| ○ 기 금 | 80.4 | 91.5 | 87.5 | 8.8 | 93.7 | 7.0 |

주: 1) 통합재정지출(총지출-용자수입): ('10년)264.4→('11안)280.0조원(5.9% 증)

○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금년보다 개선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SECTION 1 >>

(단위: 조원)

| | '09 | | '10 | '11안 |
|---------------------------------------|-----------------|-----------------|--------------------|-----------------|
| | 본예산 | 추경 | | |
| ■ 관리대상수지 ¹⁾ (GDP 대비, %) | △24.8 (△2.4) | △51.0 (△5.0) | △30.1 (△2.7) | △25.3 (△2.0) |
| ■ 국가채무 (GDP 대비, %) | 349.7 (34.1) | 366.0 (35.6) | 407.2 (36.1) | 436.8 (35.2) |
| ■ 일반회계 국채 | 19.7 | 35.5 | 29.3 | 22.0 |
| ■ 경제성장률 | 4.0% | △2.0% | 5%내외 ²⁾ | 5%내외 |

○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안 (예산+기금)

(단위: 조원, %)

| | '09 ¹⁾ | '10 | '11안 | |
|----------------|-------------------|-------|--------------------|-------------------------|
| | | | 증가율 | 증가율 |
| 1. R&D | 12.3 | 13.7 | 11.0 | 8.6 |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6.2 | 15.1 | △6.7 ²⁾ | 0.4 ³⁾ |
| 3. SOC | 24.7 | 25.1 | 1.5 | △3.2 |
| 4. 농림수산물 | 16.9 | 17.3 | 2.4 | 2.3 |
| 5. 보건·복지 | 74.6 | 81.2 | 8.9 | 6.2 |
| 6. 교육 | 38.2 | 38.3 | - | 8.0³⁾ |
| 7. 문화·체육·관광 | 3.5 | 3.9 | 12.2 | 5.0 |
| 8. 환경 | 5.1 | 5.4 | 6.3 | 5.0 |
| 9. 국 방(일반회계) | 28.5 | 29.6 | 3.6 | 5.8 |
| 10. 외교 통일 | 3.0 | 3.3 | 13.1 | 9.0 |
| 11. 공공질서·안전 | 12.3 | 12.9 | 5.1 | 5.3 |
| 12. 일반공공행정 | 48.6 | 48.7 | 0.1 | 9.3 |
| ◆ 총지출 | 284.5 | 292.8 | 2.9 | 5.7 |

주: 1) 본예산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제외시 12.4% 증가

3)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5.2% 증

4)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10)89.6→('11안)95.5조원 (6.6% 증)

□ 한편, 정부는 2011년 예산안 이외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전략을 담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국회에 제출

○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원투명성 제고

- 지출생산성 제고
 - 재량지출 구조조정 :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여 구조조정
 - 기획·편성·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준수
- 재정규율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
 -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절차 내실화 등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기획재정부 협의 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정비('11 회계연도 결산부터 IMF GFS '01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 등 관리체계 정비
- 중기 재정총량 전망
 -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7.7%)보다 2.9%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
 - 2009~2013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개선하여 2014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

SECTION 1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 | '09 | | '10 | '11 | '12 | '13 |
|-------------|--------------|--------------|--------------|--------------|--------------|--------------|
| | 당초 | 추경 | | | | |
| 실질성장률(%) | 4.0 | △2.0 | 4.0 | 5.0 | 5.0 | 5.0 |
| 재정수입(조원) | 291.0 | 279.8 | 287.8 | 309.5 | 337.6 | 361.7 |
| • 국세수입(조원) | 175.4 | 164.0 | 168.6 | 182.1 | 199.8 | 219.5 |
| 조세부담률(%) | 21.6 | 20.5 | 20.1 | 20.1 | 20.4 | 20.8 |
| 재정지출(조원) | 284.5 | 301.8 | 291.8 | 306.6 | 322.0 | 335.3 |
| 관리대상수지(조원) | △24.8 | △51.0 | △32.0 | △27.5 | △16.1 | △6.2 |
| (GDP 대비, %) | (△2.4) | (△5.0) | (△2.9) | (△2.3) | (△1.3) | (△0.5) |
| 국가채무(조원) | 349.7 | 366.0 | 407.1 | 446.7 | 474.7 | 493.4 |
| (GDP 대비, %) | (34.1) | (35.6) | (36.9) | (37.6) | (37.2) | (35.9) |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 | '10 | '11 | '12 | '13 | '14 |
|-------------|--------------|--------------|--------------|--------------|--------------|
| 실질성장률(%) | 5.8 | 5.0 | 5.0 | 5.0 | 5.0 |
| 재정수입(조원) | 290.8 | 314.6 | 342.9 | 365.1 | 390.9 |
| • 국세수입(조원) | 170.5 | 187.8 | 204.2 | 221.1 | 241.7 |
| 조세부담률(%) | 19.3 | 19.3 | 19.5 | 19.6 | 19.8 |
| 재정지출(조원) | 292.8 | 309.6 | 324.8 | 337.7 | 353.0 |
| 관리대상수지(조원) | △30.1 | △25.3 | △14.3 | △6.2 | 2.7 |
| (GDP 대비, %) | (△2.7) | (△2.0) | (△1.1) | (△0.4) | (0.2) |
| 국가채무(조원) | 407.2 | 436.8 | 468.1 | 485.7 | 492.2 |
| (GDP 대비, %) | (36.1) | (35.2) | (35.1) | (33.8) | (31.8) |

○ 중기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 | '09 | '10 | '11 | '12 | '13 | 연평균 |
|----------------|-------|-------|-------|-------|-------|-------------|
| 1. R&D | 12.3 | 13.6 | 14.9 | 16.6 | 18.4 | 10.5 |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6.2 | 14.4 | 15.1 | 15.9 | 17.0 | 1.3 |
| 3. SOC | 24.7 | 24.8 | 25.3 | 25.9 | 26.7 | 2.0 |
| 4. 농림수산식품 | 16.9 | 17.2 | 17.4 | 19.2 | 17.6 | 1.2 |
| 5. 보건·복지 | 74.6 | 81.0 | 85.3 | 90.7 | 96.9 | 6.8 |
| 6. 교육 | 38.2 | 37.8 | 40.7 | 44.3 | 48.3 | 6.0 |
| 7. 문화·체육·관광 | 3.5 | 3.7 | 3.8 | 3.9 | 4.0 | 3.4 |
| 8. 환경 | 5.1 | 5.4 | 5.5 | 5.7 | 5.8 | 3.5 |
| 9. 국방(일반회계) | 28.5 | 29.6 | 30.9 | 32.3 | 33.7 | 4.2 |
| 10. 통일·외교 | 3.0 | 3.4 | 3.4 | 3.4 | 3.4 | 3.6 |
| 11. 공공질서 및 안전 | 12.3 | 12.9 | 13.2 | 13.7 | 14.0 | 3.3 |
| 12. 일반행정 | 48.6 | 49.5 | 52.7 | 54.0 | 54.8 | 3.0 |
| ◆ 총 지출 | 284.5 | 291.8 | 306.6 | 322.0 | 335.3 | 4.2 |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 | '10 | '11 | '12 | '13 | '14 | 연평균 |
|----------------|-------|-------|-------|-------|-------|------------|
| 1. R&D | 13.7 | 14.9 | 16.6 | 18.1 | 19.1 | 8.7 |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1 | 15.2 | 15.5 | 16.0 | 16.0 | 1.4 |
| 3. SOC | 25.1 | 24.3 | 22.4 | 22.9 | 23.5 | △1.7 |
| 4. 농림수산식품 | 17.3 | 17.7 | 18.2 | 16.9 | 17.6 | 0.5 |
| 5. 보건·복지·노동 | 81.2 | 86.3 | 92.8 | 98.1 | 102.4 | 5.9 |
| 6. 교육 | 38.3 | 41.3 | 44.9 | 48.2 | 52.1 | 8.0 |
| 7. 문화·체육·관광 | 3.9 | 4.1 | 4.2 | 4.2 | 4.3 | 2.7 |
| 8. 환경 | 5.4 | 5.7 | 5.7 | 5.7 | 6.0 | 2.4 |
| 9. 국방(일반회계) | 29.6 | 31.3 | 32.9 | 34.2 | 35.6 | 4.8 |
| 10. 외교·통일 | 3.3 | 3.7 | 3.9 | 4.2 | 4.5 | 7.7 |
| 11. 공공질서·안전 | 12.9 | 13.6 | 14.2 | 14.3 | 14.7 | 3.2 |
| 12. 일반행정 | 48.7 | 53.2 | 57.1 | 59.5 | 62.8 | 6.5 |
| ◆ 총 지출 | 292.8 | 309.6 | 324.8 | 337.7 | 353.0 | 4.8 |

나. 정부예산안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0년 10월호)

- 경제전망이 다소 낙관적이지만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
 - 정부의 2011년 및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지만, 절대수준은 여전히 확장적인 가운데 2011년 예산안의 정책기조가 금년 본예산의 기조에 비해 소폭이나마 긴축적인 것은 적절
 -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세계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내년 및 2012년 이후 정부의 경제성장률 5%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정도는 아님
 - 정부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5.8%는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전망치 평균(5.9%)과 거의 동일하지만, 2011년 정부 전망치 5.0%는 국내외 전망치 평균 4.3%에 비해 높음
 - 2012년 이후 성장률 5%도 IMF의 중기전망치보다 1%p 정도 높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국내외 전망치(4%대 중반)보다 높은 편
 - 2011년 재정정책기조는 위기극복 마무리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증시하였던 금년에 비해 그 역할이 축소되어야 할 것인데, GDP 대비 2%에 달하는 적자 등을 감안할 때 절대수준은 여전히 확장적인 가운데, 대부분의 재정지표들이 2011년 예산안의 정책기조가 금년 본예산의 기조에 비해 소폭이나마 긴축적임을 시사
- 세출증가 억제 목표달성에는 적극적·시스템적 노력 필요
 -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세출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동 재정지출준칙 및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PAYGO 등 정부내부 원칙들을 국회의 예산심의 및 법안심의 시에도 준수하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보다 구체적인 적용 지침 및 과학적·객관적 비용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fiscal rule)을 도입

- 동 재정준칙을 적용하여 2011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은 5.7%로 설정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4.8%로 총수입 증가율(7.7%)보다 2.9%p 낮음
- 이는 경제위기·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경제위기로 인해 변동이 컸던 2008~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 3개년에 비해 2.7%p(10.4% → 7.7%)나 하락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1.6%p(6.4% → 4.8%) 정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

○ 과거 추이를 보면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달성가능한 목표

- 총지출 통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한 적은 6년 중에서 2007년과 2010년 2차례
- 이전에도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하던 1999~2002년 기간 중 매년 통합재정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하회하였음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된 4대 지출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만 아직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던 재정지출 규모는 총 28조원이었는데, 2010년 예산에서 9조원 정도를 축소할 바 있음
 - 2010년 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던 지출의 절반 이상을 감축한 반면, SOC 분야는 14% 감축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오히려 7% 증가하여 축소 여지를 남김

- 2011년 예산안에서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1년 계획치에 비해 3조원 정도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분야별로는 지출축소 여지가 있었던 SOC 지출은 1조원 줄인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오히려 1조원 증가

○ 또한 최근의 경기호전 및 정부의 세입기반 확대정책으로 추가 확보되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세출확대에 투입하고 일부분만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할 예정이며, 경직성 지출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계획치를 재정건전화 계획이었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2011~2013년에 추가 확보되는 13.8조원 중 2/3인 8.2조원을 세출확대에, 1/3인 4.0조원을 재정수지 개선(나머지는 사회보장기금 수입증가)에 활용할 계획

- 경제예산(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의 향후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1.7%인 반면, 경직적인 사회지출(보건·복지) 및 지방이전지출(교육, 일반공공행정)은 6.3% 증가 계획

○ 이에 이번에 도입한 재정지출준칙이 일시적인 준칙이자 연성준칙(soft rule)이므로 정기적인 보고서, 행정부 외부기관·기구를 통해 재정준칙 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필요가 있고,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재정준칙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여야 함

- 특히 이번 재정준칙은 법적 기반이 없는 정부내 예산편성과정에서만 준수되는 준칙이므로 국회에서 이를 인정받을 필요

○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한 번 도입되면 줄이거나 폐지가 어려운 의무지출사업의 신규 도입 및 확대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필요

- 특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기존사업 지출 삭감 또는 별도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원칙(PAYGO)을 도입하였으므로, 향후 국회의 법안심의 시에도 적용시키도록 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적용 지침 및 과학적·객관적 비용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다소 높은 중기세입 증가율에 대한 구체적 정책 마련 필요

○ 2012년 이후 국세수입 연평균 8.7% 증가 등 다소 높은 중기세입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강력한 정책의지와 정치권의 협조가 뒷받침될 필요

○ 다소 낙관적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세입기반 확대 정책 등으로 당분간 세수호조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세수입이 연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

는데, 이는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경상성장률)가 1.15 정도로 자연세수 증가 이외에 정부의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할 듯

- 3년평균 국세탄성치가 1.15를 초과하였던 사례는 1980년 이래 1998~2002년(외환 위기 직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확대정책), 2005~2008년(참여정부의 증세정책) 등 2차례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정책의지와 정치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함
- 지난 수년간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고, 2009년 및 2010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축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과제
- 지난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연기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3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발생할 전망

□ 내년 예산안에 LH공사, 한국장학재단, 수자원공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포함되었는데, 향후 공기업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기업 부채 및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이외에 금리상승·환율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재정부담 등에도 대비할 필요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9월 15일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 기간: 2010. 9.15~10.5)
 -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의 내실있는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여 정보화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총사업비 관리제도: 완공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설계·발주·시공 등)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국가재정법 제50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규모('10.8): 1,298개 243조원
 - 금번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로 집중관리
 - 토목사업: (현행) 300억원 이상 → (개정) 500억원 이상
 - 건축사업: (현행) 100억원 이상 → (개정) 200억원 이상
 - ②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추가하여 건설공사와 같이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단계별 사업관리: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계약) - 시공
 -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 사업을 제외
 -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관련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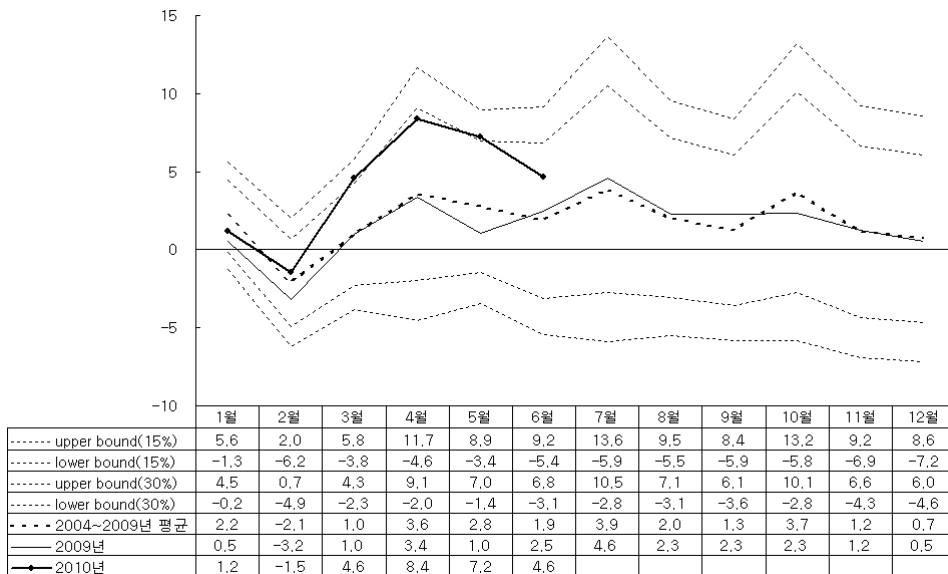
4. 최근 재정상황

- **(2010년 5월 통합재정)** 전년도 1~6월에 비해 수입은 10.0조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6.5조원 정도 감소하여 관리대상수지가 13.2조원이나 개선(42.7조원 적자 → 29.4조원 적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월 적자규모가 금년도 적자목표(30.1조원)의 97.8%에 달함
 - 통합재정수입은 5월까지의 누적진도비가 54.6%로 과거 5년 평균(52.6%) 및 전년(52.5%)보다 높아 연간목표치(262.3조원)를 초과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편
 - 다만 과거보다 약 2배 정도로 높게 계획된 자본수입의 진도비가 45.2%로 과거 실적에 비해 부진
 - 반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상반기 60% 집행 목표)으로 6월까지의 진도비가 58.5%에 달하였는데, 이는 과거 5년 평균(54.0%)보다도 높은 편이며, 매우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실시하였던 전년(58.4%)과 비슷한 수준
 - 5월에 비해 총수입은 15.1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26.2조원이나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가 무려 12.6조원이나 증가
 - 그러나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종료되어 하반기 지출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세입호조세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적자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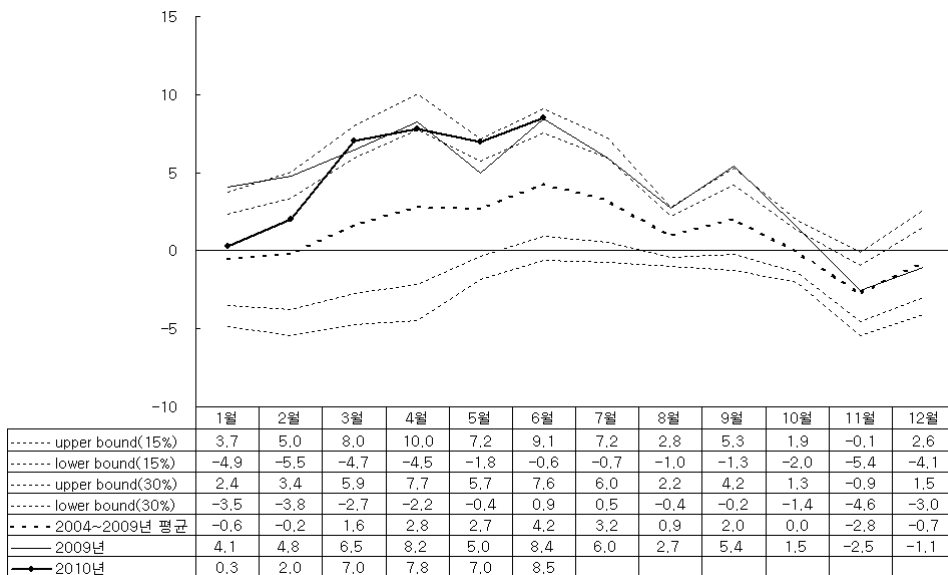
- **(월별통계발표)** 월별 통합재정통계는 기획재정부가 다다음달 중순경에 발표해 오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8~9월까지의 통계가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6월까지의 통계밖에 발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그림 1-I-1] 2009년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의 월별 진도비 추이

(수입)



(지출 및 순용자)



주: 월별 진도비에서 매월 균등할 경우의 진도비를 차감한 수치임. upper and lower bound는 과거 6년간의 월별 진도비의 평균 및 표준편차 통계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연간목표 달성가능확률이 15% 및 30%에 불과하여 경계하여야 할 가상적인 진도비 수준을 표시한 것으로, 월별 진도비가 동 영역을 상회 또는 하회하면 연간목표를 초과 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표 1-I-2〉 통합재정 추이

(단위: 십억원)

| | 수입 | | | 지출 및 순융자 | | | | 통합 재정 수지 | 관리 대상 수지 | |
|---------|---------|----------|----------|----------|----------|----------|---------|----------------|----------------|---------|
| | 소계 | 경상 수입 | 자본 수입 | 소계 | 경상 지출 | 자본 지출 | 순융자 | | | |
| 2004년 | 178,760 | 177,432 | 1,329 | 173,538 | 145,148 | 26,992 | 1,398 | 5,222 | -3,959 | |
| 2005년 | 191,488 | 190,206 | 1,281 | 186,398 | 158,721 | 24,649 | 3,028 | 5,090 | -6,521 | |
| 2006년 | 209,573 | 208,091 | 1,482 | 205,928 | 173,688 | 26,493 | 5,746 | 3,646 | -10,784 | |
| 2007년 | 243,633 | 241,693 | 1,940 | 209,810 | 169,658 | 33,045 | 7,107 | 33,823 | 3,577 | |
| 2008년 | 250,713 | 248,809 | 1,904 | 238,834 | 196,879 | 36,475 | 5,480 | 11,880 | -15,631 | |
| 2009년 | 본예산 | 263,984 | 262,171 | 1,813 | 257,536 | 206,582 | 42,096 | 8,858 | 6,449 | -24,765 |
| | 추경 | 253,911 | 251,822 | 2,088 | 275,898 | 211,488 | 45,011 | 19,398 | -21,987 | -51,044 |
| | 1월 | 23,367 | 23,314 | 52 | 31,908 | 22,721 | 5,958 | 3,228 | -8,541 | -9,457 |
| | 2월 | 35,563 | 35,271 | 291 | 55,202 | 41,270 | 9,465 | 4,466 | -19,638 | -21,190 |
| | 3월 | 68,582 | 68,156 | 427 | 81,007 | 62,363 | 13,832 | 4,812 | -12,425 | -21,940 |
| | 4월 | 96,967 | 96,284 | 682 | 107,021 | 83,069 | 18,156 | 5,797 | -10,055 | -21,209 |
| | 5월 | 108,420 | 107,161 | 1,259 | 128,690 | 99,470 | 21,303 | 7,917 | -20,271 | -33,436 |
| | 6월 | 133,237 | 131,538 | 1,700 | 161,193 | 123,570 | 28,048 | 9,575 | -27,955 | -42,659 |
| | 7월 | 159,728 | 157,923 | 1,805 | 177,385 | 136,729 | 30,647 | 10,008 | -17,657 | -34,544 |
| | 8월 | 175,113 | 173,233 | 1,880 | 191,454 | 149,225 | 32,114 | 10,114 | -16,341 | -35,304 |
| | 9월 | 196,185 | 194,135 | 2,050 | 221,876 | 174,632 | 36,273 | 10,971 | -25,690 | -47,906 |
| | 10월 | 217,503 | 215,352 | 2,151 | 234,112 | 184,569 | 37,765 | 11,778 | -16,609 | -40,544 |
| | 11월 | 235,887 | 233,549 | 2,338 | 245,971 | 193,911 | 39,655 | 12,406 | -10,083 | 26,125 |
| 12월 | 255,252 | 252,720 | 2,532 | 272,873 | 209,689 | 45,134 | 18,049 | -17,620 | 25,630 | |
| 2010년 | 본예산 | 262,263 | 258,714 | 3,548 | 264,278 | 212,396 | 45,933 | 5,948 | -2,015 | -30,100 |
| | 1월 | 25,002 | 24,946 | 56 | 22,694 | 18,952 | 2,452 | 1,290 | 2,308 | 466 |
| | 2월 | 39,849 | 39,651 | 199 | 49,312 | 38,478 | 8,063 | 2,771 | -9,462 | -12,470 |
| | 3월 | 77,599 | 77,258 | 340 | 84,619 | 68,298 | 13,728 | 2,593 | -7,020 | -19,513 |
| | 4월 | 109,371 | 108,211 | 1,160 | 108,643 | 87,453 | 17,387 | 3,803 | 728 | -13,635 |
| | 5월 | 128,157 | 126,755 | 1,402 | 128,493 | 103,611 | 20,575 | 4,307 | -337 | -16,804 |
| 6월 | 143,273 | 141,671 | 1,602 | 154,675 | 122,232 | 27,485 | 4,958 | -11,402 | -29,449 | |
| 6월진도비 | 54.6% | 54.8% | 45.2% | 58.5% | 57.5% | 59.8% | 83.4% | - | - | |
| (전년도) | (52.5%) | (52.2%) | (81.4%) | (58.4%) | (58.4%) | (62.3%) | (49.4%) | - | - | |
| (5년 평균) | (52.6%) | (52.5%) | (58.7%) | (54.0%) | (54.6%) | (49.8%) | (62.5%) | - | - | |

SECTION 1 >>

- (국가채무 통계) 2010년말 국가채무는 400.4조원(GDP 대비 34.7%)으로 2009년말 대비 40.8조원(GDP 대비 0.9%p) 증가
 -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대에 주로 기인
 - 2010년 예산(407.2조원) 대비로는 6.8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환율안정으로 인한 외평채 감소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차입한 국가장학기금의 차입금이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에 따른 국내차입금 감소 등이 주된 요인
 -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에 최고수준에 도달 후 2012년부터 하락하여, 2014년에는 492.2조원(GDP 대비 31.8%)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

〈표 1-I-3〉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연말기준, 조원)

| | 2008 | 2009 | | 2010 | | 2011 | 2012 | 2013 | 2014 |
|------------------------|-----------------|-----------------|-----------------|-----------------|-----------------|-----------------|-----------------|-----------------|-----------------|
| | 결산 | 추경 | 결산 | 예산 | 전망 | 예산안 | 중기 계획 | 중기 계획 | 중기 계획 |
| 국가채무 총계 (GDP 대비, %) | 309.0 (30.1) | 366.0 (35.6) | 359.6 (33.8) | 407.2 (36.1) | 400.4 (34.7) | 436.8 (35.2) | 468.1 (35.1) | 485.7 (33.8) | 492.2 (31.8) |
| 중앙정부 | 297.9 | 355.3 | 346.1 | 394.6 | 381.4 | 418.7 | 450.1 | 468.2 | 475.7 |
| ○ 국채 | 289.4 | 345.4 | 337.5 | 382.3 | 374.5 | 412.6 | 444.9 | 463.8 | 471.7 |
| - 국고채 | 239.3 | 282.9 | 280.9 | 318.0 | 315.1 | 352.6 | 382.9 | 400.6 | 409.0 |
| - 국민주택채권 | 44.9 | 48.9 | 48.3 | 50.1 | 48.7 | 48.2 | 49.1 | 50.3 | 51.5 |
| - 외국환평형채권 | 5.2 | 13.6 | 8.3 | 14.2 | 10.6 | 11.8 | 13.0 | 13.0 | 11.2 |
| ○ 차입금 | 5.3 | 6.5 | 5.4 | 8.5 | 3.6 | 3.0 | 2.3 | 1.6 | 1.4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3.2 | 3.4 | 3.2 | 3.8 | 3.3 | 3.1 | 2.9 | 2.7 | 2.6 |
| 지방정부순채무 | 11.1 | 10.7 | 13.5 | 12.6 | 19.0 | 18.2 | 18.0 | 17.5 | 16.5 |

출처: 2009는 국가결산(2010년 4월), 2011은 정부예산안, 2010년 전망 및 2012~2014년은 국가채무관리계획(2010년 10월)

- (국가보증채무 통계) 2010년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2.4조원(GDP 대비 2.8%)
 -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은 24.8조원으로 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
 - 2009년 신규로 보증을 개시한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보증잔액은 3.5조원이며, 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은 2.5조원

- 이미 보증사업이 완료된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2009년 완료)의 보증잔액은 1.5조 원이며, 수리자금(1988년 완료)의 보증잔액은 0.1조원
- 한편,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은 2011년말 3.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말에 GDP 대비 2.3%수준이 될 전망

〈표 1-I-4〉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연말기준, 조원)

|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8 월 | '10년 전망 | '11년 계획 | '12년 계획 | '13년 계획 | '14년 계획 |
|----------------------------|-------|-------|-------|-------|-------------------|--------------------|-------------------|-------------------|------------|------------|------------|
| ▣ 보증채무 | 55.0 | 36.5 | 33.1 | 28.1 | 29.8 | 32.4 | 34.9 | 41.3 | 42.5 | 38.6 | 35.4 |
| (GDP대비 %) | (6.4) | (4.0) | (3.4) | (2.7) | (2.8) | (2.8) | (3.0) | (3.3) | (3.2) | (2.7) | (2.3) |
|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50.5 | 34.0 | 30.6 | 28.0 | 27.3 | 24.8 ¹⁾ | 26.1 | 23.9 | 22.1 | 17.2 | 14.3 |
| - 구조조정기금채권 | - | - | - | - | 0.8 | 3.5 ²⁾ | 4.3 | 9.3 | 8.8 | 5.3 | -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 | - | - | - | - | 2.5 ³⁾ | 2.9 | 6.8 | 11.5 | 16.0 | 21.0 |
| -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 - | - | - | - | 1.5 ⁴⁾ | 1.5 ⁵⁾ | 1.5 ³⁾ | 1.2 ²⁾ | - | - | - |
| - 수리자금 | 0.2 | 0.2 | 0.2 | 0.15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4.0 | 2.3 | 2.3 | - | - | - | - | - | - | - | - |
| -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 0.3 | 0.1 | 0.03 | - | - | - | - | - | - | - | - |
| ※산업은행 외화표시채무 ⁶⁾ | - | - | - | - | - | - | - | - | (21.8) | (21.8) | (21.8) |

주: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0년 보증한도 8.4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3.7조원

2) 구조조정기금채권 : '10년 발행한도('10년도 기금운용계획) 10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2.7조원

3) 한국장학재단채권 : '10년 보증한도 9.0조원, '10년 발행실적(8월말 현재) 2.5조원

4) 12.8억달러, '09년말 매매기준율 1,167.6원 적용

5) 12.8억달러, '10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 1,150원 적용

6) '11년에 산업은행 민영화계획을 마련하여 '12~'13년중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매각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신규보증 발생 전망(【참고 4】 참조) (잠정 보증대상규모 : '09년말 잔액규모(186.5억달러) 및 '09년말 매매기준율(1,167.6원) 적용)

II 이슈 및 분석

1.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1)

가. 준조세의 개념

-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문적 근거 또는 실정법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님
 -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조세나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되는데, 만약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비용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준조세를 정의하면, 기업의 부담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와 직접적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지의 여부가 준조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준조세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 요건이 되는 「강제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
 - 법령에서 명백히 정해지는 금전적 부담처럼 강제성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도 있으나 기부금과 같이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음
 - 법령에 의해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금전적 부담의 경우에는 기업이 체감하는 강제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업의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기업 부담의 성격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손원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wson@kipf.re.kr)

1) 본 원고는 준조세와 관련된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부담금평가단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요약 및 발췌하였고, 최근의 자료를 추가하여 재구성하였음.

-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과 과태료 성격의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 정의
-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이 있음
- 기부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음

□ <표 1-Ⅱ-1>은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을 나타냄

<표 1-Ⅱ-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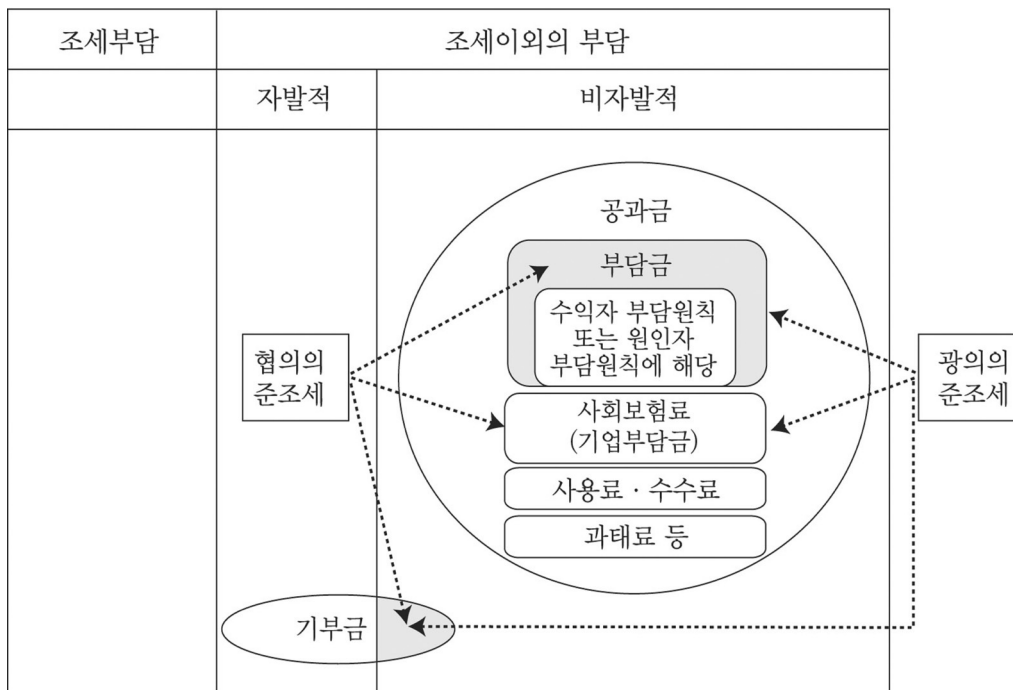
| 준조세의 종류 | 세 부 내 용 |
|------------------|--|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여금, 기금출연금 |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음
 - 선행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1)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
 - 협의로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

SECTION 1 >>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도 보험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험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음
 - 사회보험료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
- 각종 공과금 중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협의의 준조세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이상에서 논의한 준조세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준조세의 정의는 절대적일 수 없으나, 앞에서 설명한 큰 틀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준조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부담〉



주: 1. 사회보험료는 기업의 부담 부분만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2. 기부금, 성금 등은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만 준조세에 포함됨.

나. 준조세의 분류

1) 준조세의 분류

- 준조세는 준조세의 성격, 사용용도, 소관부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기업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하여 논의하며,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성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첫째, 공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수선·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손괴자 부담금)
 - 둘째,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용자원인자 부담금)
 - 셋째,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수익자 부담금)
 - 넷째, 해당사업의 복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완료 후 반환하는 경우(예치금)
 - 다섯째,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조세성 부담금)

2) 부담금 현황

- <표 1-Ⅱ-2>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금은 1961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에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6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가장 많은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1년 말 기준 총부담금 수가 101개에 이르렀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며, 2000년대에는 100개를 기준으로 증감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99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음

SECTION 1 >>

〈표 1-Ⅱ-2〉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단위: 개)

| | '60 년대 | '70 년대 | '80 년대 | '90 년대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¹⁾ |
|----|-----------|-----------|-----------|-----------|-----|-----|-----|-----|-----|-----|-----|-----|-----|-------------------|
| 증가 | 7 | 7 | 20 | 62 | 3 | 12 | 2 | 6 | 2 | 1 | 6 | 8 | 1 | - |
| 감소 | - | - | - | 1 | - | 9 | 1 | 8 | - | 1 | 8 | 6 | 2 | 2 |
| 누계 | 7 | 14 | 34 | 95 | 98 | 101 | 102 | 100 | 102 | 102 | 100 | 102 | 101 | 99 |

주: 1) 2009년도 보고서는 예치금·보증금에 대해 현금예치 외에 보증보험, 공제조합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2009년도 및 그 이전의 부담금 수와 징수실적을 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 〈표 1-Ⅱ-3〉은 2009년 각 부처별 부담금 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환경부에서 23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가 22개를 운용
- 두 부처가 운용하는 부담금의 개수의 합은 모두 45개로 전체 부담금 수의 45.5%에 해당함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이어 그 다음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1개, 지식경제부가 10개, 금융위원회가 8개,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산림청이 5개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각각 1개의 순서로 부담금을 운용

〈표 1-Ⅱ-3〉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 합 계 | 환경부 | 국토 해양부 | 농림 수산 식품부 | 지식 경제부 | 금융 위원회 | 문화 체육 관광부 | 산림청 | 교육 과학 기술부 |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
|-----|-----|-----------|-----------------|-----------|-----------|-----------------|-----|-----------------|-----------------------|---|
| 99 | 23 | 22 | 11 | 10 | 8 | 6 | 5 | 3 | 각 2 | 각 1 |

주: 2009. 12. 31.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표 1-Ⅱ-4〉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

(단위: 억원, %)

| | 부담금규모 | 증가율 | GDP | GDP 대비 부담금 비중 |
|------|---------|-------|------------|---------------|
| 2001 | 67,683 | | 6,514,153 | 1.04 |
| 2002 | 79,012 | 16.74 | 7,205,390 | 1.10 |
| 2003 | 93,005 | 17.71 | 7,671,137 | 1.21 |
| 2004 | 101,508 | 9.14 | 8,268,927 | 1.23 |
| 2005 | 112,647 | 10.97 | 8,652,409 | 1.30 |
| 2006 | 121,132 | 7.53 | 9,087,438 | 1.33 |
| 2007 | 145,882 | 20.43 | 9,750,130 | 1.50 |
| 2008 | 152,707 | 4.68 | 10,264,518 | 1.49 |
| 2009 | 148,047 | -3.05 | 10,630,591 | 1.39 |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0-09-27.

□ 〈표 1-Ⅱ-4〉는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나타내며, 2009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규모는 14조 8,047억원임을 알 수 있음

○ 2009년도 부담금의 총징수실적은 2008년에 비해 4,660억원이 감소한 14조 8,047억원으로 GDP 대비 1.39%에 해당함

○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06년에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2009년 기준 부담금규모는 전년 대비 3.05% 하락하였고,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01년 이후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보면 2009년에 처음으로 부담금의 규모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표 1-Ⅱ-5〉는 GDP 대비 조세의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 및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SECTION 1 >>

-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해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거듭하며,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평균 19.4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19.73%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였음
-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은 평균 1.29%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소 하락하였음
-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Ⅱ-2]와 같음

〈표 1-Ⅱ-5〉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단위: 억원, %)

| | 조세 (천억원) | GDP | GDP 대비 조세 비중 |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 | GDP 대비 부담금 비중 |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
|------|-------------|------------|-----------------|-------------------------|------------------|--------------------------|
| 2001 | 1,225 | 6,514,153 | 18.81 | - | 1.04 | - |
| 2002 | 1,355 | 7,205,390 | 18.81 | 0.00 | 1.10 | 5.54 |
| 2003 | 1,478 | 7,671,137 | 19.27 | 2.45 | 1.21 | 10.56 |
| 2004 | 1,520 | 8,268,927 | 18.38 | -4.59 | 1.23 | 1.25 |
| 2005 | 1,634 | 8,652,409 | 18.88 | 2.74 | 1.30 | 6.05 |
| 2006 | 1,793 | 9,087,438 | 19.73 | 4.48 | 1.33 | 2.38 |
| 2007 | 2,050 | 9,750,130 | 21.03 | 6.56 | 1.50 | 12.25 |
| 2008 | 2,128 | 10,264,518 | 20.73 | -1.40 | 1.49 | -0.57 |
| 2009 | 2,097 | 10,630,591 | 19.73 | -4.85 | 1.39 | -6.39 |
| 평균 | - | - | 19.48 | - | 1.29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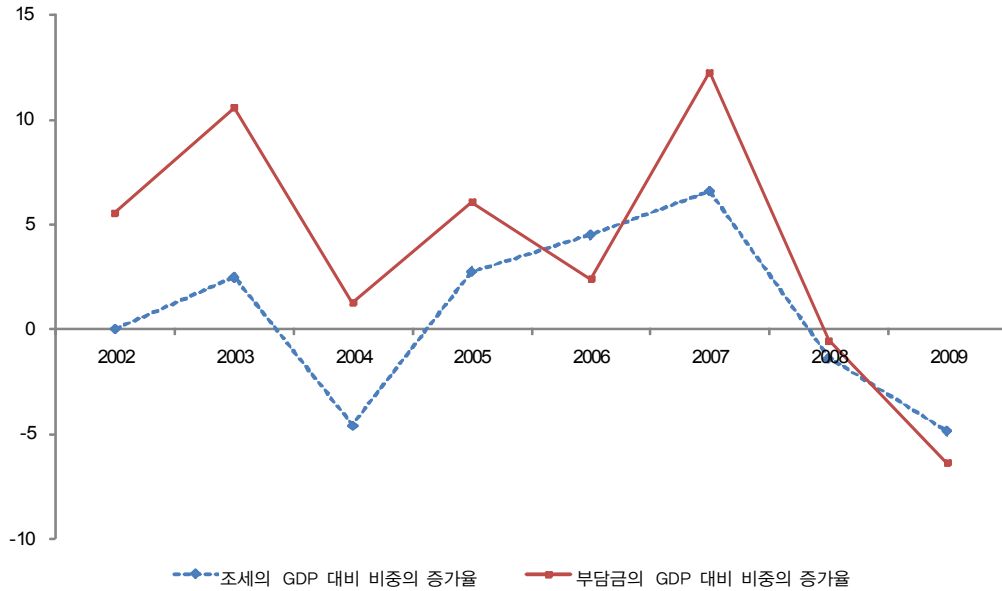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Ⅱ-1]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단위: %)



- 다음 <표 1-Ⅱ-6>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 부처별 부담금 징수규모를 나타냄
-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지식경제부의 부담금 징수규모가 3조 6,528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4.49%를 차지하여 가장 큼
 - 2009년 기준 지식경제부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회가 2조 8,057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부담금의 18.95%를 차지하고, 환경부가 2조 5,323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부담금의 17.10%를 차지하고 있음

SECTION 1 >>

〈표 1-Ⅱ-6〉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2009~2008년)

(단위: 백만원, %)

| 소관 부처 | 2009년 | | 2008년 | |
|---------|------------|----------|------------|----------|
| | 금액(구성비) | | 금액(구성비) | |
| 금융위원회 | 2,805,669 | (18.95) | 2,610,482 | (17.09) |
| 기획재정부 | -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357,685 | (2.42) | 355,761 | (2.33) |
| 외교통상부 | 50,952 | (0.34) | 51,631 | (0.34) |
| 행정안전부 | 53,781 | (0.36) | 113,308 | (0.74) |
| 문화체육관광부 | 356,893 | (2.41) | 371,473 | (2.43) |
| 농림수산식품부 | 819,975 | (5.54) | 1,526,573 | (9.99) |
| 지식경제부 | 3,625,812 | (24.49) | 3,547,217 | (23.22) |
| 보건복지가족부 | 1,637,981 | (11.06) | 1,636,923 | (10.71) |
| 환경부 | 2,532,315 | (17.10) | 2,432,327 | (15.92) |
| 노동부 | 255,859 | (1.73) | 249,619 | (1.63) |
| 국토해양부 | 1,043,493 | (7.05) | 965,327 | (6.32) |
| 소방방재청 | 493 | (0.003) | 3,486 | (0.02) |
| 산림청 | 1,054,086 | (7.12) | 1,193,903 | (7.82) |
| 방송통신위원회 | 139,935 | (0.95) | 157,378 | (1.03) |
| 중소기업청 | 69,815 | (0.47) | 62,585 | (0.41) |
| 합계 | 14,804,744 | (100.00) | 15,277,993 | (100.00) |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다. 준조세의 규모

- 본항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분류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규모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요양보험의 규모를 산출하였음
 - <표 1-Ⅱ-7>에 있는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포함하기 전의 규모를 나타냄

<표 1-Ⅱ-7> 연도별 징수액 추이

(단위: 억원)

| |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 보험 |
|------|----------------------------|----------------------------|--------|--------|--------|---------|------------|
| 2003 | 93,005 | 18,305 | 24,651 | 35,918 | 17,865 | 62,206 | - |
| 2004 | 101,508 | 20,295 | 28,961 | 42,404 | 19,628 | 69,977 | - |
| 2005 | 112,647 | 26,424 | 31,822 | 48,555 | 21,635 | 77,030 | - |
| 2006 | 121,132 | 29,427 | 37,495 | 55,849 | 23,195 | 84,735 | - |
| 2007 | 145,882 | 30,704 | 43,200 | 66,612 | 24,735 | 92,699 | - |
| 2008 | 152,707 | 31,537 | 47,349 | 78,598 | 26,809 | 98,809 | 1,765 |
| 2009 | 148,047 | 30,540 | 46,276 | 83,721 | 28,428 | 102,645 | 4,528 |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됨
 - 따라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소득공제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면 <표 1-Ⅱ-8>과 같음

SECTION 1 >>

〈표 1-Ⅱ-8〉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 사회보험료 | 광의 | 협의 | 법인세율 감안하지 않은 부담금액 | 법인세 최고세율 | 법인세율 감안한 부담금액 |
|--------|----|----|-------------------------|-------------|---------------------|
| 국민연금 | ○ | ○ | 102,645 | 0.22 | 80,063 |
| 고용보험 | ○ | ○ | 28,428 | 0.22 | 22,174 |
| 산업재해보험 | ○ | ○ | 46,276 | 0.22 | 36,095 |
| 국민건강보험 | ○ | ○ | 83,721 | 0.22 | 65,302 |
| 장기요양보험 | ○ | ○ | 4,528 | 0.22 | 3,532 |
| 계 | | | 265,598 | | 207,167 |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국민연금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도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됨
 - 따라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소득공제 규모를 고려하여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규모를 도출하면 〈표 1-Ⅱ-9〉와 같음

〈표 1-Ⅱ-9〉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 추이(사회보험료 제외)

(단위: 억원, %)

| |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A) |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B) | 법인세율 | 법인세율 적용 | |
|------|-------------------------|-------------------------|------|-------------------------|-------------------------|
| | | | |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A) |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B) |
| 2003 | 93,005 | 18,305 | 0.27 | 67,894 | 13,363 |
| 2004 | 101,508 | 20,295 | 0.27 | 74,101 | 14,815 |
| 2005 | 112,647 | 26,424 | 0.25 | 84,485 | 19,818 |
| 2006 | 121,132 | 29,427 | 0.25 | 90,849 | 22,070 |
| 2007 | 145,882 | 30,704 | 0.25 | 109,412 | 23,028 |
| 2008 | 152,707 | 31,537 | 0.25 | 114,530 | 23,653 |
| 2009 | 148,047 | 30,540 | 0.22 | 115,477 | 23,822 |

- 이 결과를 종합하여 법인세를 감안한 2009년 준조세의 규모를 도출하면, <표 1-Ⅱ-10> 과 같이 산출됨
-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32조 2,644억 원, 협의의 경우에는 23조 989억원에 이릅니다

<표 1-Ⅱ-10> 2009년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 | 분류 | 부담금액 |
|----------|---------|---------|
| 사회보험료 제외 | 광의의 준조세 | 115,477 |
| | 협의의 준조세 | 23,822 |
| 사회보험료 포함 | 광의의 준조세 | 322,644 |
| | 협의의 준조세 | 230,989 |

2.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시스템*

가. 문제의식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하는 주된 목적으로 책임성 확보, 사업의 성과 제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위 3개의 목적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기도 함
 - 성과관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적절한 수집과 관리가 필요함
 - 예컨대,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성과, 비용에 관한 정보가 측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들이 적절히 관리될 경우 예산집행의 적절성, 효율성, 사업의 책임성 확보도 가능해짐

-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주로 지표 위주의 성과관리임
 -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같이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모니터링과 검토(review) 형식의 평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
 - 사업평가와 같이 심층적인 형태의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평가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나라마다 성과관리에 관한 형태가 다를 경우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성과관리를 도입할 때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로 하였던 만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jweon@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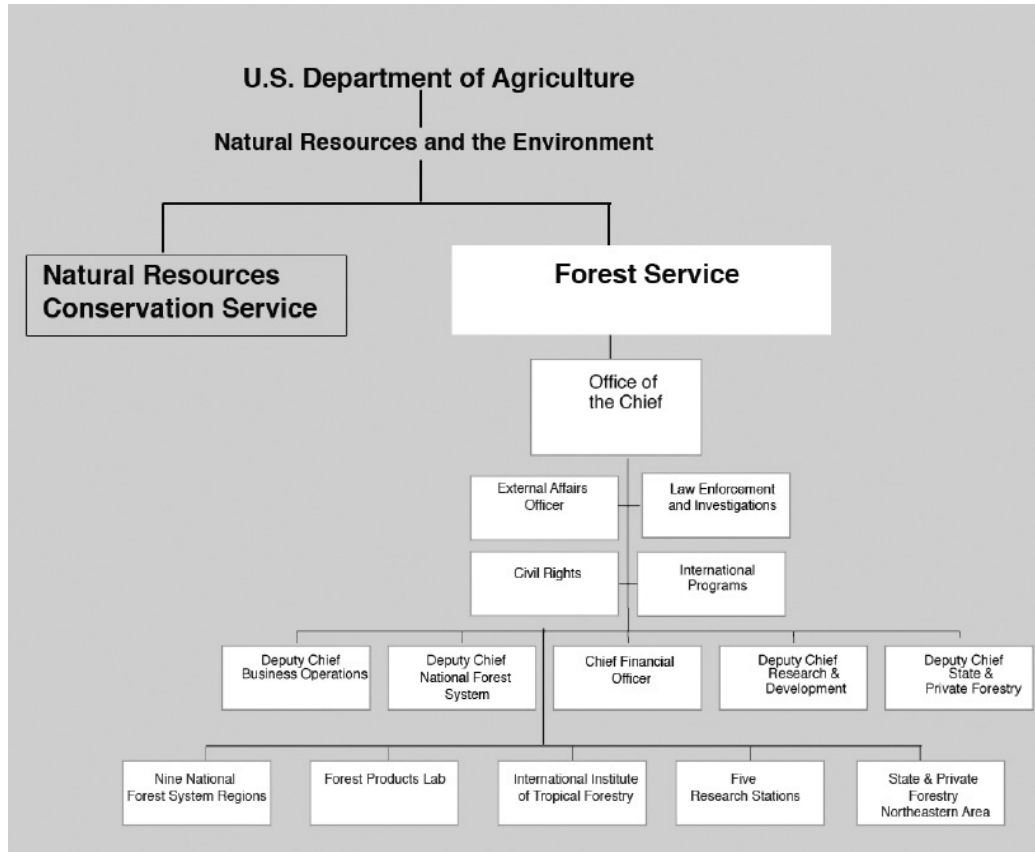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산림청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를 담당하는 상위 조직이 결과 위주의 지표를 제시하고,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에 대해 타당한지의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 성과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시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성과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나.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체계

1) 조직

- 미 산림청은 농림부 산하 조직으로 1905년도에 설립되어 1억 9,300만에이커의 미국 내 삼림 및 초지를 관리하는 산림자원관리 선도기관으로 주(州) 및 지방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5억에이커의 비연방 삼림자원을 관리하고 비연방 삼림지대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함
 - 미 산림청에는 ① Business Operation, ② National Forest System, ③ R&D, ④ State and Private Forestry 등 4개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장과 재무총괄자인 Chief Financial Officer가 있음
 - 하위 조직으로는 ① 9개의 NFS Regions, ② 국가 삼림 및 목초지대 경비대, ③ R&D 및 전략계획부, ④ 주(州) 및 북동지역 사무소가 있음
- 산림청은 ① 예산 및 재정, ② 정보관리, ③ 인적자원관리 등 3개의 주요 기능을 중앙집권화함
 - 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종사자들은 워싱턴 본부에 있으며, 정보관리 인력은 대부분 미 전역에 분포

[그림 1-Ⅱ-3] 미국 산림청 조직도



2) 전략적 우선순위 및 핵심성과지표의 설정

- 미 산림청은 정책성과에 대한 효과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 시행
 - 성과관리는 전략 목표 설정, 사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목표 달성 측정,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활용됨. 산림청 내 각 부서들은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
- 핵심성과척도(Key Performance Measure)는 성과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지방림(Regional forester) 및 선임집행부(Senior Executive) 구성원들에 대한 연간 성과 평가의 일부로서 활용됨

- 삼림경비 구역, 국유림(National forest), 지역 레벨의 관리자 및 감독자, 사업 집행자들은 지속적으로 성과자료의 질적 완전성을 검토하고, 산림청은 각 지역 수장들에게 핵심성과지표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함
 - 산림청 중앙본부에서는 각 지역 관리자들과의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연말 성과보고서에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 향후 실천 계획을 수립함
- 산림청 4개 부서인 Business Operation, National Forest System, R&D, State and Private Forestry의 부서장(deputy)과 재정담당관 (Chief Financial Officer)으로 구성되는 임원회의인 ELT(Executive Leadership Team)는 산림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계획을 구체화하며, 성과보고서 내 MD&A(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에 포함되는 성과측정지표를 확정함
- Executive Priorities 라 불리는 이 지표들은 미 산림청 중기계획에서 핵심성과지표로 확정됨
- 이 지표들은 연간 사업 지시서(annual program direction)를 통해 각 지역 일선 관료들과 협의 과정을 거침
 - 연간 중간 점검 발간물을 통해 자료가 제공되면, 각 지역에서는 이 발간물에 대하여 각각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초과(exceeded), 달성(met), 미달(unmet) 등으로 응답
 - 확정된 Executive Priorities는 촉박한 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WorkPlan, NFPORS, Infra, TIMS/STARS 등)를 통해 9개월의 실제 성과와 3개월의 추정 예상 성과로 나누어 보고되며, 산림청 본부의 사업예산 분석 담당직원 (Program and Budget Analysis Staff)에 의해 검토 및 통합됨
 - 아래 성과카드(Performance Scorecard)는 산림청의 2004년도 Executive Priorities에 대한 기관 성과를 나타냄
 - 모든 성과는 9개월 시점에서의 해당 연도 동안의 추측(projected)된 성과를 나타내며, 연도 말에 실제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수정됨
 - 미달(UNMET) 또는 초과(EXCEEDED) 에 대해서는 OMB 회람(A-11)에 의해 향후 개

SECTION 1 >>

선 방안에 대해 작성해야 함

〈표 1-Ⅱ-11〉 성과카드 예시

USDA Forest Service's Performance Scorecard for FY 2004

| Projected Accomplishments by Executive Priorities | RESULTS |
|---|---|
| Reduced risk from catastrophic wildland fire | |
| 1,294,598 acres of hazardous fuels within the WUI that are treated with Direct Hazardous Fuels dollars ⁵ | EXCEEDED |
| 313,770 acres of hazardous fuels within the WUI that are treated with Other (Not Direct Hazardous Fuels) dollars | EXCEEDED |
| 100 percent of acres of hazardous fuels treated within the WUI are identified as high priority through collaboration consistent with the 10-year Comprehensive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 MET |
| 398,319 acres treated with Direct Hazardous Fuels dollars that are in Condition Classes 2 or 3 in Fire Regimes 1, 2, or 3 outside the WUI | UNMET ⁶ |
| 253,114 acres treated with Other (NOT Direct Hazardous Fuels) dollars that are in Condition Classes 2 or 3 in Fire Regimes 1, 2, or 3 outside the WUI | UNMET |
| 100 percent of acres treated are in Condition Classes 2 or 3 in Fire Regimes 1, 2, or 3 outside the WUI that are identified as high priority through collaboration consistent with the 10-year Plan | MET |
| 29,711 acres brought into stewardship contracts | New Baseline |
| Communities at risk with completed and current fire management plans or risk assessments | No specific measurement protocol in FY 2004 |
| 125,000 acres covered by partnership agreements | New Baseline |
| Reduced impact from invasive species | |
| 85,081 acres of noxious weeds acres treated | EXCEEDED |
| 1,046,482 acres treated for selected invasives species | MET |
| High-quality recreation provided | |
| 64,866 miles of road maintained to standard (high clearance and passenger) | EXCEEDED |
| 22 percent of road maintained to standard (high clearance and passenger) | EXCEEDED |
| 19,743 facilities maintained to standard | EXCEEDED |
| 49.2 percent of facilities maintained to standard | EXCEEDED |
| 22,657 miles of trail maintained to standard | EXCEEDED |
| 17 percent of trail maintained to standard | EXCEEDED |
| 215 rights-of-way acquired to provide public access | UNMET |

| Projected Accomplishments by Executive Priorities | RESULTS |
|---|---|
| National Forest System lands covered by travel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 No specific measurement protocol in FY 2004 |
| Improved watershed condition | |
| 130 watershed assessments completed | EXCEEDED |
| 1,618,000 acres of nonindustrial private forest land under approved stewardship management plans ⁷ | MET |
| 217,999 acres of terrestrial habitat enhanced to achieve desired ecological conditions | UNMET |
| 14,771 acres of lake habitat enhanced to achieve desired ecological conditions | EXCEEDED |
| 1,797 miles of stream habitat enhanced to achieve desired ecological conditions | MET |
| Improved productivity and efficiency | |
| 76 percent of the Nation for which forest inventory and analysis (FIA) information is accessible to external customers | New Baseline |
| 86 percent of performance data were current and complete | New Baseline |
| 640,481 acres of land adjustments to conserve the integrity of undeveloped lands and habitat quality (sum of next three rows) | UNMET |
| 54,896 acres adjusted (exchanged) to conserve the integrity of undeveloped lands and habitat quality | UNMET |
| 50,954 acres acquired to conserve the integrity of undeveloped lands and habitat quality | UNMET |
| 534,632 acres protected by Legacy Program to conserve the integrity of undeveloped lands and habitat quality | EXCEEDED |
| 12 Land Management Plans (LMPs) revisions completed | UNMET |
| 9 percent of LMPs revisions completed | UNMET |
| Proportion of data within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current to standard | No specific measurement protocol in FY 2004 |
| 112 forest plan monitoring reports completed | EXCEEDED |
| 94 percent of forest plan monitoring reports completed | EXCEEDED |

SECTION 1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미산 립청의 중장기 전략 목표 (FY 2007~2012) 및 핵심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1-Ⅱ-4] 미산림청의 성과목표체계도

| Goal 1 국가산림 자원의 복 원, 유지, 향상 | Goal 2 미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 Goal 3 공개 지역 보존 | Goal 4 실외휴양 활동 기회 의 유지 및 확대 | Goal 5 기본적인 경영능력 유지 | Goal 6 도시민들의 산림청 프 로그램 참여 향상 | Goal 7 학술 연구 에 기반한 천연산림 자원 관리 |
|---|---------------------------------------|---|--|---|---|--|
| 산불로부터의 위험 감소 | 안정적인 산림 생산물의 생산 | 산림 및 목초지 의 타용도로의 전환 보호 | 실외 휴양활동 의 질 및 접근 가능성 증진 | 효과적인 토지 관리 계획 및 효율적인 데이 터 기술을 이용 한 책무성 증진 | 도시민들에 대한 자연 보호 교육 강화 | R&D(연구개발 센터), T&D(기 술개발센터)에 서 개발한 기술 의 적용 및 활 용도 향상 |
| 산불의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제압 | 안정적인 방목장지 생산물의 생산 | 지속가능한산 림 및 목초지 관리를 위한 민 간 산림 소유주 ·지역사회에 대 한 지원 | 국가 산림 및 수자원에 대한 합법적 접근 보 장 | 국가 산림 토지 및 시설 행정적 관리 능력 증진 | 광범위한 공공 편의 제공 을 위한 도시 및 지역사회산 림 관리 증진 | |
| 지역사회의 산 불 억제 능력 함 양과 손실 감소 | 에너지 자원 수요 충족 | | 새로운 자동차 용 지도에 등록 된 산림청 도로, 오토길 등의 토 지 비율 | | | |
| 유해 종, 병균, 해충으로부터의 충격 감소 | 시장에 기반한 보존 활동과 생태계 시스템 관리 촉진 | | | | | |
| 건전한 하천과 다양한 산림 서식지 보존 및 회복 | | | | | | |

3)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

가) 통합성과 시스템

□ 미 산림청은 2003~2004년 예산과 통합된 성과책임성 시스템(Performance Accountability System, PAS) 을 도입함

○ PAS 는 계획, 예산, 성과책임성, 재무 관리를 예산 전 과정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과 통합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최종 보고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업 목표 달성 과정이 추적되고 관리됨¹⁾

- PAS를 통해 예산과 성과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성과관리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아님
- 2003년 말 Executive Leadership Team (ELT)은 PAS에 근거하여 통합성과시스템 (Hyperion Performance Scorecard System) 을 도입함
 - 통합성과시스템은 기관이 전략과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기관 전체에 전달하고 핵심성과지표 (KPI)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를 통해 전략과 책임의 매핑 및 웹 기반의 게시판, 포럼 및 토론이 가능해짐
-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통합체계 - WorkPlan의 개발
 -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프로젝트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는 WorkPlan 이라 불리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2003년 5월 개발함
 - PAS 와 WorkPlan 은 산림청 사업의 계획, 집행 및 보고 과정을 통합하는 도구로 현재 까지 활용되고 있음

나) 재정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미국 산림청은 공공 기금 및 자산에 관한 재무관리 향상을 위해 다수의 재정정책, 과정, 절차 등에 대해 재설계하고 능률화하는 등 기관 전 방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특히 재정지원서비스를 단일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능률성을 배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서비스의 중앙집권화는 집행 과정을 표준화하고, 각 부서들이 보다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1) 통합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방법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데, 미국 산림청의 경우 CTA(Credibility Through Accountability) 워크숍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중심의 성과측정방법을 개발하였다.

-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청은
 - 재무 관리감독 기구인 농림부 감독사무소(USDA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부적합(unqualified) 의견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 재무 과정상 모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OMB의 A-123 조항을 준용하며,
 - 재정성과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과책임성 시스템(PAS)으로 단일하게 통합하고,
 - 재무 보고 과정을 개선하고 행정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자원 배분

- 미 산림청은 정기적으로 사업 단위에서 개별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 및 자원배분 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PART 검토보고서와 연구개발투자기준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Criteria) 검토보고서 결과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향후 예산 배정에 활용함

□ 연구개발 투자기준

- 미 산림청은 OMB 와 과학기술사무소(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개발한 투자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함.
- 모든 R&D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계량화된 평가방식을 통해 적절성, 품질, 성과 등에 대해 5년 주기로 평가됨
- R&D 결과물 및 서비스의 적절성, 유용성, 접근가능성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를 통해 모니터링되며, ACSI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설문조사로 매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 ACSI 점수는 2009년 73점이었으나 2012년까지 75점이 목표임
-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토보고서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보는 예산 및 경영의사 결정에 자료로 활용됨

- 1993년 GPRA 는 사업평가 실적 및 향후 사업 평가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산림청의 모든 사업은 3~5년 단위로 검토되고 있음

○ 〈표 1-Ⅱ-2〉는 미 산림청의 향후 5년간 주요 평가 계획을 나타냄

〈표 1-Ⅱ-12〉 미 산림청의 향후 5년간 주요 평가 계획

| Evaluations/Analyses | General Scope | Methodology | Timetable |
|---|---|--|--|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National forest unit level evaluation | External review | |
| R&D Program Peer Review | National level | Comprehensive external subject-matter specialist review of strategic program area | Every 5 years or 20% each year (100% of R&D Program) |
| R&D Administrative Review | Washington Office and research station level | Review of administrative functions by panel of Forest Service personnel and external partners and collaborators | Periodically |
| R&D Project Review | Research work unit level | Internal review of work units and charters | Every 5 years |
| Regional Activity reviews | Chief's review | Integrated review of joint region and R&D programs to evaluate mission delivery | Periodically |
| Civil Rights Title VI and VII reviews | Program reviews | Regions, stations, and area reviews | Periodically |
| Maintenance reviews (fleet, roads, structures) | Program reviews | Regions, stations, and area reviews | Periodically |
| Integrated reviews of programs with partners | Review of programs under agreements or memoranda | Program and partner field reviews | Periodically |
| Business Management Audits (budgeting, accounting, fund management) | Program reviews of the business functions and service centers | Regions, stations, and area reviews | Periodically |
| OMB PART | Use PART to assess the management and results of selected goals and programs | Develop responses to a series of questions assessing program management and performance | Annually with all strategic goals reviewed every 5 years |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assessments of U.S. natural resources | Evaluate status of America's natural resources and identify trends in condition and uses of those resources | Independent technical documents of emerging issues and analyses of natural resource conditions, present and future, by Nation's scientists | Every 10 years with interim 5-year updates (complete assessment) |

다. 시사점

-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점검을 예산당국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사한 형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 지침에 근거하여 부처는 자체평가를 실시
 - 부처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표와 목표치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성과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지표와 목표치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작성
- 미국 역시 사업부처가 시행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를 예산당국인 OMB가 평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부처는 OMB가 성과평가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국 산립청의 경우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계획, 예산, 성과책무성, 재무 관리)에 대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PAS 시스템을 2003 도입하였으며, 이후 오늘까지 이 시스템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PAS를 통해 분기별로 업무실적에 대해 기입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예산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 PAS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도입 후 성과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가 수월해지고, 사업추진 및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미국 산립청의 경우 산립청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성과지표(KPI) 설정 시 부서장급 위원으로 구성되는 ELT에서 이를 작성·제시하고, 현장과의 토론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형태였음
 -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의 상급자의 관여와 관심이 적절하고 원활한 성과관리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 미 산림청의 지표 및 목표치 설정 과정은 매우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사례는 성과제도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 성과관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성과관리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과,
 - 부서의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부서장 레벨의 직급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http://www.fs.fed.us/>

<http://www.whitehouse.gov/omb/expectmore/agency/005.html>

USDA Forest Service: An Overview

FY 2011 Budget Justification

USDA Forest Service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7-12

Forest Service Agency Financial Report FY 2009

Forest Servi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Fiscal Year 2004

Forest Servi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Fiscal Year 2010

Forest Service Summary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Information, FY 2009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Restoring Debt Sustainability After Crises: Implications for the Fiscal Mix?” (2010.10)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채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는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시행 때문
 - 100개의 은행위기 에피소드 중 65개의 경우, 위기 이후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음
 - 위기 이후 10년간, 부채비율이 감소한 경우가 겨우 59%에 불과할 정도로 증가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 유지

- 공공부채가 증가하면 국가부도 위험이 상승하고,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감소하여, 국채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문에서는 은행위기 이후 공공부채 감축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좀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감축에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은행위기는 “한 국가에서 다수의 기업 및 금융부문이 디폴트를 경험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 (Laeven and Valencia, 2008)
 - 부채감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채규모(GDP 대비 부채비율)와 부채감축 기간을 관찰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 부채 규모에 있어, 부채감축 성공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부채 규모의 절대적 기준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threshold)을 달성하였는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정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60%, 개도국의 경우 GDP 대비 40%(절대적 목표치)로 정의하였음
 - 부채 규모의 상대적 기준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에 의해 판단
 - 부채감축 기간은 부채 규모가 절대적 목표치 이상으로 지속되는 기간으로 정의(최소값은 1년, 최대값은 24년)
 - 재정건전화 규모가 클수록,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성이 세입증가보다는 지출억제(특히, 펜션, 보조금 및 의무지출과 같은 공공 이전지출 감소와 정부기관 임금 억제)일수록,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적일수록(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부채감축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
 - 재정건전화의 시기, 지속기간, 규모, 구성 등은 제도(재정정책에 대한 시각, 선거제도, 예산과정) 및 정치적 제약(선거까지 남은 기간)에 의해 결정됨
 - 정부가 안정적이고 강력한 재정준칙을 가졌을수록 부채감축에 더욱 유리
- 부채감축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1980년과 2008년 사이에 발생했던 99개국, 100개 은행위기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시행하였음
- 은행위기 이전에는 57%의 에피소드에서 부채가 절대적 목표치 이하에 있었고, 은행위기 이후 이 중 62%의 에피소드에서 부채수준이 그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었음
 - 부채감축 기간은 완전한 부채감축(complete success, 절대적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평균 10년 정도가 소요되며, 성공의 정의를 완화하여 부분적 부채감축(partial success: 목표치까지 감축해야 할 부채의 50%만 감축)에는 7.35년, 제한적 부채감축(limited success, 목표치까지 감축해야 할 부채의 10%만 감축)에는 5.85년이 소요됨
 - 상대적 기준인, 위기 이전 부채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부채 감축의 평균 소요기간은 9.5년, 부분적 및 제한적 부채감축 소요기간도 각각 7.12년과 5.68년으로 절대적 목표치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슷함

– 다시 말하면 위기 이전 부채수준이 절대적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1-Ⅲ-1〉 부채 회복 에피소드의 성공여부와 기간

| | Duration (in years) | | Success (as a share of episodes) | |
|--------------------------------|---------------------|-----------|----------------------------------|-----------|
| | Mean | Std. Dev. | Mean | Std. Dev. |
| Absolute debt target 1/ | | | | |
| Complete success | 9.88 | 4.011 | 0.075 | 0.257 |
| Partial success | 7.35 | 4.218 | 0.111 | 0.314 |
| Limited success | 5.85 | 4.702 | 0.189 | 0.359 |
| Pre-crisis debt target | | | | |
| Complete success | 9.62 | 5.692 | 0.066 | 0.249 |
| Partial success | 7.12 | 4.959 | 0.097 | 0.296 |
| Limited success | 5.68 | 4.598 | 0.128 | 0.335 |

- 부채감축 에피소드를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보면, OECD 국가의 경우, 절대적 목표치에 이르는 기간이 위기 이전 부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간보다 김. 다시 말하면 위기 이전 부채 수준이 절대적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의미
- 부채감축 성공 확률을 분석해보면, 은행위기 기간이 짧을수록, 위기 이전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위기 중 증가한 부채량이 적을수록, 재정건전화 규모가 클수록, 재정건전화 정책이 세입확대보다는 지출감소정책일수록, 위기 후 부채감축 속도가 단축됨
 - 은행위기 기간이 길면 영구 소득의 손실이 커지고, 세입이 줄어들어 부채감축이 더욱 어려움
 - 위기 이전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부도 위험을 크게 느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취함
 - 은행위기 중 부채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부채감축에 3~4년이란 시간이 더 소요되고 부채감축 성공확률이 낮아짐
 - 위기 후 재정건전화의 규모가 클수록, 경기회복이 빠르고 국가신용도가 개선되어 부채감축 속도가 빨라짐
 -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성이 양질(high-quality)의 지출감축 위주인 경우, 부채감축 기

간이 1년 이상 단축되고 부채감축 성공확률이 증가

- 모수적 생존분석(parametric survival analysis)인 Cox Regression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부채감축의 결정요인 분석한 결과, 위의 분석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위기 중 부채 축적량이 크거나 은행위기가 길어질수록 부채감축의 성공확률은 낮아짐
 - 위기 후 지출억제 정책을 쓰면 부채감축 기간이 짧아지지만, 조정해야 할 재정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입확대 정책도 동시에 진행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부채감축에 성공할 수 있음
 - 재정정책과 함께 수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 저금리 정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할 때, 재정건전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지출통제와 세원확대를 적절히 조합한 재정정책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신용 위험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부채감축에 성공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 Weibull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 세수입 증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출 감소, 이전지출 감소, 공공투자가 증가할수록 부채감축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하였음

나. IMF, “Should Advanced Countries Adopt a Fiscal Responsibility Law?”(2010.11)

- 재정책임법(FRL, Fiscal Responsibility Law)은 예산의 세가지 원칙(책임성, 투명성, 안정성)과 연관된 규칙 및 절차에 관련된 법으로 정의
 -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안정성(stability)
 - “재정 책임”의 4가지 핵심요소는 ① 중장기 재정총량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명시, ② 선정된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및 연간 예산전략 수립, ③ 재정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정규 보고서 발행 (최소 연2회), ④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간 재정 결산 감사 시행임

SECTION 1 >>

- 위 네 가지 핵심요소 중 일부를 포함하고, 다른 선택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정책임법 타입의 법(FRL-type law)으로 정의함

- 재정책임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정부가 의회에 대해 거시재정 운영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 행정부 내에서 개인이 예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재정정책 의도 및 사후 재정성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함
 - 정부가 의회에 재정정책 의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함
 - 재정책임법의 의무적 요소: 중장기 재정정책 전략*과 연간 예산정책 전략**
 - * 중장기 재정정책 전략: 당해연도 및 2년후까지 거시 및 재정전망, 균형재정을 위한 정량화된 목표, 총수입과 지출, 정부부채, 정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
 - ** 연간 예산정책 전략: 당해연도 예산정책이 중장기 재정정책 목표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간 및 중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정책 방안, 중기재정 전략에서 이탈하는 이유
 - 재정책임법의 선택 요소: 정책효과 분석*, 재정위험**, 조세지출 내용 및 규모,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 * 정책효과 분석: 정부가 중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조세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정량화
 - ** 재정 위험: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변화, 정책 위험, 부채 위험,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공기관, 자연재해, 정부자산 가치 변동 등
 - ***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고령화, 기후변화, 의료비 지출 등 장기적인 재정의 위험요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사후적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재정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FRS-type 법안의 의무적 요소
 - 예산 결과에 대한 중간 리뷰(mid-year formal review)와 사전예산 보고서(pre-budget report) 발행: 중간 리뷰에서는 전년도 회계감사와 재정결과, 당해연

- 도 첫 6개월간의 예상 재정상황, 당해 및 중장기 재정 예측 수정을 담고, 사전예산 보고서에서는 다가올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연간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statement):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전년도 수입과 지출 기록이 있는 결산보고서를 발행하여 당해연도 예산과 비교하고,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정부 자산과 부채 정보가 있는 대차대조표 비교
 - FRS-type 법안의 선택적 요소: 월/분기별 재정 결과 공개, 선거 등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장기 재정 전망 및 기타 보고서
- 재정책임법은 재정 안정성과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요 재정목표와 정책(수입, 지출, 재정수지, 공공부채)을 제시하도록 함
 - 연간 혹은 중기(3~5년 단위)로 명확한 중기 재정목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함
 - FRL-type 법안의 선택적 요소
 - 정량적 재정 목표: 부채, 재정적자, 총수입, 총지출, 특정 지출 등에 대해 정량적 목표 제시 (GDP 대비, 화폐단위, 성장률 등의 방식으로)
 - 수입 목표: 수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의 총량적 목표(GDP 대비 수입, 세율, 세원)를 설정
 -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부채 목표(예로 GDP 대비 60%로 부채 감축, 부채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감축 등)
 - 대차대조표 상의 안정성: 순부채(총부채-정부 금융자산) 등 목표 설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시-재정 안정성에 책임을 지도록 예산 결정시 두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산의 총량적 목표(수입, 지출, 재정수지, 재정적자 감축안 등)를 승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안마다 투표로 결정해야 함
- 재정책임법을 운영하는 국가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가 재정책임법(Charter of Budget Honesty)을 10년간 운영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2004년 재정책임법이 좀 더 포괄적인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두 국가에서 재정책임법을 도입하게 된 원인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따라서 정부에 재정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이들은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및 공공부문 개혁을 시행한 후 개선된 재정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책임법을 도입

○ 미국(Budget Enforcement Act 1990)과 일본(Fiscal Structural Adjustment Law 1997)은 제한된 기간 동안 FRL-type법을 도입, 정부의 재정적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에 주력

○ 2010년 2월, 영국은 재정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제정, 신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고 따를 것을 의무화

- 동법에 의하면,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FCP, Fiscal Consolidation Plan)을 제시하고, 의회는 정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적시한 각 FCP를 승인하도록 함
- 동법은 정부의 지난 FCP 기간을 2009-10에서 2015-16으로 연장하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함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을 향후 4년 만에 반으로 절감하여, 2013-14년에는 GDP 대비 5.5%가 되도록 할 것
- GDP 대비 차입을 2009-10에서 2015-16까지 매년 줄여나갈 것
- 2015-16년에는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가 감소할 것

○ 멕시코의 Federal Budget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 2006에서는 균형재정 규율을 제정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예산안 전망에 유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유가로 인한 잉여수입을 위한 안정화 펀드를 제도화하였음

○ 브라질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단위까지 재정책임법을 도입,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호주와 영국, 두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책임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선진국들은 공공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음
 - 독일,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는 헌법에 예산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 중 재정안정화 규율이 포함되어 있음
- 재정책임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경우, 성공적으로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재정책임법 도입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의해 재정 안정 가능
 - 외부감사, 독립적인 재정기구(헝가리, 나이지리아, 미국의 CBO, 스웨덴)
- EU 회원국의 경우, 마스트리히트 조약 및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약(SGP)에 부채 및 재정적자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재정적자 GDP 대비 3%, 공공부채 GDP 대비 60%,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균형 혹은 흑자로 운영할 것이 SGP에 명시되어 있음
 -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부채와 재정적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성공적이지 못했음
 - 미국의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1985, 일본의 Fiscal Structural Reform Act 1997, EU 국가의 SGP(재정적자 GDP 대비 3%), 독일의 골든룰 등은 실패한 케이스
 - 주요 거시-재정 변수들에 대한 정성적 목표만 세우고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중기재정 목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유리 (브라질의 경우)
- 선진국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자유법)를 가동시키고 있고, 또는 다른 기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음
-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입법부는 행정부에 예산 책임을 지도록 함

다. ECB, “The Benefits of Fiscal Consolidation In Uncharted Water?”
(2010.11)

- 2010년 유럽과 G7 선진국들의 재정 여건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 유럽의 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는 10% 안팎을 기록할 전망
 -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국 및 영국의 재정적자도 10%를 넘어서고 있고, G7 평균 재정적자는 8.7%를 기록
 - 따라서 총공공부채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부채는 2007년 GDP 대비 66%에서 2010년 84%까지 증가할 전망
 - 영국과 미국도 부채가 45% → 79%, 62% → 90%로 20%p 이상 증가하였고, G7 평균 부채비율도 106.7%로 30%p 가량 증가하였음
 - 일본의 경우는, 총부채규모가 2007년 127%에서 2010년 약 200%까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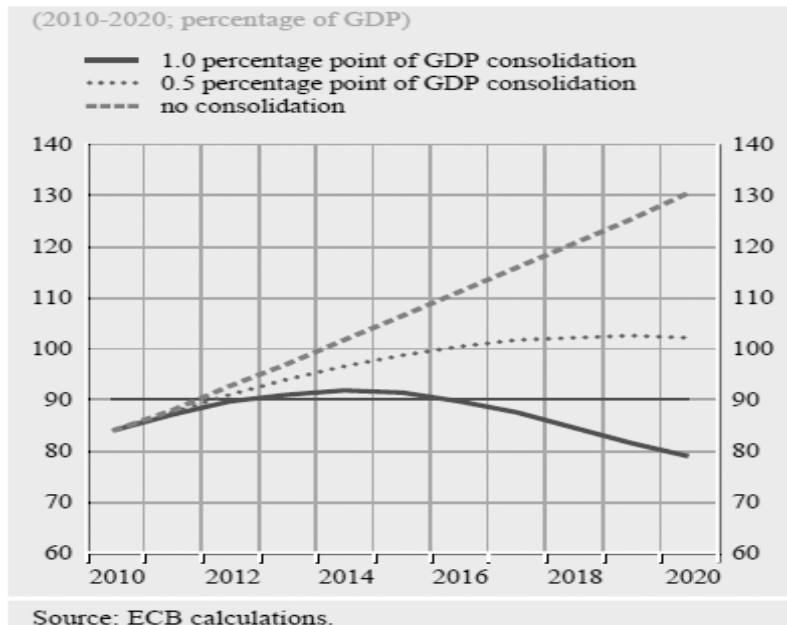
〈표 1-Ⅲ-2〉 유럽국가 및 주요 선진국의 재정상황

| | Budget balance | | Gross debt | | Increase in ageing costs (percentage points of GDP) 2007-2060 | Fiscal adjustment needed 2010-2020 |
|----------------|----------------|-------|------------|-------|---|--|
| | 2010 | 1999 | 2007 | 2010 | | |
| Belgium | -5.0 | 113.7 | 84.2 | 99.0 | 6.9 | 4.7 |
| Germany | -5.0 | 60.9 | 65.0 | 78.8 | 4.8 | 4.0 |
| Ireland | -11.7 | 48.5 | 25.0 | 77.3 | 8.9 | 9.8 |
| Greece | -9.3 | 94.0 | 95.7 | 124.9 | 15.9 | 9.2 |
| Spain | -9.8 | 62.3 | 36.2 | 64.9 | 9.0 | 9.4 |
| France | -8.0 | 58.8 | 63.8 | 83.6 | 2.7 | 8.3 |
| Italy | -5.3 | 113.7 | 103.5 | 118.2 | 1.6 | 4.1 |
| Cyprus | -7.1 | 51.8 | 58.3 | 62.3 | 10.8 | - |
| Luxembourg | -3.5 | 6.4 | 6.7 | 19.0 | 18.0 | - |
| Malta | -4.3 | 57.1 | 61.9 | 71.5 | 10.2 | - |
| Netherlands | -6.3 | 61.1 | 45.5 | 66.3 | 9.4 | 5.5 |
| Austria | -4.7 | 67.2 | 59.5 | 70.2 | 3.1 | 4.7 |
| Portugal | -8.5 | 51.4 | 63.6 | 85.8 | 3.4 | 7.8 |
| Slovenia | -6.1 | 23.9 | 23.4 | 41.6 | 12.8 | 4.0 |
| Slovakia | -6.0 | 47.9 | 29.3 | 40.8 | 5.2 | 4.1 |
| Finland | -3.8 | 45.7 | 35.2 | 50.5 | 6.3 | 4.4 |
| Euro area | -6.6 | 71.7 | 66.0 | 84.7 | 5.2 | - |
| Canada | -3.4 | 91.4 | 65.0 | 81.7 | - | 4.4 |
| Japan | -7.6 | 127.0 | 167.0 | 199.2 | - | 13.1 |
| United Kingdom | -12.0 | 43.7 | 44.7 | 79.1 | 5.1 | 9.0 |
| United States | -10.7 | 60.4 | 61.9 | 89.6 | - | 12.0 |
| G7 average | -8.7 | 77.3 | 78.8 | 106.7 | - | 10.0 |

Sources: Spring 2010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 (AMECO database) an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10) in the case of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weigh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G7 aggregate are based on GDP data from the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10). The fiscal adjustment needed comes from the IMF (2010a). The increase in ageing costs data are taken from European Commission and EPC (2009).

- 또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상당한 비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낙관적인 EC 전망치에 따르더라도 의료, 펜션 및 장기요양에 대한 공공지출만 해도 향후 GDP 대비 5.2%만큼 증가할 전망
-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채무 수준이 높았던 것은 전례가 없으며, 과거와 다르게 공공부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과거에도,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전시에는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 이상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적이 있음
 - 공공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매우 낮았으나, 1980년대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
 - 그러나 부채는 저금리에서 조달되었음 (GDP 대비 5~6%를 넘지 않았음)
 -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 부채와 같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 따라서 부채 비율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
-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공부채가 견잡을 수 없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대비 6%에 해당하는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 2013년까지 유럽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낮춘다고 해도 공공부채는 GDP 대비 90%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
 - 영국은 2010년 봄, 2012/13 공공부채를 GDP 대비 85%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공부채도 이미 GDP 대비 90%에 이른 상황
 -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 G7 국가들은 GDP 대비 10%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지출억제를 통해 부채 안정화를 추구한다면 실질지출은 10~20% 감축해야 함

[그림 1-Ⅲ-1] 유럽지역 평균 정부부채의 중기 전망치



- 재정건전성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정위험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민간부문 부채의 영향과 두 번째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발생할 우발채무의 영향임
 - 민간부문 부채 증가는 가계 및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기 때문에, 공공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 유럽국가에서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암묵적 우발채무는 GDP 대비 20%에 달함
 - 유로지역의 민간부문 부채는 GDP 대비 170%에 이르며,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250%에 달함
 - 또한 다른 국가에 차용한 경우, 상대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채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면,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그리스에 차용한 국가들은 유로 지역 GDP의 5%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전망

〈표 1-Ⅲ-3〉 비금융 기업, 가계 및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

| | (percentage of GDP) | | | | | | | |
|----------------|----------------------------|-------|------------|-------|--------------------|-------|-------|-------|
| | Private | | | | General government | | Total | |
| | Non-financial corporations | | Households | | 1999 | 2009 | 1999 | 2009 |
| | 1999 | 2009 | 1999 | 2009 | 1999 | 2009 | 1999 | 2009 |
| Germany | 58.3 | 71.1 | 72.2 | 63.4 | 60.9 | 73.1 | 191.5 | 207.7 |
| Ireland | - | 204.2 | - | 120.8 | 48.2 | 64.0 | - | 389.0 |
| Spain | 54.4 | 140.0 | 42.8 | 86.0 | 62.3 | 53.2 | 159.6 | 279.3 |
| France | 74.9 | 108.7 | 36.4 | 53.6 | 58.8 | 78.1 | 170.1 | 240.4 |
| Italy | 53.0 | 83.2 | 21.6 | 42.2 | 113.7 | 115.8 | 188.4 | 241.1 |
| Netherlands | 95.6 | 94.2 | 83.1 | 127.9 | 61.1 | 60.9 | 239.8 | 282.9 |
| Portugal | 107.1 | 164.7 | 54.9 | 97.0 | 49.6 | 75.1 | 211.5 | 336.8 |
| Euro area | 71.9 | 104.6 | 49.6 | 65.8 | 71.9 | 78.7 | 193.4 | 249.1 |
| Canada | 61.4 | 53.6 | 68.3 | 82.9 | 91.4 | 82.5 | 221.0 | 219.0 |
| Japan | 129.5 | 95.9 | 75.8 | 65.5 | 127.0 | 192.9 | 332.2 | 354.3 |
| United Kingdom | 73.1 | 116.3 | 66.6 | 103.1 | 43.7 | 68.1 | 183.4 | 287.5 |
| United States | 64.9 | 77.6 | 69.8 | 96.4 | 60.4 | 83.0 | 195.1 | 257.0 |
| G7 average | 78.4 | 84.6 | 65.9 | 80.2 | 77.3 | 100.8 | 221.6 | 265.7 |

Sources: Private sector: OECD (National Accounts), ECB (Quarterly Euro Area Accounts) in the case of the euro area and ECB calculations; public sector: ECB (Government Statistics) in the case of EU countries and the euro area aggregate, OECD (Economic Outlook) for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ECB calculations.

Notes: The debt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covers loans and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of this sector. The debt of the household sector consists of loans. The G7 figures have been aggregated using GDP weights.

〈표 1-Ⅲ-4〉 유로지역의 국가간 우발채무

| Country | EFSF | Greece | EFSF | Greece | Total |
|-----------------|----------------|----------------|---------------------|---------------------|-------|
| | (EUR billions) | (EUR billions) | (percentage of GDP) | (percentage of GDP) | |
| Belgium | 15.3 | 2.9 | 4.4 | 0.8 | 5.2 |
| Germany | 119.4 | 22.3 | 4.9 | 0.9 | 5.8 |
| Ireland | 7.0 | 1.3 | 4.4 | 0.8 | 5.2 |
| Spain | 52.4 | 9.8 | 5.0 | 0.9 | 5.9 |
| France | 89.7 | 16.8 | 4.6 | 0.9 | 5.4 |
| Italy | 78.8 | 14.7 | 5.1 | 0.9 | 6.0 |
| Cyprus | 0.9 | 0.2 | 5.0 | 0.9 | 5.9 |
| Luxembourg | 1.1 | 0.2 | 2.8 | 0.5 | 3.3 |
| Malta | 0.4 | 0.1 | 6.8 | 1.2 | 8.0 |
| Netherlands | 25.1 | 4.7 | 4.3 | 0.8 | 5.1 |
| Austria | 12.2 | 2.3 | 4.3 | 0.8 | 5.1 |
| Portugal | 11.0 | 2.1 | 6.6 | 1.2 | 7.9 |
| Slovenia | 2.1 | 0.4 | 5.9 | 1.1 | 7.0 |
| Slovak Republic | 4.4 | 0.0 | 6.6 | 0.0 | 6.6 |
| Finland | 7.9 | 1.5 | 4.5 | 0.8 | 5.3 |
| Greece | 12.4 | 0.0 | 5.2 | 0.0 | 5.2 |
| Total euro area | 440.0 | 79.2 | 4.8 | 0.9 | 5.7 |

Source: EFSF and European Commission.

- 재정건전화의 장기적 편익은 성장과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
 - 재정적자 감소는 정부 저축을 증가시키고, 실질이자율이 감소하여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시킴
 - 또한 재정건전화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정부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여 정부의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이에 의존하는 민간 차입비용도 함께 감소하여 민간 투자 증가
 -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여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증가시킴
 - 정부는 안정된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경제적 충격이 있을 때 자동안정장치를 발동하여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음
 -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부도 위험을 낮추어 은행 및 기업, 가계의 투자 및 소비를 늘려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
 - 기존문헌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경우 성장률이 저하됨 (Reinhart and Rogoff, 2010; Checherita and Rother, 2010; Kumar and Woo, 2010)

-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성에 있어서 세입 증대보다는 지출 감소를 통한 방식이 장기 경제 성장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방만한 지출정책을 운영해 왔기 때문
 -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면, 조세로 인한 왜곡효과를 줄이고, 가계의 부를 증가시켜 수요가 증가
 - 지출억제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 전반적인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개선하고, 따라서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킴
 - 성공적인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은 10년 등 중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시행해 왔으며, 지출감소, 특히 이전지출, 보조금 및 정부소비(교육) 억제에 주력하고, 제도적 기틀을 강화하였음
 - 또한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출 감축 규모를 줄여야 함
 - 교육 및 인적개발에 투자하여, 공공부문 지출이 장기적으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지출의 경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탈세 인센티브를 줄이도록

설계해야 함

-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국내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재정안정의 기대효과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긴축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지만, 실질이자율 감소로 인해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켜, 장기적 편익이 단기적 손실을 넘어설 것
 -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안정화에 대한 기대 → 정부부채에 대한 금리 감소 및 신용등급 개선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 투자 증가 → 성장
 - 기대효과(expectation effect)가 친성장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 현재 재정여건이 많이 악화된 상태인 경우, 2) 구조개혁을 수반하는 신뢰성 있는 건전화 정책, 3) 근로의욕 고취 및 소비 확대의 인센티브 제공, 4) 재정건전화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탄력성이 큰 경우, 5) 수용적인 환율 및 금리정책 등의 여건이 필요함

라. 삼성경제연구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 (2010.10) 中 IV. 국가재정 파급효과

- 2010~2018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연금, 보건 및 복지관련 지출이 증대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
- 따라서 고령자 비중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9개의 공공사업을 선별하여, 2010년~2018년간 동 9개 사업의 지출 변화를 추정하여 재정부담 예측
 - 고령자 관련 9개 사업은 3개의 항목(공적연금, 보건사업, 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Ⅲ-5〉 고령자 관련 9개 사업

| 구분 | 고령자 관련 9개 공공사업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
| 보건사업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
| 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생활안정 |

SECTION 1 >>

- 고령화 관련 9개 공공사업 지출은 2009년 62.9조원(GDP 대비 5.9%)에서 2018년 144.9조원(GDP 대비 7.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1.4%p 증가(연평균 9.1조원, GDP 대비 0.5%)에 그침
 - 공적연금 지출은 2009년 20.2조원에서 2018년 50.4조원으로 30.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GDP 대비 1.9%에서 2.62%로 0.72%p 증가
 - 보건지출은 2009년 36.2조원에서 2018년 76.7조원으로 40.5조원 증가가 예측되는데 이는 GDP 대비 0.6%p 증가를 의미
 - 마지막으로 복지사업은 2009년 6.3조원에서 2018년 13.9조원으로 7.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0.13%p 증가를 의미

〈표 1-Ⅲ-6〉 고령자 관련 9개 사업의 지출 변화 추이

| 구분 | 사업 | 2009년 | 2018년 | 변화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 20.2조원 (GDP 대비 1.9%) | 50.4조원 (GDP 대비 2.62%) | +30.2조원 (GDP 대비 0.72%p 증가) |
| 보건사업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 36.2조원 (GDP 대비 3.42%) | 76.7조원 (GDP 대비 4.01%) | +40.5조원 (GDP 대비 0.6%p 증가) |
| 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생활안정 | 6.3조원 (GDP 대비 0.59%) | 13.9조원 (GDP 대비 0.72%) | +7.6조원 (GDP 대비 0.13%p 증가) |
| 합계 | | 62.9조원 (GDP 대비 5.9%) | 144.9조원 (GDP 대비 7.3%) | +82조원 (GDP 대비 1.4%p 증가) |

- 이 결과는 향후 9년간 고령자 비중 증가에 따른 공공지출 규모가 2배 이상 상승하지만, GDP 대비 증가폭은 1.4%p에 불과해 공공지출 증가 규모는 제한적임을 보여줌
 -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없는 경우,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 82.5조원(GDP 대비 4.2%)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 24%에 2%만 추가투입하면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재정부담은 소화 가능
 - 고령화 관련 지출이 1%p 증가시 성장률이 0.22%p 하락한다는 OECD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2010~2018년 성장률은 0.04~0.31%p 하락할 전망
 - 그러나 이러한 GDP 손실은 연평균 7.3조원(2009년 가격, GDP의 0.7%)에 그칠 전망

마. 한국경제연구소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2010.10)

- 국가채무 위기는 국채규모보다는 국가채무 구성, 재정통계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경제 펀더멘털, 민간부문 부채 비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국채규모가 작더라도 국가채무 구성에 있어 외채 비율이 높다거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으면 국가채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국채규모가 높은 일본, 싱가포르는 외채비율이 낮아 위험이 적지만, 국채규모가 작더라도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외채비율이 높아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는 국채규모나 구성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빠른 증가속도, 짧은 만기, 높은 잠재적 채무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채 비중은 GDP 대비 35.6%로 OECD 평균인 91.6%보다 낮음
 - 국채 구성을 살펴보면, 외화표시 국채비율 3.1%, 외국인 보유 비율 약 8%로 낮은 수준
 - 형태별 구성은 국채* 94.7%, 차입금 1.2%, 국고채무부담행위 1%, 지방정부 순채무 3.1% 차지
 - * 국고채권 82%,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성질별 구성은 적자성 채무** 48.6%, 금융성 채무*** 51.4%
 - ** 적자성 채무: 일반회계 적자 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기타 항목
 - *** 금융성 채무: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및 기타
 - 그러나 2000~2008년 사이 국채 증가속도가 유로지역보다 훨씬 높음 (우리나라 국채 증가율 17% vs. 유로지역 8.7%)
 - 또한 국채 만기가 2004년 3.3년→2009년 3.9년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영국 13년, 프랑스 7.1년, 이탈리아, 그리스 7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높은 금리로 국채 발행
 - 국가채무 포함 기준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국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정부 정의시 공기업과 비영리공공기관의 구분이 협소하고, 기금 포함 범위가

상이함

– 잠재적 채무*를 포함하면 2007년 국채 규모는 GDP 대비 77~130%로 증가

* 국회의 예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 부채, 공기업 부채, 중앙은행 준재정활동으로 야기되는 부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연금분야의 책임적립금 등

○ 적자 규모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어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특히 사회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외평채발행 규모를 억제해야 함

○ 적자성 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투자 지출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2010년 보건복지재정은 81조원(총지출의 27.8%)이며, 이 중 의무지출이 71.5%를 차지함 (항목으로 보면 공적연금이 32.2%로 가장 높음)

– 의무지출사업은 지급 기준 및 수준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려움

– 따라서 유사·중복 사업 방지, 부정수급 방지, 성과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 등 지출의 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선을 꾀해야 함

– 또한 급여 및 지급구조 개선,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공적연금 기금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함

○ 금융성 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안정성과 운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외평채 발행 규모를 억제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국채 “수준” 관리와 “위험” 관리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국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관리 방법으로는 총량관리, 부문별 관리, 제도적 관리 등이 있음

– 확정채무 뿐만아니라 직접채무,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 등 상세한 채무 정보가

- 담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함
- 예산지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 유도
- 예산집행조사를 강화하고 성과연계형 예산편성방식을 도입
- 국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전적인 모니터링 필요
 - 관리 방법으로는 국고채권 만기를 장기화, 만기도래일 집중 완화, 국고채권 투자 상품의 다양화, 외환보유고 관리, 다자간 통화스왑협정 체결, 국고채권 통합 발행, 국고채권 전문딜러제도 운용 등이 있음

바. 한국은행 “미국의 고용시장 부진 배경과 향후 전망” (2010.10)

-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경기회복기에 진입하였으나 실업률은 9%를 상회하는 등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장기실업자(27주 이상 실업지속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
 - 고용없는 경기회복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시장 부진의 원인은 ① 노동수급 불일치, ② 이주여건 악화, ③ 실업수당 확대로 보고 있음
 - (노동수급 불일치) 주택시장 침체로 노동집약적인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생산, 사무, 행정 등과 같은 단순 반복업무직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수요하는 첨단기술, 과학, 엔지니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이주여건 악화) 거주지의 경기상황이 악화된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상황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이주가 어려움
 - (실업수당 확대)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26주에서 최대 99주까지 확대하

SECTION 1 >>

여 실업상태가 고착되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이는 비교적 관대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유럽(평균 78주)보다도 높은 수준
- 시카고 연준은 실업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실업보험 지급기간 확대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 금번 경제위기 이후 고용시장은 2011년 하반기, 주택 및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풀릴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는 취업센터를 통한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직업훈련, 기업과 구직자간의 사소통 원활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주택압류 방지 대책 등을 통해 거주이전의 제약을 완화해야 함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How Grim a Fiscal Future?,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2010, Vol. 47, No. 3 (September 01, 2010)
2. Government Investment and Fiscal Stimulus, IMF Working Paper No. 10/229 (October 1, 2010)
3. Monetary and Fiscal Policy Interactions in the Post-war U.S., IMF Working Paper WP/10/243 (1 Nov, 2010)
4. After the Crisis_Assessing the Damage in Italy, IMF Working Paper WP_10_244 (1 Nov, 2010)
5. A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 IMF Working Paper No. 10/245 (1 Nov, 2010)
6. Structural Breaks in Fiscal Performance: Did Fiscal Responsibility Laws Have Anything to Do with Them?, IMF Working Paper No. 10/248 (1 Nov, 2010)
7. Structural Breaks in Fiscal Performance: Did Fiscal Responsibility Laws Have Anything to Do with Them?, IMF Working Paper No. 10/248 (1 Nov, 2010)
8. Impact of Regulatory Reforms on 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Staff Position Note No. 2010/16 (3 Nov, 2010)
9. Fiscal Exit: From Strategy to Implementation, Fiscal Monitor: November 2010, (4 Nov, 2010)

□ OECD

1. The Consequences of Banking Crises for Public Debt,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801 (Sep 2010)
2.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803 (Sep 2010)

SECTION 1 >>

3.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United Stat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806 (Oct 2010)
4. Implementing Cost-Effectiv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807 (Oct 2010)
5. OECD Economic Outlook No. 88 (Nov 2010)
6. Are global imbalances sustainable? Shedding further light on the causes of current account reversal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813 (Nov 2010)
7. Tax Transparency: Report on progress made against international tax evasion, Report submitted to G20 Finance Ministers in Seoul (Nov 2010)
8. Seizing the Benefits of Trade for Employment and Growth, Joint Report to G20 Seoul meeting (Nov 2010)

□ World Bank

1. Costs of taxation and benefits of public goods with multiple taxes and good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10 (1 Sep, 2010)
2. Conflicts and returns to st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28 (1 Sep, 2010)
3. Financial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natural disasters : a prime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29 (1 Sep, 2010)
4. Subnational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50 (1 Oct, 2010)
5. The great crisis and fiscal institutions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and central As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53 (1 Oct, 2010)
6. Dealing with politics for money and power in infrastruc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55 (1 Oct, 2010)
7. Reform and backlash to reform : economic effects of ageing and retirement polic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470 (1 Nov, 2010)

□ ADB

1. Asia's Contribution to Global Rebalancing, ADB WP No. 58 (Sep 2010)
2. Economic Growth in Asia: Determinants and Prospects, ADB WP No. 220 (Sep 2010)
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Update: The Future of Growth in Asia (Sep 2010)
4. Responding to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Meeting the Challenges in Asia, ADB WP No. 60 (Oct 2010)
5. ADB Regional Forum to provide post- crisis policy insights, ADB Annual Report (Nov 2010)

□ ECB

1.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and recession on Mediterranean countries' economies, ECB Occasional Paper No. 118 (Aug 2010)
2. Bank heterogeneity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CB WP No. 1233 (Aug 2010)
3. Imposing parsimony in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ECB WP No. 1234 (Aug 2010)
4.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ECB WP No. 1237 (Aug 2010)
5. Supply, demand and monetary policy shocks in a multi-country New Keynesian Model, ECB WP No. 1239 (Sep 2010)
6. Major public debt reductions: Lessons from the past, lessons for the future, ECB WP No. 1241 (Sep 2010)
7. Predicting recessions and recoveries in real time: The euro area-wide leading indicator (ALI) ECB WP No. 1246 (Sep 2010)
8. Monetary policy in exceptional times, ECB WP No. 1253, (Oct 2010)
9.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nd the great recession - Estimating the impact of a compression in the yield spread at the zero lower bound, ECB WP No. 1258 (Oct 2010)
10. A decade (and a global financial crisis) after Blinder: The interaction between

SECTION 1 >>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central banks, ECB WP No. 1260 (Nov 2010)

11. The benefits of fiscal consolidation in uncharted waters ECB Occasional Paper No. 121 (Nov 2010)
12. Keynesian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and spillovers in the euro area, ECB WP No. 1267 (Nov 2010)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 연구 제3권 제3호 (2010. 08)

1.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박완규, 김인배, 유지현
2. 평률세제 개편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조세부담의 재분배/김민성, 오시진
3. CVM을 적용한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총편의의 산정: 거리 - 소멸함수의 적용/엄영숙
4.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편입생 VS 비편입생/김홍균, 이지민
5.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백웅기, 서은숙
6.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을 추정 및 시사점/김학수

2010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10.22)

1.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헌법재정조항의 개정방향/옥동석(인천대학교)
2. 미국의 의료개혁의 정치경제학/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A Plague in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Citizens' Distrust in Government/오형나(한국개발연구원), 홍중호(서울대학교)
4.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 효율성 분석: 지방분권 전&후의 비교/이근재(부산대학교), 최병호(부산대학교)
5. The Impact of Pro-natal Policies on Employment and Output in Korea : Cost-benefit Analysis/김현숙(숭실대학교)
6.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김정호(아주대학교)

7. 한국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유보임금과의 관계분석: 직무만족도를 이용하여/송헌재(한국조세연구원), 김경현(한국조세연구원)
8.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 산업별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분석/전승훈(대구대학교)
9.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전후의 쇠고기 소비추이 비교분석/김성태(청주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양분선택형 지불의사함수 추정의 실증적 쟁점분석/엄영숙(전북대학교)
11. 사회후생함수 추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분석/최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이영환(국회예산정책처), 신영임(국회예산정책처)
13. Fair and efficient adjudication of claims on multiple goods/주병기(서울대학교)
14. 아버지와 아들 : 한국사회에서 기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이우진(고려대학교), 고제이(고려대학교대학원)
15. Growth Regression Revisited : R&D Promotes Convergence?/김병우(충주대학교)
16.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장인성(국회예산정책처)
17.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이 및 국민경제적 역할/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18.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 정책의 귀착효과 비교/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19. 사회서비스 바우처 가격탄력성에 대한 소고: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송헌재(한국조세연구원), 김진(동덕여자대학교)
20.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편익분석/조선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 복지제도와 재정건정성/옥동석(인천대학교)
22.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 과제/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23. OECD 국가의 복지&재정 분석과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한림대학교)
24. Fiscal Adjustments by Outsiders/Shun-ichiro Bessho (Hitotsubashi University)
25. Economic Effects of Work-Oriented Welfare Policies in the Presence of Uncertainty

- on Job Opportunity/전영준(한양대학교)
26. The Welfare Cost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이철인(서울대학교)
 27. 한국역대선거에 있어서의 이념과 투표/이우진 (고려대학교), 이원석(고려대학교 대학원)
 28. 빈곤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한 분석/정의신(고려대학교 대학원), 송해련(고려대학교 대학원)
 29. 사회적 자본이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대명 (고려대학교 대학원)
 30.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의 편익 추정/신영철 (대진대학교)
 31. 정보통신비지출의 불평등 추이 분석/김성태(청주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김명규(청주대학교 대학원)
 32. The Time-Invariant Optimal Taxation/정민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철인(서울대학교)
 33. Public valu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Gwangju branch/곽소윤(고려대학교 대학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 재정정책 논집 제 12권 3호 (2010)
1.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김의섭, 임응순
 2. 빅맥지수는 환율전망에 유용한가?/조성일
 3.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홍민기
 4. 정보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간 상호대체성이 기업의 번들링 전략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정충영
 5.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강병구
 6.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우명동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2010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2010년 7월)

1.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우명동
2.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일본을 사례로/남황우
3. 지방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양영철
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지방채제도의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이현우
5.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김성주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2호 (2010년 8월)

1.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연상
2. 예산의 효율성 평가: 소방예산에 대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의 적용/유금록
3. 외부성을 고려한 일본의 공공자본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 효율성/이근재 · 황혜영 · 정희완
4.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일몰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김성주
5. 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방안/이창균
6. 지방재정관계 법률 체계에 대한 분석/김광용 · 정종필

2010 추계지방세세미나 (2010년 9월)

1. 일본의 지방환경세 논의와 지방탄소세의 가능성/카와카츠 타케시(川勝 健志)
2. 일본 지역자원개발세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석탄세-/하야시 마사히사(林 正寿)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세미나 (2010년 10월)

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확충 모형구축을 위한 대응전략/손희준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무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민기

SECTION 1 >>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8권 3호 (2010년 9월)

1. 일방대리인 법정 콘테스트와 성공보수/박성훈, 이명훈
2. 1940,50년대 광공업 생산통계의 추계와 분석/박기주, 류상윤
3.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김명규, 김성태
4.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대학 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모색/최광, 이성규
5. 인플레이션 위험의 동태적 헤지/김희호
6. 불완전경쟁시장하에서 실물충격이 최적 재정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김준영, 윤재형, 김인숙
7. 교육 투자수익률 분석/신동균
8. 진화경제학적 동반성장 모형/한성안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김진수 (2010.8)
2.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박노욱 (2010.8)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고선 (2010.9)
4.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박명호 (2010.9)
5. 해외부동산투자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노영훈 (2010.9)
6.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주요 특징 및 요인별 분해/성명재 (2010.10)
7.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김지영 (2010.10)

세미나 자료

1.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안종석, 박명호, 고선, 구자은 (2010.11)

기타연구자료

1. KIPF 재정동향 제3호 (2010.9)
2.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재정 ·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2010.9)
3.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보고서 (2010.10)
4.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 역할과 정책과제: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2010.10)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2009회계연도 결산 쟁점 분석 (2010.9.6)
2.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9.15)
3. [예산현안분석 제36호]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 (2010.9.16)
4. [예산정책보고서 제12호]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10.10.13)
5.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2010.10.20)
6. [예산현안분석 제37호]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2010.10.22)
7.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II, III (2010.11.2)
8. 2011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I, II (2010.11.2)
9. 2011년도 예산안 총괄 (2010.11.2)
10.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편 (2010.11.4)

경제분석 보고서

1. 136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11.1)
2.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8호) (2010.11.1)
3. [경제현안분석 제57호]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2010.11.1)
4.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7호) (2010.10.1)
5.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2010.9.14)
6.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6호) (2010.9.1)
7.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7호) (2010.8.13)

8.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제5호) (2010.8.3)

기타보고서

1. [일자리 정책 연구 제3회]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2010.8.30)

포럼/간담회

1. 공적개발원조(ODA)사업평가 (2010.8.25)부동산 버블붕괴 후 일본의 정책대응 (2010.8.27)
2. 최근 수출입 구조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0.8.31)
3. LH공사 부채급증의 원인 및 재무위험성 평가 (2010.9.1)
4.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2010.9.1)
5.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회역할 강화 (2010.9.6)
6.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동향 특징과 환율전망(2010.9.8)
7.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 추계 (2010.9.8)
8. 사학연금 수입과 지출 추계 (2010.9.10)
9.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0.10.4)
10. 세무검증제도의 도입관련 쟁점 (2010.10.5)
1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론 (2010.10.27)
12.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10.11.11)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Economic Bulletin, August 2010 (2010년 8월)
2. click 경제교육 2010. September (2010년 8월)
3. 나라경제 2010. 9 (2010년 8월)
4. KDI 경제동향 2010. 9 (2010년 9월)
5. Economic Bulletin, September 2010 (2010년 9월)
6.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 (2010년 9월)

7. click 경제교육 2010. October (2010년 9월)
8. 나라경제 2010. 10 (2010년 10월)
9. KDI 경제동향 2010. 10 (2010년 10월)
10. Economic Bulletin, October 2010 (2010년 10월)
11. click 경제교육 2010. November (2010년 10월)
12.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10월 (2010년 10월)
13. 나라경제 2010. 11 (2010년 11월)
14. KDI 경제동향 2010. 11 (2010년 11월)
15.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임원혁 외 (2010년 11월)
16.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ro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임원혁 외 (2010년 11월)
17. KDI 경제전망, 2010 하반기 (2010년 11월)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시스템설계」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0년 8월)
2. 한국경제 60년사 국제컨퍼런스 (2010년 8월)
3. 2010 KDI 국제 컨퍼런스『경제발전과 개발원조 성과평가』 (2010년 11월)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정보 제2010-35호: 주요국 통화정책의 재원화 움직임과 시사점/종합분석팀 (2010.9.16)
2. 해외경제정보 제2010-37호: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본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종합분석팀 (2010.10.6)
3. 경제분석 제16권 제3호: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가격발견 효율성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원 (2010.10.8)
4. 해외경제정보 제2010-38호: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해외조사실 (2010.10.14)

SECTION 1 >>

5. 해외경제정보 제2010-40호: 미국의 고용시장 부진 배경과 향후 전망/구미경제팀 (2010.11.3)
6. 해외경제정보 제2010-43호: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현황과 과제/아주경제팀 (2010.11.10)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엔화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영식 외, SERI 경제포커스 제309호 (2010.09.14)
2.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이동훈 외, CEO 인포메이션 제772호(2010.09.15)
3.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황인성 외, 연구보고서(2010.09.15)
4.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평가: 위기는 끝났는가/구본관 외, CEO 인포메이션 제775호 (2010.10.13)
5.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 권한/도건우, SERI 경제포커스 제313호 (2010.10.19)
6. 글로벌 경제위기의 승자와 패자/정태수 외, 연구보고서(2010.11.02)
7.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방태섭 외, 연구보고서 (2010.11.03)
8. 2010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문외솔, SERI 경제포커스 제316호 (2010.11.09)
9.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 가능성 점검/박현수 외, CEO 인포메이션 제779호 (2010.11.10)
10.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인도경제/정무섭, SERI 경제포커스 제317호 (2010.11.16)
11.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곽수중 외, CEO 인포메이션 제780호 (2010.11.17)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LGERI 리포트: 중국경제가 급락한다? 리스크 있지만 경착륙은 없다/이철용(2010년 8월)

2. Weekly 포커스: 러시아 경제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광우(2010년 8월)
3. Weekly 포커스: 금리인상 서두를 필요 없다/강중구 (2010년 8월)
4. LGERI 리포트: 신흥·개도국 Top 6리스크/최병현 (2010년 9월)
5. LGERI 리포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유승경 (2010년 9월)
6. LGERI 리포트: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수출과 투자 둔화, 성장률 4%로 하락) (2010년 9월)
7. Weekly 포커스: 2009년 이후 소득 격차 완화는 일시적 현상/윤상하 (2010년 10월)
8. LGERI 리포트: 미·중 환율갈등과 원화환율/배민근, 이창선 (2010년 10월)
9. Weekly 포커스: 중국이 보는 '환율전쟁'의 배경과 해법/우치양 (2010년 11월)
10. LGERI 리포트: G20 정상회의, 환율갈등 둘러싼 각국 입장과 의장국의 역할/신민영, 이창선, 이근태(2010년 11월)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보고서

1. KERI Economic Bulletin/한국경제연구원 (2010.8.24)
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0년 8월호/한국경제연구원 (2010.8.23)
3.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조경엽 (2010.10.26)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현진권 (2010.8.19)
2. 교육관련정책: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전용덕 (2010.8.26)
3.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효과, 한계 및 대안/이인권(2010.9.2)
4.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 제조업: 제조업 강국의 의미와 시사점/김용열 (2010.9.9)
5.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성찰/신중섭 (2010.10.7)
6.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조영기 (2010.10.21)
7.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조형곤 (2010.11.4)

정책모니터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 및 과제/김상겸 (2010.8.12)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제686회]서울 G20 정상회의의 관전(觀戰) 포인트/손지애 (2010년 11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상하이시 주택보유세(房産稅) 개혁의 주요 이슈와 전망/노수연 외(2010년 7월)
2.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이형근 외 (2010년 8월)
3.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정형근 외 (2010년 8월)
4. 중·홍콩 CEPA VIII 보충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여지나 (2010년 8월)
5.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박철형 (2010년 9월)
6.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조미진 외 (2010년 9월)
7.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손기태 외 (2010년 10월)
8.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년 10월)
9.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박영준, 오용협 (2010년 10월)
10.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김한성 외 (2010년 10월)
11. “12차 5개년”규획 기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성장 전망/북경사무소 (2010년 10월)
12. 중국 11.5규획의 목표달성 현황과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전망/북경사무소 (2010년 10월)
13. 인(印)·일(日) FTA 타결 영향과 대응/조충제 외 (2010년 10월)
14.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고희채 (2010년 11월)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금융그룹에서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송옥렬 (2010.9)
2.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risis and Reforms/Jai-Won Ryou 외 (2010.9)
3.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서병호 (2010.9)
4.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중심지에 대한 함의/송치영 외 (2010.9)
5. 최근 달러 캐리거래의 동향과 시사점/김정한 외 (2010.9)
6. 국내외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서병호 외 (2010.10)
7.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강종만 외 (2010.10)
8.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이석호 외 (2010.10)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김정한 외 (2010.10)
9.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이지연 (2010.10)
10.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노형식 (2010.10)
11.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재연 (2010.10)
12.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장민 외 (2010.10)
13. 서민금융정책의 방향/정찬우 (2010.11)
14. Constructing an Enhanced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as a Global Central Bank/Gongpil Choi (2010.11)

세미나

1.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의 시각: 민간부문과의 대화」(2010.9.2)
2. 「금융위기 2년 평가 토론회」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5주년 기념 (2010.9.15)
3. 「바람직한 서민금융시스템의 모색」 토론회 (2010.9.16)
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2010.10.5)
5.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숍 (2010.10.6)

SECTION 1 >>

6. 2010년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2010.10.13)
7. 2010년 금융동향과 2011년 전망세미나 (2010.10.28)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II. 미 국 (FY2011: 2010.10~2011.9)

III. 일 본 (FY2010: 2010.4~2011.3)

IV. 영 국 (FY2010-11: 2010.4~2011.3)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VI. 독 일 (FY2010: 2010.1~2010.12)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VIII. 호 주 (FY2010-11: 2010.7~2011.6)

I 주요국 동향*

- 2010년 3~4분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상 7개국은 재정건전화와 더불어 고용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성장 및 고용촉진에 주력하는 반면, 유럽 3개국(영국, 독일, 프랑스)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큰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고용촉진법, 여행증진법 등을 통해 실업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이번에도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교육자 해고방지를 위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고용창출 및 실업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신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디플레이션 및 엔고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꾀함
 -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주택에코포인트제 등)을 운영
 -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적인 지출정책 제시
 - 영국은 연금소득공제 한도 축소, 각종 수당에 대한 지출 상한 설정, 복지예산 삭감, 공공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의지를 표명함
 -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성장 및 고용 지원, 교육 및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문 개혁, 국방 및 안보 관련 투자 증진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을 소홀히 하지 않음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 프랑스는 FY2011 예산안에서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감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채무 및 연금을 제외한 정부지출 안정: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재정을 위협하는 감세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
 - 지난 11월 10일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연금수령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험 관련 지출증가율을 3%로 제한하는 등 사회보장 부문에서 재정안정에 주력
- 독일의 경우도, 항공세 및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에너지세 및 양육수당법을 개정하는 등 세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보장 지출을 낮추기 위해 수혜혜택 축소, 급여의 중복 수령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산을 수반한 법률의 형태로 재정강화계획을 시행하여, 2011년 이후 헌법상 부채역제 규율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의 구조적 적자를 500억유로 이하로 억제할 것을 목표
- 특히, EU 회원국들은 몇 차례 재정위기를 맞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정(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재정규율을 강화할 메커니즘 도입
 - EU 회원국들은 기존 SGP 재정준칙인 재정적자 GDP 대비 3%, 부채비율 GDP 대비 60% 규정을 엄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제재 메커니즘을 가동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내인 경우, 예방적 제재가 가동되어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를 운영해야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인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정적 제재가 가동되어 기존보다 신속한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벌금부과, EU 보조금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재 메커니즘은 회원국 다수가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역다수결 방식(reverse majority rule) 채택
 - SGP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간 예산정책상 긴밀한 공조를 위해 2011년부터 European

semester 제도 시행에 동의 (2010.9.7)

- 동 제도는 각 회원국들의 주요 예산 및 구조적 정책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정하도록 하여, 경제정책 공조, 예산규율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매년 3월, EU에서는 직면한 주요 경제적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들에 대해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 같은 해 4월, 각 회원국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국의 중기 예산 전략을 검토하고, 고용 및 사회통합 같은 분야에서 취할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 6월과 7월에 걸쳐 EC에서는 제출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다음해 회원국들의 예산 확정 전에 반영하도록 함

□ 캐나다와 호주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재정지표도 예상보다 낙관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중기적으로 재정흑자를 기대

- 캐나다는 경제 및 재정상황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FY2015-16에는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0.1%)를 기대하고 있음
 - 경기부양 2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실업급여 지급에 많은 재원을 배분
- 호주는 민간부문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안정화되었고, 재정수지도 전망치보다 호전되어 FY2012-13에는 흑자예산(GDP 대비 0.2%)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할 것
 - 아울러 고용창출, 생산성 제고, 물가안정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투자할 것

II

미국 (FY2011: 2010.10~2011.9)

1. 세제개편

- 9.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 지원법(Small Business Jobs and Credit Act of 2010)” 발효
 - 이번에 발효된 중소기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감면제도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
 - SBA⁴⁾대출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소형 은행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300억 달러의 ‘중소기업대출펀드’를 설립
 - 중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대,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창업비용 공제한도 확대 등 120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포함
 - 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매업자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증진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9.30일 의회는 지난 2월 행정부가 제출한 FY2011예산안에 대한 연간 세출법을 모두 의결하지 못하여 준예산 발효
 - 2010.12.3일까지 정부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준예산은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FY2010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

나. 추경

- FY2010 미국 특허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추경예산 배정
 - 8.10일 특허청(USPTO)에 대한 1억 2,900만달러의 추경예산이 효력 발생
 - 특허 및 상표 신청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배정

- FY2010 국경보안에 관한 추경예산 편성
 - 8.13일 남서부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 배정한 6억달러 규모의 추경예산 효력 발생
 - 이번 추경은 국토안보부, 법무부, 사법부에 각각 예산을 배정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3억 9,400만달러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1억 9,600만달러
 - 사법부(The Judiciary) : 1천만달러

- 교육자 해고 방지를 위한 지역 학교지구(local school districts) 지원 및 주정부 Medicaid 프로그램 지원 정책 등을 위한 FY2010 추경
 - 8.10일 교직 유지 지원 및 주정부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 발효
 - (교직 유지) 교육자 해고 방지를 위해 지역 학교지구(local school districts)에 10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 지원 포함
 - 이 자금으로 내년에 약 14만명의 교직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주정부 재정지원) 연방정부의 주정부 Medicaid 프로그램 지원 정책 시한을 연장
 - 현행 법(ARRA)하에서는 연방정부의 Medicaid 지출 분담비율이 모든 주정부에 대해 6.2%p 증가되며 실업인구가 많은 주정부에는 더 높은 분담비율 책정
 - 상기 인상률은 한시적인 조치로 올해 12월 31일에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연방정부의 보조 조치를 6개월 연장
 - 다만, 연방정부의 지원 기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보조 수준은 점차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규정

다. 결산

- 10.15일 발표된 FY2010 연방정부 결산자료는 지난 2월 발표된 전망치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
 - 당초 경기부양책 등으로 FY2010 재정적자가 GDP의 10.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전 회계연도보다 개선된 실적치를 보임
 - 이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지출과 Fannie Mae 및 Freddie Mac에 대한 지원이 예상보다 대폭 하락한 데에 주로 기인
 - 이에 따라, FY2010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8.9%를 기록하여 FY2009의 10.0%에 비해 1.1%p* 하락을 기록
 - * FY1987 이후 가장 빠른 1회계연도 동안의 회복세
- 연방정부 FY2010 결산 주요내용
 - (재정수지) FY2010 재정적자는 1조 2,94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1,220억달러 (9%) 감소
 - 적자감소의 원인은 재정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재정수입은 전 회계연도보다 2.7% 증가하였고, 지출은 1.8% 감소
 - 예상보다 적자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경기침체, 고실업,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 (재정수입) 법인세 및 연준(Federal Reserve)의 초과수익금 이전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한 반면, 개인소득세와 급여소득세(payroll tax)는 감소하여 전년과 같은 GDP의

14.9% 기록

- (재정지출) 주요 금융위기 관련 프로그램 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지출 감소를 견인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Fannie Mae 및 Freddie Mac 지원, 예금보험공사(FDIC)와 신용조합관리국(NCUA)의 예금보험 활동에서 전 회계연도에 비해 2,420억달러* 감소
 - * (FY2009)2,720억달러 → (FY2010)300억달러
 - 상기 2,420억달러의 지출감소를 제외한 지출에서는 1,780억달러(5.5%) 증가
 - FY2010 재정지출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급여와 같은 주요 복지부문 법정지출도 증가

<표 2-II-1> 2010회계연도 결산

(단위: 십억달러)

|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수지 |
|----------------------------------|-------|-------|--------|
| 2009회계연도 | 2,104 | 3,520 | -1,416 |
| GDP 대비 % | 14.9% | 25.0% | 10.0% |
| 2010회계연도 전망 | | | |
| 2011 Budget ('10.2월) | 2,165 | 3,721 | -1,556 |
| 2011 Mid-Session Review ('10.7월) | 2,132 | 3,603 | -1,471 |
| 2010회계연도 결산('10.10월) | 2,162 | 3,456 | -1,294 |
| GDP 대비 % | 14.9% | 23.8% | 8.9% |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지난 7월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효력 발생
 - 이 법은 2012년까지 500억달러의 예산낭비를 감소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Accountable Government Initiative 참조
 - 부정수단,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2009년에만 약 1,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정권초기부터 예산낭비 근절 정책을 시행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동법의 제정으로 연방기관의 부정지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 이 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프로그램의 연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확대하여야 함
 - 이에 따르지 않는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규정
- 9.14일 Accountable Government Initiative에 대한 대통령 훈령 발령
 - 지난 7월 윤곽을 드러낸 Accountable Government Initiative에 대한 대통령 훈령이 발령
 - 이번 훈령에서는 정부의 행정쇄신 의제를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
 - 연방기관이 주요하게 추진할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유도
 - 예산낭비 근절
 - 계약관행 개선
 - 민간과의 정보기술(IT) 격차 해소
 - 열린정부 지향
 - 정부 인적자원 관리 개선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상기 추경 내용 중 “교육자 해고 방지를 위한 지역 학교지구(local school districts) 지원 및 주정부 Medicaid 프로그램 지원 정책 등을 위한 FY2010 추경” 참조
 - 미국 경제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 연초부터 고용지원법(HIRE Act), 여행증진법(Travel Promotion Act) 등을 제정하여 실업률 해소를 도모
 - 이번 추경의 내용 역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제정

- 1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6천억달러를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 내년 6월까지 총 6천억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를 매달 750억달러씩 매입
 - 다만, 국채매입 속도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시장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동 조치를 조정
 - 연준이 기존 채권의 만기도래분을 장기물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감안하면 시장에 공급될 자금은 내년 2분기까지 8,500억~9,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 내년 6월까지 2,500억~3,000억달러를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조 7,000억달러 규모의 채권매입을 통해 1차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데 이은 2차 후속 조치

다. 기타 정책이슈

- 오바마 집권 후반기 백악관 고위 참모 교체 가속화
 - 지난 7월 피터 오재그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장이 물러난 데 이어,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이 9월초 사퇴
 - 9월 래리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도 연말 정도에 퇴임 의사를 밝혀둔 상태
 - 안보라인 역시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도널런 부보좌관이 임명될 예정

- 11월 중간선거 비용이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10월 비당파적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선거후보자, 정당, 이익단체가 이번 선거에 지출한 비용이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이 금액은 지난 2006년 중간선거에 지출된 금액인 28.5억달러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
 - 책임정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자들 및 각 정당의 지출은 각각 14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나, 공화당이 외부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1.2일 치루어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온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개혁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 이번 선거에서는 구제금융, 건강보험 개혁, 감세, 재정적자 등 경제 및 재정정책이 이슈로 부각
 -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2006년 이후 4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슈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건강보험개혁법과 금융개혁법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이번 선거 결과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부유층에 대한 감세연장에 반대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정책 역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전망

Ⅲ

일본 (FY2010: 2010.4~2011.3)

1. 세제개편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2011년 예산에 대한 각 부처 개산 요구액 발표(2010.9.2)

□ 2011년 개산요구의 네 가지 기준 및 틀을 발표

○ 2011년도 예산은 정권 교체 후 최초의 본격적인 편성이며 지난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구성

i)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 기준

○ 각 부처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고용확대에 이바지하는 사업, 인재육성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

ii) 낭비를 근절하도록 총예산 편성

○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사업구분 및 행정사업 평가의 결과 반영
- 20년 이상 경과한 사무사업의 경우, 폐지를 전제로 검증
- 독립행정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청 시설비용 삭감 등

iii)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2010.6.22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세출대상 경비가 약 71조엔임을 인식하고 국채발행액도 2010년도 당초 예산의 발행액(약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노력

iv)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 각 부처 간의 예산 조정 및 배분에 관련된 자료 및 예산요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편성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

□ 2011년도 일반회계 추정 요구액

- 2011년도 예산의 경우, 일본경제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후생노동성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지난해에 비해 삭감된 예산을 요구
 - 특히 방위성과 법무성이 각각 전년 대비 9.3%, 8.4% 감소한 약 6,200억엔과 약 4조 3,400억엔을 요구
 - 가장 예산규모가 큰 후생노동성의 경우에만 2010년도 예산에 비해 약 1조 1,100억 엔이 증가한 280조엔가량을 요구
- 국채비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약 2조 2천억엔 가량(전년대비 16.8%)이 증가한 9조 3,800억엔을 요구

<표 2-Ⅲ-1> 2011년 일반회계 추정 요구액

(단위: 억엔)

| 소관 | 전년도 예산액(당초) | 2011년 예산요구액 | 비교증감액 |
|------------------|----------------|----------------|---------|
| 황실비 | 65 | 64 | △1 |
| 국회 | 1,490 | 1,426 | △64 |
| 재판소 | 3,232 | 3,226 | △6 |
| 회계검사원 | 178 | 175 | △3 |
| 내각·내각본부 등 | 5,608 | 5,146 | △462 |
| 경찰청 | 2,705 | 2,338 | △368 |
| 총무성 | 185,936 | 184,839 | △1,097 |
|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 174,777 | 175,497 | 720 |
| 법무성 | 6,798 | 6,227 | △571 |
| 외무성 | 6,572 | 5,841 | △731 |
| 재무성 | 12,928 | 11,866 | △1,062 |
| 문부과학성 | 55,926 | 49,720 | △6,206 |
| 후생노동성 | 275,561 | 286,667 | 11,106 |
| 농림수산업성 | 22,784 | 21,178 | △1,606 |
| 경제산업성 | 9,922 | 9,343 | △579 |
| 국토교통성 | 56,139 | 49,725 | △6,414 |
| 환경성 | 2,072 | 1,970 | △101 |
| 방위성 | 47,903 | 43,446 | △4,457 |
| 경제 위기대응·지역활성화예비비 | 10,000 | 10,000 | - |
| 예비비 | 3,500 | 3,500 | - |
| 소계 | 709,319 | 696,699 | △12,621 |
|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 | | | |
| 국채비 | 206,491 | 241,321 | 34,831 |
| 합계 | 915,810 | 938,020 | 22,210 |
| 2008년 결산부족 보전 | 7,182 | - | △7182 |
| 총합계 | 922,992 | 938,020 | 15,028 |

자료: 平成2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 재무성

□ 2011년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 요구액은 총 2조 9,445억엔으로 문부과학성과 국토교통성이 각각 8,628억엔, 7,703억엔으로 높음

SECTION 2 >>

〈표 2-Ⅲ-2〉 2011년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 요구액

(단위: 억엔)

| 소관 | 요구액 |
|-----------|--------|
| 내각·내각본부 등 | 547 |
| 경찰청 | 258 |
| 총무성 | 399 |
| 법무성 | 670 |
| 외무성 | 646 |
| 재무성 | 1,394 |
| 문부과학성 | 8,628 |
| 후생노동성 | 1,287 |
| 농림수산성 | 1,887 |
| 경제산업성 | 1,067 |
| 국토교통성 | 7,703 |
| 환경성 | 206 |
| 방위성 | 4,755 |
| 합계 | 29,445 |

자료: 平成2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 재무성

□ 2011년 재정 투·융자 계획 요구액

〈표 2-Ⅲ-3〉 2011년 재정 투·융자 계획 요구액

(단위: 억엔)

| 2010년 최초계획 금액 | 2011년 요구액 | 증감액 |
|---------------|-----------|----------|
| 183,569 | 155,423 | △ 28,146 |

자료: 平成2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 재무성

- 재정 투·융자의 경우 2011년도는 전년 대비 약 2조 8천억엔이 감소한 15조 54,000억 엔을 요구

나. 추경

- 경제산업성은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의 관련 시책에 대한 추경 예산을 발표 (2010.10.8)
 - 총 8,558.1억엔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고용 및 지역활성화 관련 지원액이 전체의 66.1%(5,653억엔)로 대부분을 차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정책적 이슈의 나.경제부양 및 경제성장 부분 참고

〈표 2-Ⅲ-4〉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관련 추경예산

(단위: 억엔)

| | |
|----------------------------|---------|
| 중소기업 고용 및 지역활성화 대책 | |
| 자금조달지원 | 5,653.0 |
| 기술개발 및 해외전개 지원 | 36.4 |
| 신규사업 활동지원 | 19.9 |
| 지역상업 활성화 | 21.8 |
| 고용 mismatch 해소 | 14.8 |
| 새로운 수요창출 | |
| 가전에코포인트 | 777.3 |
| 주택에코포인트 대상 확대 | 30.0 |
|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 | 145.3 |
| 국내신용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그린투자 지원 | 18.7 |
| 클린디젤 차량 구입 시 보조금 | 8.1 |
| 신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정비 | |
| 국내투자촉진 | |
| 혁신거점 입지 지원 | 303.0 |
| 아시아거점화 추진 | 35.6 |
| 경제연계 협정(EPA) 활용 촉진 | 1.6 |
| 혁신의 가속 | |
|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233.8 |
| 세계적인 산학관 집중 연계 거점의 형성 | 29.9 |
| 희토류 지원 | 999.8 |
| 엔고 장점 활용 | |
| 전략적 M&A 추진 | 100.0 |
| 희토류 지분 취득 | |
| 인프라 시스템 수출 촉진 | 73.4 |
| 육아, 의료 | |
|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 10.0 |
|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추진 | 15.0 |
| 의공 제휴에 의한 의료기기 개발 추진 | 30.0 |
| 합 계 | |
| 8,558.1 | |

주: 억엔을 단위로 하여 총 합계와 수치 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平成22年度補正予算案, 경제산업성

다.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해당사항 없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주택에코포인트 제도 2011년 12월 말까지 연장 및 확충을 결정 (2010.09.10)

- 친환경 주택의 신축 및 간호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 리폼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의 리모델링에 포인트를 발행하는 제도를 1년 연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에코 주택 리폼 등에 함께 설치하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주택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용 태양열 이용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절수형 변기, 높은 단열 욕조 등으로 포인트 발급 대상을 확대

2)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 (2010.9.10)

- “디플레이션 탈출”이 정부의 당면 경제운영 목표
 - 2011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신속한 디플레이션 종결 및 양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달성과 함께 일본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궤도로 올리고자 함
- 1단계: 급속한 엔고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고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경제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예비비(9,179억엔)를 활용한 긴급적인 조치를 실행한 바 있음
- 2단계: 1단계에 이어 경기 및 고용동향을 근거로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 기동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방안
 -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산업성은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을

발표 (2010.10.8.)

- 3단계: 예산과 세제 등에서의 2011년도의 신성장전략을 본격 실시함으로써, 디플레이션 탈출과 고용증진을 중점으로 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3) 경제산업성은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 (2010.10.8.)

- 「새로운 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중 2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급속한 엔고의 진행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을 위한 2011년의 정책방향을 포함

○ 2011년도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경제”를 위한 시책사업을 1) 고용 인재 육성, 2) 신 성장 전략의 추진 가속, 3) 육아·의료·개호·복지 강화, 4) 지역활성화·사회자본 정비·중소기업 대책, 5)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5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

- (고용)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취업지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을 도모함
- (성장) 환경에너지, 생명혁신 등 성장분야의 기반을 정비하여 성장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 (복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그 잠재수요의 실현을 고용확대로 연결
-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 (규제) 재원을 절감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표 2-Ⅲ-5>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관련 구체적 정책

1. 고용 인재육성

- (1) 신입사원 청년층 지원강화
 - 신입사원 취업활동 응원 프로그램 실시
 - 청년층 등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 장려금 확충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학생 사이의 선호 매칭
- (2) 고용조정 보조금 등에 의한 고용최소 생활 지원
 - 고용조정 조성금의 요건 완화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진하는 유인 확충
 - 주거대책의 확충 연장
- (3) 고용창출 인재육성
 - 주력분야 고용창출 사업의 확충
 -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 연장
 - 성장분야 등 인재육성지원 사업 실시
 - "새로운 공공"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 정비

2. 신성장전략 추진 가속

- (1) 그린혁신 추진: 환경에너지 강국 전략
 - 희토류 등 천연자원 확보를 추진
 - 친환경 주택과 에코가전 보급 촉진
 - 그린투자촉진
- (2) 생활 혁신 추진: 건강대국전략
 - 그린혁신 연구개발 지원
 - 라이프 혁신 연구개발 지원
- (3) 아시아 경제 전략 추진
 - 아시아거점화 추진
 - 인프라 및 시스템 해외전개 지원
- (4)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 전략 추진
 - 기술개발 등의 추진
 - 실증연구평가에 대한 기업 등의 시설설비의 정비 지원
 - 산업 혁신기구의 적극 활용
- (5) 엔고 장점 활용

3. 육아·의료·개호·복지 강화

- (1) 육아
 - 보육 서비스 등 기반 정비와 아동 학대 예방
 - 임신부 건강 검진에 대한 공비 조성의 지속 등
- (2) 의료
 - 지역의료의 재생 의료기관 기능 강화
 - 질병대책 추진
 - C형 간염 구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
 - 현행 고령자 의료제도의 부담 경감 조치의 지속

- (3) 개호 등 고령자의 생활의 안심의 확보
 - 개호 서비스의 충실
 - 지역의 일상적인 버팀목합 활동 체제 만들기
 - 주력분야 고용창출 사업의 확충

- (4) 복지
 - 생활 빈곤자 대책
 - 장애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체계 전환 지원 등
 - 자살 우울증, DV 피해자 지원 대책 추진
 - 생활 보호, 의료 보험에 의한 생활 지원

4. 지역활성화 · 사회자본정비 · 중소기업대책

- (1) 지역활성화
 - 내진화 등에 의한 안심 안전한 주거 생활 환경의 정비
 - 지상파 디지털 방송,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추진
 - 국민의 "음식"을 지키는 농림 수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 성장분야로 농림업 육성을 위한 지원
 - 관광지 조성의 추진과 국내 여행의 활성화
 - 지역의 눈높이에 섰다 지원 확충
 - 지방교부세의 증액

- (2) 사회자본정비
 - 지역경제의 활력 부활에 기여 인프라 정비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교한 인프라 등 지원

- (3) 중소기업대책
 - 자금 조달 지원
 - 기술 개발과 해외 전개 지원
 - 신규 사업 활동 지원
 - 지역 상업 활성화

- (4) 기타
 - 해상 보안체제 정비
 - 정보 수집 · 위성 체제 정비

5. 규제 · 제도 개혁

-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규제 개혁 100" 등의 다양한 개혁
- 규제 · 제도 개혁에 관한 분과회의 지속적 개혁 추진
- 종합특구 도를 염두에 둔 규제 개혁 검토

자료: 「円高・デフレ対応のための緊急総合経済対策」, 경제산업성

- 경기회복을 위해 크게 세가지 분야에 걸쳐 총 8,558.1억엔을 지원하는 대책(〈표 2-II-5〉 「엔고 ·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관련 추경예산 참고)
 - 첫 번째 부문은 중소기업 고용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총예산의 66.1%가 편성됨

-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받은 자금조달 지원 부문은 신용보증협회의 대출 보증 촉진, 연말 중소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차환 보증 확충, 소액 영세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두 번째 부문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가전 및 주택 에코포인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그린투자를 추진
 - 올해 가전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에코포인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777억엔가량의 예산을 증가시킴
 - 주택용 태양열 이용 시스템, 절수용 변기 등으로 포인트 발급 대상자를 확대
- 세 번째 부문은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으로 국내 투자 촉진 및 엔고 현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
 -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303억엔 규모로 산학관의 연계를 지원하고 실용화시키기 위해 공동연구 시설의 정비에 대한 보조를 실시
 - 히토류 등을 이용하여 산업의 고도화 및 재활용을 추진
 - 육아 및 의료 간호 부문에서 의료기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 추진

다. 기타 정책이슈

- 엔고현상
 -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엔화절상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미-일간 금리차 축소가 엔화 절상의 직접적인 배경이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디플레이션도 엔화 명목환율 절상의 요인임을 언급
 - 엔화값은 5월까지 달러당 90엔 안팎에서 움직이다 6월 말 88.5엔, 7월 말 86.5엔, 8월 말 84.6엔으로 가파르게 급등
 - 간 총리가 유임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사들이면서 엔화값이 더욱 급등
 -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2004년 3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에 개입

- 이날 하루동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 규모는 2조엔(약 27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이며 도쿄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런던, 뉴욕의 외환시장에서도 직접 개입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임
- 노다 재무상은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엔고는 경제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면서 시장개입 사실을 이례적으로 발표

○ 하지만, 환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불안으로 달러와 유로화값이 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엔화에 국제자금이 몰려 엔고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 미국이나 유럽의 공조없이 일본 정부 독자적으로 개입에 나서는 것도 부담
 - 자칫하면 아무런 효과없이 시장 자율성만 해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엔고현상이 지속되자 일본정부는 여전히 추가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10월 초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은 모두 엔화 절상 부담감을 직·간접적으로 지적
- 노다 재무상은 G20 경주회의에서 엔고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노다 재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정부가 G20 경주회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환율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구한 것이라 분석

IV

영국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 연금소득공제 연간 한도 및 생애 한도 축소 (2010. 10. 14)
 - FY2011-12부터 연금소득공제 연간한도를 225,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 축소, FY2012-13부터 생애한도 1,800,000파운드에서 1,500,000파운드로 축소
 - 연간한도 축소는 약 10만명에게 적용되며, 이들 중 80%는 10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 자임

- 은행세(Bank Levy) 법안 초안 발표 (2010. 10. 21)
 - 은행세는 영구세로 법률화되며 FY2012-13에 연간 25억파운드 규모로 예상
 - 2010.6 정부안 : FY2011-12에 0.4%, FY2012-13부터 0.7%
 - 은행세 법안 마련을 위한 자문(consultation)은 10월 5일 종료
 - 법안 초안의 주요 원칙
 - 과세대상 자본 및 부채(equity & liability)가 200억파운드 미만일 경우 면세
 - 파생상품과 기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순계 기준으로 접근
 - 고유동성자산 감면
 - 비보험 고객예금(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제외)은 세율을 절반으로 적용
 - 최종 법안은 2010년 내에 발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추진할 계획
 - 법안 내용은 재정법안(Finance Bill) 2011로 통합

- 2010년 6월 의회에 제출된 재정법안은 수정 없이 재정법(Finance Act) 2010으로 최종 승인 (2010. 7. 27)

- 재정법안 2010(Finance Bill (No.2) 2010) 의회 제출 (2010. 9. 15)
 - ※ 7. 12 ~ 9. 3까지 법안에 대한 자문과정 진행, 11. 22 현재 상원 2독회 진행중
 - 기업경영인센티브(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EMI) 영구화
 - EMI는 소규모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주식옵션(share option)을 제공할 경우 세금과 국가보험기여금(NICs)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0년에 도입
 - 이자소득세 및 특정 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수집 절차 변경
 - 정보수집 양식 변경 혹은 온라인 등을 통해 개인 조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금감면 조건인 R&D 지출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유 조항 삭제
 - 무탄소 차량에 대해 100% 초년도 공제 적용
 - 2010.4.1~2015.3.31까지 법인세에 적용, 2010.4.6~2015.4.5까지 소득세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준 변경 및 사적 목적의 지출과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금지 등 부가가치세 정비
 - 쓰레기매립세 저세율(톤당 2.5파운드) 적용 리스트 작성의 의무화
 - 국세청에서 재정법안 최종 승인 후 리스트를 발표해야 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
 - 재정법(Finance Act) 2009에서 도입된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범위 확대 등
 - 부가가치세, 보험료세, 기후변화부담금, 쓰레기매립세, 항공여객세, 주류세, 담배 생산세 등 총 15개 조세에 확대 적용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중기재정(Spending Review: SR) 2010 발표 (2010. 10. 20)

- 연정협약 주요사항 이행
 - NHS 지출 매년 실질 인상
 - 2011년부터 소득, 가격, 2.5% 중 최대치를 기초국가연금 연동 기준으로 적용
 - 기초국가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8년까지 66세로 상향조정
 - 2013년부터 해외원조 지출 규모를 GNI의 0.7%로 유지
 - 교육과 안보 및 국방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 학교 예산 매년 실질 인상, 교육 취약계층(disadvantage)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이행

- 중기재정계획 정책기조는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개혁(Reform), 국방 및 안보 (Defence & Security)
 -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기업 지원
 - 교통부문 투자 및 유지보수
 - : 도로건설과 지방교통제도, FY2011-12 ~ FY2014-15까지 총 100억파운드
 - : Network Rail(철도기반시설 관리회사), 140억파운드
 - 과학연구분야 경상지출 예산에 FY2014-15까지 총 46억파운드 배정
 - 성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 재원 2억 5천만파운드 증액(FY2014-15 기준) 등
 - (공정성) 학교에 대한 지출 유지와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 새로운 교육지원제도(fairness premium) 재원으로 FY2011-12 ~ FY2014-15까지 총 72억파운드 배정
 - 600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재건축,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지원을 위해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원 배정 등

- (개혁) 자유 증진과 책임 분담의 연정 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개혁
 -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 자율성 강화, 양형제도(sentencing framework) 개혁
 - 공공서비스연금의 가입자 기여율 인상을 통해 FY2014-15 기준 연간 18억파운드 절감
 - 중앙정부 행정예산 34% 삭감으로 FY2014-15 기준 연간 59억파운드 절감 등
- (국방 및 안보) 전략적 국방 및 안보 검토서 결과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출에 대한 검토와 사이버 국방 및 예상 위협 대응에 대한 투자 설정
 - 해외원조 지출 중 국제적 갈등 및 불안 완화를 위한 지출비중을 30%로 확대(현재 약 20%, 19억파운드 규모),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중점적으로 원조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FY2011-12 ~ FY2014-15까지 총 6억 5천만파운드 신규 배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 계획 및 연간관리지출(AME) 전망
 - (DEL) FY2014-15 부처별 지출한도는 FY2010-11에 비해 약 90억파운드 감소
 - FY2014-15 NHS 의료지출은 FY2010-11에 비해 약 106억파운드 증가
 - 특별 예비비(Special Reserve)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2012 런던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비용 93억파운드 유지
 - : 2,800호 신규주택 건설, 250에이커 규모의 공원 조성

SECTION 2 >>

〈표 2-IV-1〉 부처별 지출한도(DEL)¹⁾

(단위: 십억파운드)

| | baseline ²⁾ | 계획 | | | |
|-------------------------------------|------------------------|---------------|---------------|---------------|---------------|
| | FY 2010-11 | FY 2011-12 | FY 2012-13 | FY 2013-14 | FY 2014-15 |
| Education | 58.4 | 56.1 | 56.3 | 56.2 | 57.2 |
| NHS (Health) | 103.8 | 105.9 | 108.4 | 111.4 | 114.4 |
| Transport | 12.8 | 13.0 | 13.1 | 12.5 | 12.0 |
| CLG Communities | 9.0 | 5.3 | 4.0 | 3.4 | 3.2 |
| CLG Local Government | 28.5 | 26.1 | 24.4 | 24.2 | 22.9 |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18.6 | 17.6 | 16.7 | 15.5 | 14.6 |
| Home Office | 10.1 | 9.4 | 9.0 | 8.4 | 8.3 |
| Justice | 8.9 | 8.6 | 8.0 | 7.6 | 7.3 |
| law Officers' Departments | 0.7 | 0.7 | 0.6 | 0.6 | 0.6 |
| Defence | 32.9 | 33.8 | 34.4 | 34.1 | 33.5 |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 1.6 | 1.6 | 1.6 | 1.5 | 1.3 |
| International development | 7.8 | 8.1 | 8.8 | 11.3 | 11.5 |
| Energy and Climate change | 2.9 | 3.0 | 3.4 | 3.5 | 3.7 |
|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9 | 2.6 | 2.5 | 2.3 | 2.2 |
| Culture, Media and Sport | 1.5 | 1.6 | 1.5 | 1.3 | 1.3 |
| Olympics ³⁾ | 1.0 | 1.1 | 0.2 | 0.0 | -0.1 |
| Work and Pensions | 7.0 | 7.8 | 7.7 | 7.8 | 7.8 |
| Scotland | 28.2 | 27.3 | 27.6 | 27.5 | 27.7 |
| Wales | 15.0 | 14.5 | 14.5 | 14.5 | 14.6 |
| Northern Ireland | 10.5 | 10.3 | 10.3 | 10.3 | 10.3 |
| HM Revenue and Customs | 3.7 | 3.8 | 3.6 | 3.5 | 3.4 |
| HM Treasury | 0.2 | 0.2 | 0.2 | 0.2 | 0.2 |
| Cabinet Office | 0.4 | 0.5 | 0.4 | 0.3 | 0.5 |
| Single Intelligence Account | 2.0 | 2.1 | 2.1 | 2.1 | 2.1 |
|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 1.9 | 1.8 | 1.6 | 1.6 | 1.5 |
| Reserve | 4.1 | 3.3 | 3.4 | 3.5 | 3.6 |
| Special Reserve | 4.1 | 4.0 | 3.8 | 3.8 | 3.5 |
| Green Investment Bank | - | - | - | 1.0 | - |
| Total DEL | 378.2 | 370.1 | 368.8 | 370.1 | 369.1 |

주: 1)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합계. 단, 감가상각 제외

2) 일회성 지출 및 한시적(time-limited) 지출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발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3) 올림픽 지출은 문화·미디어·스포츠(Culture, Media & Sport) 부처의 부처별 지출한도에 포함됨

출처: Spending Review 2010, Table A.9

○ (AME) FY2014-15에 경상 연간관리지출 약 3,446억파운드, 자본 연간관리지출 약 69억파운드로 예측

- 에너지 및 기후변화(Energy & Climate Change) 부처의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관리지출로 분류
- AME 예비비는 FY2011-12에 10억파운드, FY2014-15에 40억파운드로 설정

〈표 2-Ⅳ-2〉 연간관리지출(AME)¹⁾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 경상지출 전망 | | | | | 자본지출 전망 | | | | |
|-------------------------------------|--------------|--------------|--------------|--------------|--------------|-----------|------------|------------|------------|------------|
| | FY2010-11 | FY2011-12 | FY2012-13 | FY2013-14 | FY2014-15 | FY2010-11 | FY2011-12 | FY2012-13 | FY2013-14 | FY2014-15 |
| Education | 2.2 | 2.7 | 3.3 | 3.7 | 4.2 | 0.0 | 0.0 | 0.0 | 0.0 | 0.0 |
| NHS (Health) | -2.0 | -1.6 | -1.0 | -0.4 | 0.2 | 0.0 | 0.0 | 0.0 | 0.0 | 0.0 |
| Transport | 0.0 | 0.0 | 0.0 | 0.0 | 0.0 | 0.3 | 0.3 | 0.3 | 0.3 | 0.3 |
| CLG Communities | -0.1 | 0.0 | 0.1 | 0.0 | 0.0 | 0.7 | 0.7 | 0.7 | 0.7 | 0.7 |
| CLG Local Government | 0.5 | 0.5 | 0.5 | 0.5 | 0.5 | 0.0 | 0.0 | 0.0 | 0.0 | 0.0 |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0.9 | 0.8 | 0.8 | 0.8 | 0.8 | 0.6 | 0.6 | 0.6 | 0.6 | 0.6 |
| Home Office | 0.7 | 0.8 | 0.9 | 0.9 | 1.0 | 0.0 | 0.0 | 0.0 | 0.0 | 0.0 |
| Justice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law Officers' Departments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Defence | 2.7 | 2.8 | 3.1 | 3.3 | 3.4 | 0.1 | 0.0 | 0.0 | 0.0 | 0.0 |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International development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0.0 | 0.0 | 0.0 |
| Energy and Climate change | 0.1 | 0.0 | 0.0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0.0 | 0.0 | 0.0 |
| Culture, Media and Sport | 4.6 | 4.6 | 4.9 | 4.7 | 4.8 | 1.0 | 0.8 | 0.7 | 0.7 | 0.7 |
| Work and Pensions | 151.5 | 155.6 | 158.1 | 159.1 | 163.7 | 0.2 | 0.0 | 0.0 | 0.0 | 0.0 |
| Scotland | 0.0 | 0.1 | 0.2 | 0.3 | 0.4 | 0.0 | 0.0 | 0.0 | 0.0 | 0.0 |
| Wales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0.0 | 0.0 | 0.0 |
| Northern Ireland | 5.2 | 5.5 | 5.6 | 5.7 | 6.0 | 0.3 | 0.3 | 0.2 | 0.1 | 0.2 |
| HM Revenue and Customs | 36.0 | 37.1 | 36.6 | 35.3 | 36.4 | 0.2 | 0.0 | 0.0 | 0.0 | 0.0 |
| HM Treasury | -2.6 | 0.4 | 0.2 | 0.1 | 0.0 | -0.1 | -0.1 | -0.1 | -0.1 | -0.1 |
| Cabinet Office | 1.4 | 1.4 | 1.6 | 1.8 | 2.0 | 0.0 | 0.0 | 0.0 | 0.0 | 0.0 |
| Single Intelligence Account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 0.2 | 0.2 | 0.2 | 0.2 | 0.2 | -0.1 | -0.1 | -0.1 | -0.1 | -0.1 |
|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 43.3 | 46.5 | 52.4 | 57.8 | 63.0 | | | | | |
| 순EU분담금 | 8.3 | 8.3 | 8.3 | 9.3 | 10.3 | | | | | |
| 공공부문연금지출 | 0.0 | 0.0 | -1.2 | -2.3 | -2.8 | | | | | |
| 지역재원조달(locally-financed) 지출 | 27.6 | 27.2 | 28.1 | 29.4 | 30.5 | 5.4 | 4.3 | 4.0 | 3.8 | 3.7 |
| 공기업 자체 자본지출 | | | | | | 7.4 | 7.4 | 7.3 | 7.3 | 7.3 |
| AME 예비비 | 0.0 | 1.0 | 2.0 | 3.0 | 4.0 | | | | | |
| 회계조정 | 14.1 | 14.4 | 15.6 | 16.5 | 16.2 | -7.9 | -6.8 | -6.8 | -6.9 | -6.2 |
| Total AME | 294.6 | 308.5 | 320.1 | 329.7 | 344.6 | | 7.3 | 6.7 | 6.4 | 6.9 |

주: 1) 총관리지출(TME)에 포함되지 않는 부처별 연간관리지출(AME) 제외, 학생대출 및 부처 비현금항목 제외
출처: Spending Review 2010, Table A.7 & A.8

- 지출관리구조 강화 계획 발표
 - SR에서 연간관리지출(AME)이 제외된 것과 차년도 이월(EYF) 제도를 이전 정부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분석
 - 연간관리지출(AME) 관리 방안은 FY2011-12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계획
 - 차년도 이월(EYF)의 경우 FY2010-11을 마지막으로 폐기
 - 이를 대체하여 각 부처의 회계연도 말 예산낭비를 방지할 새로운 제도의 설계는 2011년 3월말까지 구체화할 계획
 - 공공지출합의문(Public Service Agreements)도 종료되며 FY2011-12부터 새로운 부처별 사업계획(Departmental Business Plans)으로 대체
 - 정부부처의 행정예산(administration budgets) 범위에 비부처공공기구(NDPBs)와 기타 정부기관(arms length bodies)을 추가
 - 민자유치(PFI)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민자유치 사업에 지불해야 하는 세입비용을 관계부처(sponsoring department) 책임으로 전환

2) 세출예산법 승인

- 본세출예산안(2010. 6. 21)을 토대로 작성된 세출예산법안(Appropriation Bill) 승인 (2010. 7. 27)
 - 경상지출(resource authorised) 약 2,777억파운드, 현금소요(grants out of Consolidated Fund) 약 2,560억파운드 승인
 - 2010년은 총선이 치러진 해로 지난 4월에도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 c. 12)이 승인됨
 - 세출예산법안은 4월 7일 작성되어 의회에서 논의 절차 없이 2일만에 통과
 - 4월 세출예산법의 총액 승인 내용은 경상지출 약 2,182억파운드, 현금소요 약 2,190억파운드로 2009년 12월 통합국고자금법(Consolidated Fund Act)에서 총액으로 승인한 FY2010-11분 지출과 동일함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복지제도 개편 (2010. 10. 4)
 - 총 가구 급여지출 상한 설정 (2013년 기준, 주당 500파운드 정도)
 - 구직자수당, 소득보조, 고용지원수당 등 주요 소득대체 급여
 - 주거급여, 지방세급여 등 기타 자산조사 급여
 - 자녀급여 및 자녀세액공제
 - 간호인수당, 산업재해 장해급여 등 기타 급여
 - 고세율 납세자, 자녀급여(Child Benefit) 지급 대상에서 제외 (2013년부터)
 - 고세율 구간: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
 - 연간 약 10억파운드 삭감 예상

- 복지예산 삭감 및 공공인력 감축 (SR 2010)
 - 복지예산, FY2014-15기준 연간 70억파운드 추가 삭감
 - 6월 발표한 긴급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삭감규모는 FY2014-15기준 연간 110억파운드 규모
 - 근로연령(working-age) 인구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와 세액공제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Universal Credit 제도로 전환할 계획
 - 제도 전환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향후 4년동안 20억파운드 배정
 - 공공인력 49만명 감축
 - 긴급예산안에서 예산책임청은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공공인력이 49만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 2010년 11월에 전망치 업데이트 계획

<표 2-Ⅳ-3> SR 2010 복지개혁안

| 개혁안 | 세부내용 | 재정긴축 규모 |
|--|---|----------------------------|
|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AG(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포함되는 경우 ESA를 1년간으로 제한 약 1백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ESA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주 91~97파운드 지급 | FY2014-15기준 연간 20억파운드 |
|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 기발표 내용과 동일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 Pension), 일회성 급여는 제외 | FY2014-15기준 연간 2억7천만파운드 |
|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 기발표 내용과 동일 | FY2014-15 기준 연간 25억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동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4월부터 근로세액공제의 기본 요소(basic elements)와 30시간 요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분만 적용 현재 기본요소는 연간 1,920파운드, 30시간 요소는 연간 790파운드임 | FY2014-15기준 연간 6억2,500만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4월부터 2자녀 이상의 부부의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부합계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추가 현행: 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 FY2014-15기준 연간 3억9천만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는 비용의 80%에서 70%로 삭감 | FY2014-15기준 연간 3억8,500만파운드 |
| 지역주거수당에서 Shared Room Rate 연령제한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Shared Room Rate는 지역주거수당 규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25세 미만의 독신에 대해 적용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 중증장애 요건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연령제한 확대 조치는 총 8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2억1,500만파운드 |
| 장애생활수당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2-13부터 요양시설 수급자의 장애생활수당 중 이동편의서비스 요소 부분 지급중지 자가거주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5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1억3,500만파운드 |
| 지방세보조급여 삭감 및 지방부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3-14부터 지방세보조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최대 10% 삭감하고 지방정부 및 권한이양행정부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 FY2014-15부터 연간 4억9천만파운드 |
| 연금공제에서 연령가산부분 동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령가산(Saving Credit) 한도를 2015년까지 동결 최대한도는 독신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로 약 180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3억3천만파운드 |
| 개인소득세 관련 실시간 정보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계산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관련 정보(Pay-as-you-earn:소득세+국가보험기여금)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국제청비용 감소 | FY2014-15에 3억파운드 |
| 자녀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1-12에 자녀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를 물가연동 초과 30파운드 인상 FY2012-13에 물가연동 초과 50파운드 인상 긴급예산안에서 발표한 인상분 외 추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1-12 물가연동 초과 150파운드 - FY2012-13 물가연동 초과 60파운드 | FY2014-15기준 연간 5억6천만파운드 |
| 혹한기급여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 및 노령가구에 대한 혹한기급여(Cold Weather Payment)를 영구적으로 25파운드 인상 | FY2011-12부터 연간 5천만파운드 |
| 모기지이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기지 이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 | 향후 2년간 9천만파운드 |

- 조세회피 방지 계획에 대한 재원 투입 발표 (2010. 9. 20)
 - SR 기간(2011.4~2015.3) 동안 국세청에 9억파운드 추가 배정
 - 회피 및 탈루 방지, 세금 채무(tax debt) 축소, 조직적 범죄 방지 등 조세회피 방지 대책에 투입
 - FY2014-15까지 연간 70억파운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지방정부 차입 권한 확대 발표 (2010. 9. 20.)
 - 지역투자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정부에 새로운 차입 권한 부여(Tax Increment Financing: TIF)
 - 각 지역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전망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기타 자본지출 사업에 차입 허용
 - 지역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파운드 규모의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으며 SR 2010에서는 14억파운드로 상향조정함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며, 구체적 계획은 지역성장백서(White paper on local growth: 2010. 10. 28 발표)에 포함

-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료(NICs) 감면 발효 (2010. 9. 6)
 - 향후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창업한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장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 감면제도 시행
 - 해당 지역 : outside London, South East of England, East England
 - 창업기준일 : 긴급예산안(June Budget) 발표일 (2010. 6. 22)
 - 창업 후 1년 동안 최대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NICs 고용주부담 중 1인당 5,000파운드 면제

-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총리 발표 (2010. 10. 25)

- 영국 최초의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계 총 2,000억 파운드 규모 투자
- SR 2010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0억파운드 이상을 배분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경제분야에 10억파운드 배정
 - 유럽지역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해 2015년까지 총 5억 3천만파운드 투자
 - 고속철도 등 교통분야에 300억파운드 규모 투자
 - 과학예산 46억파운드, 의료연구센터 자본투자 2억 2천만파운드, 다이아몬드 가속기(Diamond Synchrotron) 6,900만파운드 등 과학 및 연구분야 지원 유지

다. 기타 정책이슈

- 예산책임 및 감사법안(Budget Responsibility & National Audit Bill) 상원 발의 (2010. 10. 21)
 - ※ 11. 29 현재 상원 위원회단계(committee stage) 진행 중
 - (예산책임) 예산책임청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설정한 새로운 법적 예산서류 - 「The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 규정
 - Pre-budget에 대한 규정 폐기 등 전(前) 정부의 재정정책 구조 변경
 - 예산책임청(OBR)을 비부처공공기구(NDPBs)로 법적 지위 부여
 - (감사) 감사원장의 최대 임기를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다수 규정 개정
 - 감사원장의 지명과 보수는 총리와 공공계정위원회 의장의 동의로 결정
 - 감사원(NAO)과 감사원장의 관계 등 감사원에 대한 규정 정비
- 학생지원제도(Pupil Premium) 부총리 발표 (2010. 10. 15)⁵⁾
 - 2세에서 20세까지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SR 기간 동안 Fairness Premium에 70억파운드 이상을 배정한다고 발표함
 - FY2012-13부터 주 15시간의 취학전 교육 제공 대상(현재 3~4세)에 교육 취약계층에

5) 영국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cabinetoffice.gov.uk/newsroom/news_releases/2010/101015-fairness.aspx

SECTION 2 >>

- 해당하는 2세 아동 추가
 - 추가 비용은 FY2014-15까지 연간 3억파운드 규모로 추정
 - 학교에 저소득 학생의 무료급식비용 등 지원
 - 학생지원제도의 추가적인 투자 규모는 FY2014-15까지 연간 25억파운드 규모로 확대
 - SR 2010에서는 pupil premium에 25억파운드를 배정하고 학교 예산에 대해 FY2014-15까지 매년 0.1%의 실질인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 고등교육 개혁과 더불어 “student premium”을 FY2014-15 기준 연간 1억 5천만파운드 지원하여 대학교육기회 확대
-
- Equitable Life 연금 보상에 15억파운드 지급 발표 (2010. 10. 20)
 - 이 중 10억파운드는 FY2011-12 ~ FY2013~14까지 3년 동안 지급
 - 올해 7월 22일 재무부는 Equitable Life Bill을 의회에 제출하고 Equitable Life 지급과 관련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설립
 - 법안은 상원에서 2독회(11.24) 진행중

 - 아동을 위한 새로운 비과세 저축(Junior ISAs) 발표 (2010. 10. 26)
 - 5월 24일 발표한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의 정부 보조 중단 등에 대한 후속 조치
 -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연간한도 내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아동신탁기금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함
 - 2011년 가을부터 적용되며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이나 정부보조는 없음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 세제개편

- 2011년 1월 1일부터 주택세 개편 (2010년 8월 19일)
 -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에 배분되었던 주택세입을 지역정부에게 세입 전액을 이양함
 -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감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세금감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 크리스틴 라가드 (Christine Lagarde) 재정부 장관은 주택세제 개편에 따라, 소수의 가정에게 두 자리 수의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FY2011 예산안 세무조치(PLF Dispositions Fiscales)에 기재된 세제개편 내용 (FY2011 예산안은 2010년 12월 7일에 심의를 마칠 예정으로 아래 내용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

SECTION 2 >>

〈표 2-V-1〉 FY2011 예산안에 기재된 세제개편 내용

| 세제개편 이슈 | 상세 내용 |
|----------------------|---|
| 증권판매 이익금과 보험수익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 판매 이익금과 생명보험 수익에 대한 과세 실시 |
| 배당금 소득공제 철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금 소득세에 적용되었던 세금공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금은 누진과세에 해당되며 두개의 세금환급(rebate)(40% 비례세와 한사람 기준 1,525유로, 두 사람 기준 3,050유로인 일률과세)과 세금공제(tax credit)가 적용됨 세금공제(tax credit)는 한사람 기준 115유로, 두사람 기준 230유로 2010년 소득공제부터 배당금 세금공제 철폐를 제안 |
| 유기농업 세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 농작물에 대한 세원의 개발과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포럼(Le Grenelle Environnement)*에서 2009년 8월3일 결의된 계획법 No. 2009-967에 따르면 농업지대의 유기농업을 각각 2012년 6%, 2020년 20%까지 확대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5월 21일 개최한 환경포럼에서는, NGO를 비롯한 여러 공공정책 관련자들이 모여 환경친화 주제에 대해 토론 유기농업에 대한 세금공제는 2010년 예산법안을 기준으로 만료 유기농작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일자리 창출 등)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공제금액은 4,000유로까지 제한함 |
| 사업소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세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이 FY2011 예산안에 포함(자세한 내용은 "3.정책적 이슈-다. 기타 정책이슈" 참고) |
| 농촌경기 촉진지역 및 지역 중심 원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농촌경기 촉진지역 (ZRR: Les Zones de Revitalization Rurale)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의 순익은 감세되며, 이러한 감세제는 지역중심 원조지역(AFR: les zones d'aide à finalité régionale)에 생기는 새로운 사업까지 적용확대를 제안함 |
| 은행과세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의 과세는 금융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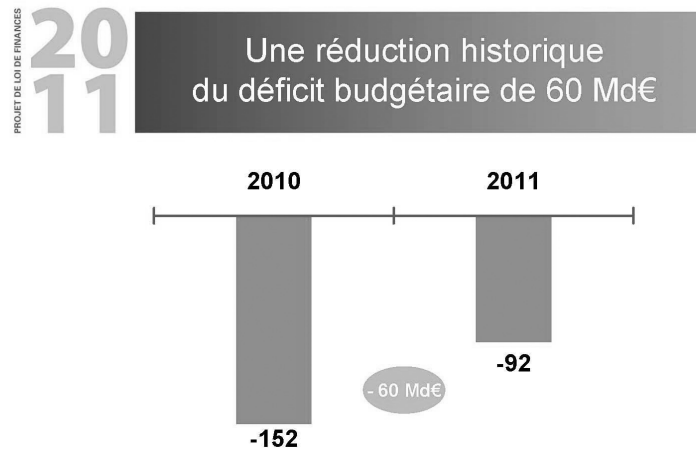
○ 이 외에 세제개편 내용은 “가. 예산” 참고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1 예산안 (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1) 발표
 - FY2011 예산안은 2010년 9월 29일에 의회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음
 - 하원 및 상원에서 제 1부분이 통과되었고, 2010년 12월 7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
 - ※ 프랑스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결: 의회가 제1부분인 총세입, 지출한도 및 재정수지를 먼저 승인한 후 제2부분인 세출을 각 미션에 따라 의결
 - FY2011 예산법안은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적자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둠
 - 재정적자를 GDP 대비 6%(2010년 대비 40% 낮춰진 920억유로)로 감소할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V-1] 프랑스 정부 재정수지 전망



자료: http://www.budget.gouv.fr/actus/img/plf_2011/chiffres-cles_001.jpg

○ 재정적자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

1.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

- 과부하 상태에 있는 재정적자와 연금을 제외한 정부지출 안정 (공공운영과 정부 개입 관련 지출을 5% 감소, 2007년부터 실시된 100,000개의 일자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1,638개 일자리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보험지출의 증가를 각각 2011년 2.9%, 2012년 2.8%로 제한

2. 2011년부터 100억유로에 달하는 감세를 시행하고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 2007년부터 실시된 “트리플 플레이” (인터넷, IP전화, 텔레비전)에 적용되는 인하 세율이 텔레비전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환경포럼에서 2020년까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1%를 포토볼타릭(전지)로 사용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산업분야에 따른 투기 버블이 나타남에 따라 포토볼타릭(전지) 에너지분야의 세금공제를 철회하기로 함
- 누진과세의 형평성과 신고요건을 간편화하기 위해 이혼과 결혼, 동거 등 결혼 상태변화에 따른 가정의 과세조건을 개정하기로 함
- 중소기업 관련 소득 및 투자에 대한 감세제도 개혁 (제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현 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세와 세금공제
- 이와 같은 조치로 징수된 재원 중 1/3은 연금기금 재정지원, 1/3 사회보장 채무보전, 1/3은 재정적자 감소에 배분될 것임

<표 2-V-2> 2011년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 2010년 예산법 (수정예산 포함) | 2011년 예산안 |
|------------------|------------------------|----------------|
| 부채(A) | 43,198 | 45,609 |
| 지출(B) | 379,979 | 314,223 |
| 총지출(C=A+B) | 423,178 | 359,832 |
| 순세입(목적세입 제외) (D) | 271,332 | 271,254 |
| 일반회계재정수지 (E=D-C) | - 151,846 | -88,578 |
| 부속회계 재정수지 | 2 | 11 |
| 특별회계 재정수지 | -121 | -3,427 |
| 총수지 | -151,965 | -91,993 |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plf2011/chiffres_cles.pdf

- (거시경제전망)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 물가상승률은 1.5%로 전망
- (재정수지) 2011년 재정적자는 920억유로로 GDP 대비 6%로 전망
- (국가부채) 2011년 국가부채는 86.2%로 전망 (2009년: GDP 대비 82.9%)
- FY2011 예산법안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9년 2010년에 집행되었던 45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냄

□ FY2011 사회보장부문 예산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 pour 2011) 발표

SECTION 2 >>

〈표 2-V-3〉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단위: 십억유로)

| | 2010 결산 | 2011 예산 |
|--|--------------|--------------|
| 의료보험 (CNAM) | -11.4 | -11.6 |
| 산재보험 (CNAM AT/MP) | -0.5 | 0.1 |
| 법정연금기금 (CNAV) | -8.6 | -6.9 |
| 가족지원금(CNAF) ¹⁾ | -2.6 | -3 |
|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²⁾ | -23.1 | -21.4 |
| 노후연대기금(FSV) ³⁾ | -4.3 | -3.8 |
| 총액 | -27.4 | -25.2 |

주: 1) 가족지원금 (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2)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특별제도, 자영업자 제도,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 (박찬영, 1997)

3)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 (임춘식 외 6인, 2005)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091001plfss2011/plfss2010.pdf

- FY2011 사회보장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가 감소할 예정
- FY2011 사회보장부문 예산안은 2010년 9월 28일에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채택, 11월 2일 330대 224로 국회의 의결을 통과
 - 상원의회에서 11월 13일까지 검토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검토결과에 대한 업데이트 없음
-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80억유로의 새로운 자원 마련과 지출 통제를 시행할 예정, 2011년 재정적자 214억유로를 목표함
 -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연금개혁과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⁶⁾)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자원 마련
 - 의료지출의 통제 강화 (의료보험의 효율성의 제고와 고액질병환자의 보험료 반환)를 통해 2011년 의료보험지출 목표(ONDAM)를 3%로 전망
 -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 (장애인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ONDAM은 2011년 3.8%를

6) 프랑스 사회보장채무의 재정수지 회복을 위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파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

목표, 2008-2012 알츠하이머플랜을 통해 2011년 75개의 관련의료시설과 35개의 관련요양원(MAIA: Maisons pour l'autonomie et l'intégration des malades d'Alzheimer)을 마련)

- 이 외에 석면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확대와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나. 추경

-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을 위한 2차 수정예산(PLFR: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 - 2) 의회통과 (재정동향 2호 3-다. 기타 정책이슈 p.152에 기재된 사항) (2010년 5월 8일)
- 3차 수정예산 의회통과 (2010년 6월 3일)
 - 유럽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IMF의 차관협정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목표
 - 이는 2010년 5월 9일에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유럽연합 운영조약(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에서 600억유로까지 재정지원 협의
 - 유럽 금융안정자금(FESF: le fonds européen de stabilité financière) 확대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가에 4,400억유로까지 대출 허용
 - 3차 수정예산에서 프랑스는 1,110억유로를 한도로 재정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프랑스 재정 부담률을 전체 자금 대비 20~25.2%까지 증가시키는 금액
 - G20 회의에서 IMF 재정지원을 5천억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프랑스는 210억유로를 지원
 - 이 3차 수정예산은 2010년 6월 1일, 462대 33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6월 3일 상원회의에서 채택되었음

다. 결산

- FY2009 프랑스 결산보고서 (RAP: les Rapports Annuels de Performances)
 - 2009년 결산 보고서 내용: 2009년 예산안 집행실적, 공공정책의 경영상태 평가, 재정 개혁 및 정부정책개혁보고서(RGPP: la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에 대한 첫 번째 평가
 - 2009년 예산안 집행실적: 2009년 일반정부 결산(법)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1,380 억유로에 이르러 전년 대비 817억유로 증가

<표 2-V-4> 프랑스 정부 총지출 결산요약

(단위: 백만유로)

| | 지출 | 수입 | 결산 |
|-------------------------------------|----------------|----------------|------------------|
| 수입 | | | |
| 총수입 | | 325,920 | |
| 세금 공제 및 환급 | | 111,669 | |
| 순조세수입 (a) | | 214,250 | |
| 기타 수입 (b) | | 19,451 | |
| 원조기금을 제외한 수입 (c)=(a)+(b) | | 233,701 | |
| 지방정부와 유럽공동체재원 (d) | | 76,200 | |
| 지방정부와 유럽공동체 재원을 제외한 순수입 (e)=(c)-(d) | | 157,501 | |
| 원조기금 (f) | | 3,518 |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순수입 (g)=(e)+(f) | | 161,019 | |
| 지출 | | | |
| 원조기금을 제외한 총지출 | 399,077 | | |
| 세금 공제 및 환급 | 111,669 | | |
| 순지출 (h) | 287,408 | | |
| 원조기금 (i) | 3,516 | |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순지출 (j) = (h) + (i) | 290,925 | |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총예산 | 290,925 | 161,019 | -129,906 |
| 부속회계 | 1,945 | 1,945 | |
| 정부 공식 출판물 | 208 | 208 | |
| 원조기금을 제외한 부속회계 | 2,153 | 2,153 | |
| 원조 기금 | 19 | 19 |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총 부속회계 | 2,172 | 2,172 | |
| 총 특별회계 | 52,395 | 54,143 | 1,748 |
| 원조기금 예산 | 105,969 | 95,680 | - 10,290 |
| 무역 계정 (수지) | - 359 | | 359 |
| IMF계정을 제외한 통화 거래 | - 60 | | 60 |
| IMF계정을 제외한 총 특별회계 수지 | 157,945 | 149,822 | - 8,123 |
| IMF계정을 제외한 2009년 예산 총수지 | | | - 138,029 |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250901>

- 2008년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여 총세입은 전년 대비 19.1% 감소
 - 경기부양책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이 예산전망치 3,482억유로에 근접한 3,480억유로에 이르러 기준에 부합
 - 공공정책의 경영상태를 평가
 - 일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개혁의 개요와 전략을 도출하고 평가
 - 첫 번째 재정개혁 및 정부정책개혁보고서 결과
 - 2009년 RGPP의 전체적인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대부분이 2009-2011 중기재정에 기준을 둠)의 결과를 포함
 - 이 중 58개의 개혁조치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기(전체 개혁조치의 15%)
 - 정부부처 효과적인 조정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개혁조치의 효과를 알 수 있음
 - FY2009 결산에 따르면 2009년 순수입은 2009년 예산 대비 24.8% 감소한 1,610억유로로, 이는 2008년 결산 대비 27.2% 감소한 수준인 반면, 2009년 순지출은 2,909억유로로 2009년 예산 대비 3.8% 증가하였고, 2008년 결산 대비 4.6% 증가한 수준
 - FY2009 결산기준 재정수지는 2009년 예산기준 재정수지보다 106.1% 증가한 1,380억 유로이며, 이는 2008년 결산기준 재정수지보다 145.3% 증가한 수치임
- FY2010 프랑스 결산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SECTION 2 >>

〈표 2-V-5〉 FY2009 프랑스 정부 결산

(단위: 백만유로)

| | 2008년 결산 | 2009년 예산 | 2009년 결산 |
|--------------------------------------|----------------|----------------|-----------------|
| 총수입 | 352,135 | 361,348 | 325,920 |
| 세금 공제 및 환급 | 92,174 | 101,965 | 111,669 |
| 순조세 수입 | 259,961 | 259,383 | 214,250 |
| 기타 수입 | 27,958 | 22,678 | 19,451 |
| 지방정부와 유럽공동체 재원을 제외한 총 순수입 (a) | 218,043 | 282,061 | 157,501 |
| 원조기금 (b) | 3,202 | 3,316 | 3,518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순수입 (c)=(a)+(b) | 221,245 | 214,228 | 161,019 |
| 순지출 (d) | 275,032 | 379,028 | 287,408 |
| 원조기금 (e) | 3,202 | 3,316 | 3,516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순지출 (f) = (d) + (e) | 278,235 | 280,379 | 290,925 |
| 원조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수지 | -56,989 | -66,151 | -129,906 |
| 총 특별회계 (수지) | 673 | -835 | 1,748 |
| 원조기금 예산 (수지) | -123 | -930 | -10,290 |
| IMF계정을 제외한 총 재정수지 | -56,271 | -66,986 | -138,029 |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2509010>,

http://www.legifrance.gouv.fr/jopdf/common/jo_pdf.jsp?numJO=0&dateJO=20081228&numTexte=1&pageDebut=20224&pageFin=20294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FY2011-2014 프로그램예산법안 (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s Finances Publiques 2011- 2014, PLF와 함께 9월 28일 발표)
 - 2010년 예상 재정수지는 GDP 대비 7.7%
 - 2011년 GDP 대비 6%에서 2014년 2%까지 감소를 목표

〈표 2-V-6〉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단위: GDP 대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재정수지 | -7.7 | -6 | -4.6 | -3 | -2 |
| 국가부채 | 82.9 | 86.2 | 87.4 | 86.8 | 85.3 |

주: 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로 규정

2) EU 경제위원회는 2009년 11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낮추는 것을 프랑스에 권고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plf2011/chiffres_cles.pdf

- (경제성장률 전망) 2010년 1.5%, 2011년 2.0%
- 2008-2009년 대비 2011년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2%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전망
 - 프로그램 예산법안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전망
- FY2011-2014 프로그램예산법안은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 2011년부터 실행되는 100억유로에 달하는 감세 및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자세한 사항은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참고)
- IMF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2011년 GDP 대비 6.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의 전망 (6%)과 견해를 같이함 (2010년 7월 30일)
 - IMF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소세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위기대응정책 집행실적 (Plan de Relance)
 - 2010년 8월 15일 발표된 위기대응정책 집행실적 요약서에 따르면 2009-2010년도에 위기대응정책 예산으로 계획된 388억유로 중 367억유로가 집행되었음
 - 위기대응정책의 세금조치에 따라 기업은 172억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500만가정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 제10차 경쟁력 클러스터 지원에 따른 17개 프로젝트 선정 (2010년 7월 30일)
 - 73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에 6,300만유로를 투자하여, 17개 프로젝트를 선정

다. 기타 정책이슈

- 연금개혁법안 (Projet de réforme des retraites 2010)
 - 연금개혁법안 10월 26일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226대 233), 앞서 10월 27일 하원을 통과하였음(177대 153)
 - 연금개혁법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최저 67살까지 늦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일 연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표 2-V-7> 연금개혁법안 주요내용

| 이슈 | 주요내용 |
|----------------|--|
| 정년 | 최저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2011년 7월1일부터 4개월에 1년씩 올려서 1956년 생인 62살까지 연장 |
| 연금수령 기간 | 연금 100% 수령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춤 |
| 전문직종 | 14~16세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60세나 그 이전에 퇴직할 수 있음. 정년퇴직 나이는 1년에 4개월씩 증가하지만 60세를 넘지 않음 |
| 3명의 자녀를 가진 여성 | 3명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정년 나이는 연금수령기간에 관계없이 65세로 유지 |
| 장애아를 가진 여성 | 장애아를 가진 여성의 100% 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 65세로 유지 |
| 15년-3자녀 | "15년-3자녀"는 15년 동안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지급정지.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5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계속 지급 |
| 임신이 정년에 미치는 영향 | 산전후 휴가는 정년퇴직 연금 수령 시 보전함 |
| 남녀 평등 임금 | 기업은 남녀 임금차를 줄여야 함 |
| 노령자 취업 | 55세 이상의 노령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년치 임금의 14%에 해당되는 재정 지원 |
| 장애가 있는 근로자 |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조기정년퇴직을 인정 |
| 공공서비스 직종 |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최저 공공서비스 종사 연수를 15년에서 2년으로 낮춤 |
| 석면피해자의 조기 정년퇴직 | 석면피해로 인한 조기 퇴직자들은 변동없이 60세의 조기 퇴직 적용 |
| 연금 보조금 | 정년에 근접한 가까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은 변동없이 유지 |

□ 국세청(L'administration fiscale)이 세제개편 이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집 (2010년 6월 25일)

- 세제개편 이슈는 공공지원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기업 재산평가의 과세, 기업이윤 공제, 기업의 부가가치 분담금, 주식옵션의 과세, IT기업의 일률과세 포함

SECTION 2 >>

- 4차 정부정책개혁보고서 (RGPP: Report on General Revision of Public Policies) 발표 (2010년 6월 30일)
 - 기존의 개혁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진행중인 300개의 개혁조치와 더불어 150개의 새로운 개혁조치를 진행 예정(2010년 6월 30일 정부정책 근대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 2007년 시작된 정부정책개혁은 3년이 지난 지금 예정된 일정에 맞춰 78%의 개혁이 진행중
 - 3차 정부정책개혁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개혁조치가 심각한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현재는 4%의 개혁조치만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사업소세 (taxe professionnelle) 감세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10년 7월 28일)
 - 사업소세 시행 후,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
 - 기업의 일률과세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항이 FY2011 예산안에 반영됨

- 고속광대역(très haut débit) 국가프로그램에 20억유로 투자 결정 (2010년 8월 4일)
 - 네트워크 배치의 시험(pilot) 프로젝트와 향후 5년 연구를 위해 투자할 의향이 있는 프로젝트를 모집하는 중에 있음

- 환경포럼(Le Grenelle Environnement)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친화 연구를 위해 1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집중될 예정

VI

독일 (FY2010: 2010.1~2010.12)

1. 세제개편

- 연방정부는 재정강화계획(Zukunftspaket; consolidation package)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변동에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
 - 예산지원법(Haushaltsbegleitgesetz 2011)안은 신설될 항공세의 근거법률인 항공교통 통제법 제정 및 에너지세법 등 20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시 2011년에는 35억 600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됨
 - 기타 핵연료세와 금융시장거래세, 그 밖에 행정상의 경비 절감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각 법안이 예산에 미칠 영향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2011년 총 112억 600만유로의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표 2-VI-1> 재정강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 | 2011 | 2012 | 2013 | 2014 |
|-------------------|---------------|---------------|---------------|---------------|
| 예산지원법 | 3,506 | 5,390 | 5,680 | 4,810 |
|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 1,000 | 1,000 | 1,000 | 1,000 |
| 에너지세-전력법 개정 | 1,340 | 1,160 | 1,500 | 1,500 |
| 파산법 개정 | 191 | 215 | 215 | 215 |
| 양육수당 개정 | 605 | 605 | 595 | 575 |
| 기타 | 370 | 2,410 | 2,370 | 1,520 |
| 핵연료세 | 2,300 | 2,300 | 2,300 | 2,300 |
| 금융시장거래세 | - | 2,000 | 2,000 | 2,000 |
| 기타 행정경비 절감 | 5,400 | 8,900 | 13,600 | 17,400 |
| 총계 | 11,206 | 18,580 | 23,580 | 26,510 |

주: 연방정부만을 포함한 내역

자료: 독일 재무부, Übersicht Umsetzung Zukunftspaket(2010.09.)을 재구성

SECTION 2 >>

- 항공교통통제법(Luftverkehrsteuergesetz)의 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내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과세하는 항공세(aviation tax) 신설
 - 2010년 9월 1일 이후 예약한 항공편에 적용되며, 최종 도착지를 기준으로 운항 구간(거리)별 차등과세 방식 채택
 - 2,500km 이내는 8유로, 2,500~6,000km는 25유로, 6,000km 이상인 경우 45유로를 부과
 - 2세 미만 유아와 육상 교통편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 기타 외교, 국방, 의료 목적의 이용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간접세 방식으로 항공사에 부과할 예정이나, 소비자에 전가되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

- 독일 내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절감 및 재생을 목표로 핵연료 소비에 과세하는 핵연료세제를 채택하고, ‘에너지 및 기후 기금’을 설치하기로 함
 -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확대, 전력망의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념을 승인하고,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핵연료세법(Kernbrennstoffsteuergesetz)안을 마련함
 - 이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기존 17개 원자로의 평균수명을 12년(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독일정부가 원전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핵연료세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수입은 매년 23억유로로 예상
 -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독일 내 모든 원전은 2022년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야당과 국민들의 반핵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이 외에도 법안에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개념을 측정하고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기금(Energie- und Klimafonds)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실업자 지원액에 관한 논란
 - 2010년 2월,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Hartz IV’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올 연

말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촉구 결정이 이뤄짐

- 연방헌법재판소는 'Hartz IV'법률이 '모든 국민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액 산정방식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결정

- 하지만, 지난 9월 26일 독일정부의 Hartz IV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들에 대한 월 지원액을 현재 359유로에서 364유로로, 불과 5유로 인상하는 것에 그쳐, 야당 및 노동계 반발이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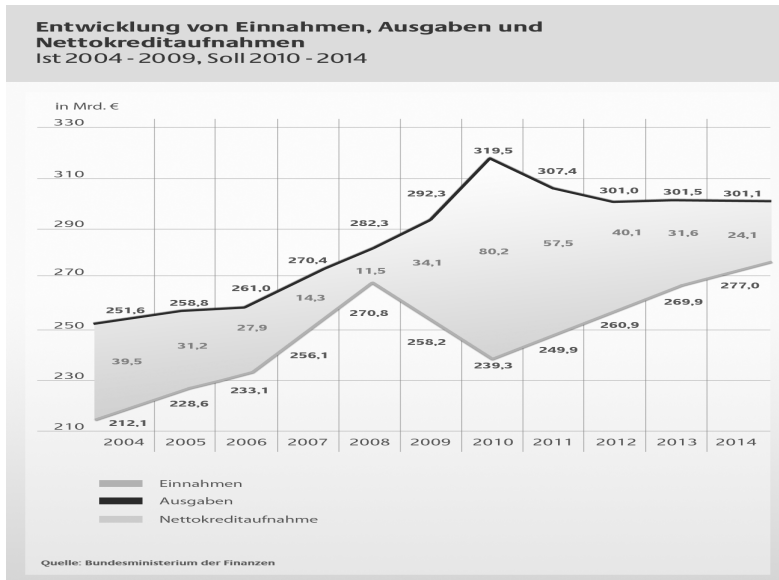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독일 연방하원은 9월 14일, 2011년 연방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
 - Schäuble 재무부 장관은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성장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1년이 정부지출과 신규 부채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3,074억유로, 재정수입은 2,499억유로, 순차입(Nettokrediraufnahme)은 575억유로로 나타남
 - 그러나 2014년까지 순차입 규모는 241억유로로 줄어들 전망
 - 연방정부는 지출의 감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할 예정

[그림 2-VI-1] 201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주: 1. Einnahmen: 재정수입(조세수입+세외수입), Ausgaben: 재정지출, Nettokrediraufnahme: 순차입

2. 2004~2009년까지는 결산, 2010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Finanzplan) 기준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9월

나. 추경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해당사항 없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독일 정부는 9월 1일 성장 친화적 재정강화계획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 Schäuble 재무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는 예산에 대한 어떠한 재량도 허용하지 않음을 강조함
 - 재정적자 감축 및 정부부채 누적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 강화 측면에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힘
 - 예산을 수반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된 재정강화계획을 실시하여 2011년 이후 헌법상의 부채-역제 규율을 충실히 지켜, 중앙정부의 구조적 적자를 500억유로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2016년까지 100억유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예산절감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등 정부지출을 낮출 것인데, 정부의 목표는 실업자들에게 구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민 개인적 책임과(사회의) 연대책임 사이의 균형 회복에 있음
 - 장기 실업수당 산정 시 이미 수급한 양육수당을 고려하거나, 순소득이 월 1,240유로 이상인 양육수당 수령자의 수급액을 소득의 67%에서 65%로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시됨
 - 기타 항공세 신설, 환경세 관련 보조금 감축 등의 수단도 승인되었으며, 중앙정부의 행정경비 등도 연간 약 40억유로를 감축할 계획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지난 10월 15일 베를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회의의 중심 안건은 ‘예산 감시’로서, 연방 및 주정부의 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계획을 파악하고, 헌법상의 차입 제약이나 중기 전망치를 비교하여 평가함
 - 예산감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는 베를린 등 4개 주의 예산상태 지표와 중기 전망치 등이 재정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의 경우 재정위기 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발표함

- 위원회는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Berlin, Bremen, Saarland, Schleswig-Holstein 주에 ‘안정성위원회법’(Stabilitätsratsgesetz) 제4조 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덧붙여, 위원회는 ‘동부(구 동독) 재건’과 관련하여, 2009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과 베를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결정
- EU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는 지난 5월 유럽 위기의 원인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정책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SGP의 개선책으로서 새로운 제재를 마련함
- 지출 감축을 위한 브뤼셀 회의(09.27)에서, Schäuble 재무부 장관은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동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진 독-프 정상회담(10.18)에서 Merkel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 유럽이사회 내 T/F가 회원국들의 예산 상태를 평가한 결과, 향후 재정적자 및 부채수준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모든 EU회원국들은 기존 SGP상의 재정적자의 상한선(GDP 대비 3%)과 부채비율(GDP 대비 60%) 제한 규정을 엄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메커니즘을 작동하기로 결정
 - 새로운 제재 메커니즘은 예방적 제재(규정지킨 경우)와 교정적 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음 (그림: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
 - 재정적자가 3%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는 예방적 제재(현재까지는 의무적 조항은 아니었음)로서, 회원국들은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신시키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재정수지 균형 또는 재정흑자를 운영해야 함

SECTION 2 >>

[그림 2-Ⅵ-2] 시나리오 1: 예방적 제재의 경우

Scenario 1: Deficit below 3% and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missed (preventive arm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Current procedure: issuance only of a “friendly” request to reduce the deficit annually (no penalties)

Future procedure: Defined decision-making process with time limits + penalties for euro countries

Early warning + Commission/Council recommendation

Commission publishes early warning and recommends remedial action to the Council.

Council stipulates remedial measures and specifies a five-month deadline.

Formal notice= stricter recommendation

Commission cannot identify any corrective action and submits a decision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nctions.

Council confirms the decision fo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nd simultaneously stipulates the penalty by reverse majority (quasi-automatic).

= Council decision within 1 month

Decision on sanction after a max. 6 months

Fast-track procedure, 3 months

Fast-track procedure:
Particularly serious case with grave deviations on the path towards attaining a balanced budget.

Acting on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the Council decides to issue a formal notice or require the lodging of a non-interest bearing deposit within 3 and not 6 months. Council, composing the euro-zone membership, decides by reverse majority (quasi-auto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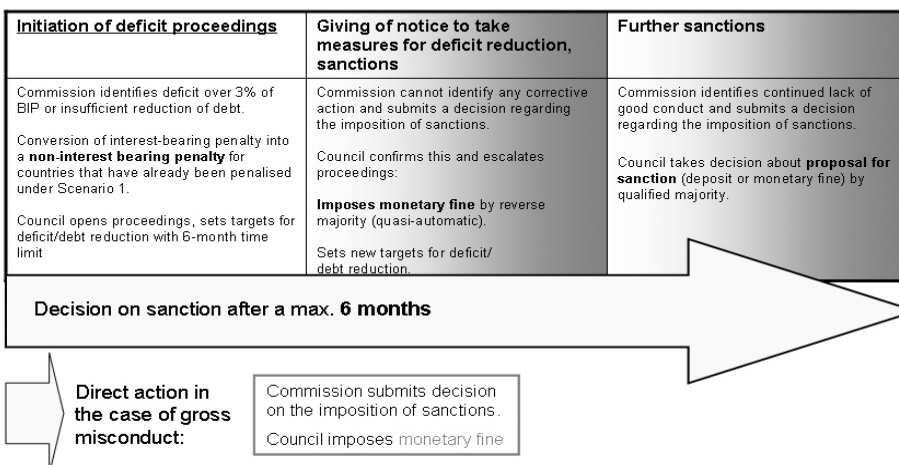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0월

[그림 2-Ⅵ-3] 시나리오 2: 교정적 제재의 경우

Scenario 2: Deficit over 3% and/or insufficient government-debt reduction (corrective arm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Current procedure: Complicated deficit proceedings, sanctions unlikely

Future procedure: Earlier penalty payments, accelerated procedure, inclusion of government debt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0월

-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거나 부채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교정적 제재),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제재조치가 실시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EU로부터의 보조금이 감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정함
 - 또한 처음으로 유럽위원회와 이사회를 포함한 의사결정절차가 사전적으로 마련되고 구조화되었으며, 회원국 다수가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한 제재를 부과하는 역 다수결 방식(reverse majority rule)을 채택하여 준자동메커니즘(quasi-auto mechanism)을 확보함
 - 향후, 회원국들은 (이미 독일이 마련한 부채-역제 규율과 같은) 국가재정 규율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약속함
 - T/F구성국들은 회원국 간의 예산정책상 긴밀한 연속적인 협조를 뜻하는 ‘European semester’ 시행에 동의함
 - 지난 유럽위기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었던 일부 EU국가들의 경쟁력 하락 부분은 명목/실질단위로 측정된 노동비용 등의 선별된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될 것이며, 이 또한 제재 가능함
 - 중장기적으로 새롭고 항구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핵심요소
 - 국채시장에서 채권자들이 정부의 재정위기 발생 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민간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역할임
- 독일 정부는 과거 40년간 GDP 대비 국가지출 비율(Staatsquote)과 공공부문의 재정수지 추이를 발표함
- 2009년도 국가지출은 GDP의 47.5%를 차지하며, 지방정부가 GDP의 26.6%, 공적 보험의 경우 GDP의 20.9%를 차지함

SECTION 2 >>

〈표 2-VI-2〉 국가지출 비율 추이¹⁾²⁾

(단위: %)

| 연도 | 국가지출 | | | 연도 | 국가지출 | | |
|------|------|--|---|------|------|--|---|
| | 합계 | 지방정부(Gebiets-körperschaften) ³⁾ | 사회보장기금(Sozial-versicherung) ³⁾ | | 합계 | 지방정부(Gebiets-körperschaften) ³⁾ | 사회보장기금(Sozial-versicherung) ³⁾ |
| 1960 | 32.9 | 21.7 | 11.2 | 1991 | 46.3 | 28.2 | 18.0 |
| 1965 | 37.1 | 25.4 | 11.6 | 1992 | 47.2 | 28.0 | 19.2 |
| 1970 | 38.5 | 26.1 | 12.4 | 1993 | 48.2 | 28.3 | 19.9 |
| 1975 | 48.8 | 31.2 | 17.7 | 1994 | 47.9 | 27.8 | 20.0 |
| 1976 | 48.3 | 30.5 | 17.8 | 1995 | 48.1 | 27.6 | 20.6 |
| 1977 | 47.9 | 30.1 | 17.8 | 1996 | 49.3 | 27.9 | 21.4 |
| 1978 | 47.0 | 29.4 | 17.6 | 1997 | 48.4 | 27.1 | 21.2 |
| 1979 | 46.5 | 29.3 | 17.2 | 1998 | 48.0 | 27.0 | 21.1 |
| 1980 | 46.9 | 29.6 | 17.3 | 1999 | 48.1 | 26.9 | 21.1 |
| 1981 | 47.5 | 29.7 | 17.9 | 2000 | 47.6 | 26.5 | 21.1 |
| 1982 | 47.5 | 29.4 | 18.1 | 2001 | 47.6 | 26.3 | 21.3 |
| 1983 | 46.5 | 28.8 | 17.7 | 2002 | 48.1 | 26.4 | 21.7 |
| 1984 | 45.8 | 28.2 | 17.6 | 2003 | 48.5 | 26.5 | 22.0 |
| 1985 | 45.2 | 27.8 | 17.4 | 2004 | 47.1 | 25.9 | 21.2 |
| 1986 | 44.5 | 27.4 | 17.1 | 2005 | 46.8 | 26.1 | 20.8 |
| 1987 | 45.0 | 27.6 | 17.4 | 2006 | 45.3 | 25.4 | 19.9 |
| 1988 | 44.6 | 27.0 | 17.6 | 2007 | 43.6 | 24.5 | 19.1 |
| 1989 | 43.1 | 26.4 | 16.7 | 2008 | 43.8 | 24.7 | 19.0 |
| 1990 | 43.6 | 27.3 | 16.4 | 2009 | 47.5 | 26.6 | 20.9 |

주: 1) National Accounts(SNA)로 정의된 개념. 1970년부터 European System of Accounts(ESA 1995)의 국민계정으로 정의함. 2006~2009년은 2010년 8월 기준 임시 값

2) 1990년까지는 (구)서독, 1991년부터 (통일)독일

3) 다른 수준의 정부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직접 지출만을 포함함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0월

○ 국가와 지방정부, 공적보험의 재정수지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2009년 재정통계상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총 893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나타냄

〈표 2-VI-3〉 공공부문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십억유로, %)

| 연도 | 국민계정체계(SNA)기준 ²⁾ | | | | | | 재정통계상 구분 | |
|------|-----------------------------|-------|-------|--------------|-------|-------|------------------------|--------------|
| | 국가 | 지방 정부 | 공적 보험 | 국가 | 지방 정부 | 공적 보험 | 공공부문 총예산 ³⁾ | |
| | 규모(십억유로) | | | GDP 대비 비중(%) | | | 규모 (십억유로) | GDP 대비 비중(%) |
| 1965 | -1.4 | -3.2 | 1.8 | -0.6 | -1.4 | 0.8 | -4.8 | -2.0 |
| 1970 | 1.9 | -1.1 | 2.9 | 0.5 | -0.3 | 0.8 | -4.1 | -1.1 |
| 1975 | -30.9 | -28.8 | -2.1 | -5.6 | -5.2 | -0.4 | -32.6 | -5.9 |
| 1980 | -23.2 | -24.3 | 1.1 | -2.9 | -3.1 | 0.1 | -29.2 | -3.7 |
| 1985 | -11.3 | -13.1 | 1.8 | -1.1 | -1.3 | 0.2 | -20.1 | -2.0 |
| 1990 | -24.8 | -34.7 | 9.9 | -1.9 | -2.7 | 0.8 | -48.3 | -3.7 |
| 1995 | -59.1 | -51.4 | -7.7 | -3.2 | -2.8 | -0.4 | -55.9 | -3.0 |
| 2000 | -23.7 | -24.3 | 0.6 | -1.2 | -1.2 | 0.0 | -34.0 | -1.6 |
| 2001 | -59.6 | -55.8 | -3.8 | -2.8 | -2.6 | -0.2 | -46.6 | -2.2 |
| 2002 | -78.3 | -71.5 | -6.8 | -3.7 | -3.3 | -0.3 | -56.8 | -2.7 |
| 2003 | -87.3 | -79.5 | -7.7 | -4.0 | -3.7 | -0.4 | -67.9 | -3.1 |
| 2004 | -83.5 | -82.3 | -1.2 | -3.8 | -3.7 | -0.1 | 65.5 | -3.0 |
| 2005 | -74.1 | -70.2 | -3.9 | -3.3 | -3.1 | -0.2 | -52.5 | -2.3 |
| 2006 | -37.1 | -42.2 | 5.1 | -1.6 | -1.8 | 0.2 | -40.5 | -1.7 |
| 2007 | 6.3 | -4.6 | 10.9 | 0.3 | -0.2 | 0.4 | -0.6 | 0.0 |
| 2008 | 2.8 | -6.0 | 8.9 | 0.1 | -0.2 | 0.4 | -5.5 | -0.2 |
| 2009 | -72.7 | -59.3 | -13.3 | -3.0 | -2.5 | -0.6 | -89.3 | -3.7 |

주: 1) 1990년까지는 (구)서독, 1991년부터 (통일)독일

2) 1970년부터 European System of Accounts(ESA 1995)의 국민계정 기준. 2006~2009년은 2010년 8월 기준 임시값

3) 공적보험 제외. 1997년부터 병원 제외. 2008~2009년은 현금주의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0월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독일 정부가 채택한 재정강화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며, 세수를 확대하는 것임
 - 독일 정부는 최근 자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된 사실이 이 같은 정책목표 설정 및 추진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함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독일의 2/4분기 GDP성장률은 2.2%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
 - 9월 실업률도 15개월 연속 하락하여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IFO, IFW 등 독일 내 8개 연구소의 합동보고서에서는, 2010년 GDP 성장률을 3.5%, 2011년은 2.0%로 예측치를 상향 조정
 - 이는 독일은 물론 유로 존 전체의 재정위기 극복에 긍정적 신호

다. 기타 정책이슈

- 은행 구조조정법(bank restructuring law) 정부안 내각 통과(8월 25일)
 - 2010년 3월 31일 내각에 의해 승인된 금융시장 규제에 관한 핵심사항(신용기관 구조 조정 등)에 기초한 신법을 제정함
- EU 27개국 재무부장관들은 모든 헤지펀드 및 특별펀드, 부동산펀드에 관한 포괄규제안에 합의함(10월 19일)
 - 규제안의 목적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 독일정부는 10월 27일 스위스정부와 이중과세협정을 맺고, 양국 간 과세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최근 발표된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에는 FY2010-11 예산안에서 공시한 경제지표 및 재정전망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캐나다의 경제 및 재정상황은 기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힘 (2010년 10월 12일)
 - (경제전망) 캐나다의 경제는 연속 4분기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 현재는 불황 이전 상태를 회복, 2009년 7월 이후 42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IMF 및 OECD는 향후 2년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G-7국가 중 가장 뛰어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9월 진행된 민간부문 경제예측조사⁷⁾에 의하면 2010년 4/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2.5%, 2011년 상반기에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7) 캐나다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재정수치를 민간부문 경제예측조사의 평균치에 기반을 둔다. 2010년 9월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UBS Securities Canada,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SECTION 2 >>

- 동 조사는 생산량 및 소비자물가에 대해 향후 5년간 평균 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10년 연간 실업률은 8%, 2011년에 7.7%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표 2-Ⅶ-1〉 민간부문 경제예측전망 평균치

(단위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0-2014 |
|---------------------|------|------|------|------|------|------|-----------|
| 실질GDP성장률 | | | | | | | |
| 2009년 12월/2010예산 | 2.6 | 3.2 | 3.0 | 2.8 | 2.6 | - | 2.9 |
| 2010년 9월 | 3.0 | 2.5 | 2.8 | 2.9 | 2.6 | 2.5 | 2.8 |
| GDP인플레이션 | | | | | | | |
| 2009년 12월/2010예산 | 2.2 | 2.1 | 2.2 | 2.1 | 2.0 | - | 2.1 |
| 2010년 9월 | 2.8 | 2.0 | 2.3 | 2.0 | 2.0 | 1.9 | 2.2 |
| 실업률 | | | | | | | |
| 2009년 12월/2010예산 | 8.5 | 7.9 | 7.4 | 6.9 | 6.6 | - | 7.4 |
| 2010년 9월 | 8.0 | 7.7 | 7.4 | 7.0 | 6.8 | 6.6 | 7.4 |
| CPI인플레이션 | | | | | | | |
| 2009년 12월/2010예산 | 1.7 | 2.2 | 2.1 | 2.1 | 2.1 | - | 2.0 |
| 2010년 9월 | 1.7 | 2.2 | 2.1 | 2.1 | 2.0 | 2.0 | 2.0 |

자료: 2010년 캐나다예산서 및 캐나다 재무부 2009년 12월, 2010년 9월 민간부문 경제예측수치 반영

- (재정전망) 정부의 경기부양책 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 지원으로 캐나다의 재정수지는 2009-10년 556억캐나다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CEAP 중 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16년 26억캐나다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규모는 2009-10년 GDP 대비 3.6%에서 2010-11년 2.8%로 전망
 - 정부부채 규모는 2012-13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16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8% 수준 기대
 - 2009-10년 신규 재정적자 규모는 556억캐나다달러로 지난 2010년 예산에 발표된

538억캐나다달러보다 18억캐나다달러 증가, 이는 최근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Budget 2010”에서 2010-12년에 포함되었던 금액을 2009-10년 재정적자로 옮기면서 발생

- 이에 따라 신규 집계된 2010-11년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492억 캐나다달러에서 454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표 2-Ⅶ-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 총세입 | 2,186 | 2,325 | 2,463 | 2,612 | 2,777 | 2,932 | 3,059 |
| 프로그램 지출 | 2,448 | 2,466 | 2,427 | 2,461 | 2,517 | 2,572 | 2,654 |
| 이자지출 | 294 | 313 | 334 | 364 | 375 | 378 | 378 |
| 총지출 | 2,742 | 2,778 | 2,761 | 2,825 | 2,892 | 2,950 | 3,033 |
| 재정수지 | -556 | -454 | -298 | -212 | -115 | -17 | 26 |
| 부채 | 5,191 | 5,645 | 5,942 | 6,155 | 6,270 | 6,287 | 6,261 |
| 총세입 | 14.3 | 14.4 | 14.6 | 14.8 | 14.9 | 15.0 | 15.0 |
| 프로그램 지출 | 16.0 | 15.3 | 14.4 | 13.9 | 13.5 | 13.2 | 13.0 |
| 이자지출 | 1.9 | 1.9 | 2.0 | 2.1 | 2.0 | 1.9 | 1.9 |
| 재정수지 | -3.6 | -2.8 | -1.8 | -1.2 | -0.6 | -0.1 | 0.1 |
| 부채 | 34.0 | 34.9 | 35.3 | 34.8 | 33.7 | 32.3 | 30.8 |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 (세입) 2010년 10월 발표된 2009-10년 캐나다정부 총세입은 법인세 증가에 따라 2010년 3월 발표한 수치보다 47억캐나다달러가 상승, 2010-11년에 6.3% 늘어나며 경제회복과 함께 차후 연평균 5.6%씩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개인소득세) 2010-11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증가 및 주택수리세금환급프로그램(Home Renovation Tax Credit)의 종결로 전년 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법인세) 2009-10년에 단기적인 세수증가를 목표로 한 일회성 정책들이 종료되면서 법인세는 전년 대비 7.6%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증가, 기업 이윤증대와 함께 향후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
- (실업보험) 2010-11년 실업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수입은 개인

SECTION 2 >>

소득 증가 및 2010년 가을 정부가 발표한 실업보험료율 인상조치⁸⁾로 전년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1-12년부터 2015-16년까지 평균 8.2% 상승할 전망

〈표 2-Ⅶ-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 조세수입(Tax Revenues) | | | | | | | |
| 개인소득세 | 1,039 | 1,131 | 1,199 | 1,281 | 1,370 | 1,454 | 1,517 |
| 법인세 | 304 | 281 | 311 | 314 | 337 | 359 | 375 |
| 기타소득세 | 53 | 57 | 61 | 66 | 71 | 75 | 78 |
| 총소득세(A) | 1,396 | 1,468 | 1,571 | 1,662 | 1,778 | 1,888 | 1,971 |
| 소비세(Excise taxes/duties) | | | | | | | |
| 재화 및 용역세 | 269 | 285 | 296 | 313 | 331 | 349 | 367 |
| 관세 | 35 | 34 | 36 | 38 | 40 | 43 | 46 |
| 기타소비세 | 101 | 105 | 107 | 108 | 107 | 104 | 104 |
| 총소비세(B) | 406 | 424 | 439 | 459 | 478 | 496 | 517 |
| 총조세수입(C=A+B) | 1,802 | 1,892 | 2,010 | 2,121 | 2,256 | 2,383 | 2,487 |
| 실업보험(D) | 168 | 175 | 188 | 206 | 226 | 246 | 259 |
| 기타세입(E) | 217 | 257 | 265 | 286 | 295 | 303 | 312 |
| 총세입(F=C+D+E) | 2,186 | 2,325 | 2,463 | 2,612 | 2,777 | 2,932 | 3,059 |
| 개인소득세 | 6.8 | 7.0 | 7.1 | 7.2 | 7.4 | 7.5 | 7.5 |
| 법인세 | 2.0 | 1.7 | 1.8 | 1.8 | 1.8 | 1.8 | 1.8 |
| 재화 및 용역세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 총조세수입 | 11.8 | 11.7 | 11.9 | 12.0 | 12.1 | 12.2 | 12.2 |
| 실업보험 | 1.1 | 1.1 | 1.1 | 1.2 | 1.2 | 1.3 | 1.3 |
| 기타세입 | 1.4 | 1.6 | 1.6 | 1.6 | 1.6 | 1.6 | 1.5 |
| 총세입 | 14.3 | 14.4 | 14.6 | 14.8 | 14.9 | 15.0 | 15.0 |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8) Jim Flaherty 연방재무부 장관은 2010년 9월 30일, 2011년 직장인 보험료 인상폭을 소득 100캐나다 달러 당 5센트로 제한하고 그 다음해부터 100달러당 10센트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실업보험료율을 소득 100달러당 1.73센트로 유지해 고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업보험 수혜자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은 보험료 인상을 낮출 수 없다는 방침

- (프로그램지출) 2010년 10월 발표된 신규 프로그램지출 전망에 따르면 2010-11년 총 지출은 2,466억캐나다달러, 이는 GDP 대비 15.3%에 해당하며 경기부양책 지원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GDP 대비 지출규모는 2009-10년 16.0%에서 2015-16년 13.0%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됨
 - (노후혜택) 인구고령화의 진행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이 늘면서 2015-16년 까지 GDP대비 연평균 5%가량 예측
 - (실업보험) 2009-10년 실업보험 혜택은 216억캐나다달러에서 2010-11년 211억캐나다달러로 하락, 이후 점차적 감소세가 예상됨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 간 이전지출 규모는 보건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지출의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됨
 - (직접프로그램비용) 경기부양책 종료시점을 반영해 이전지출은 향후 5년간 차츰 감소하고 기계·장비 구입으로 동 기간 자본 감가상각은 소폭증가, 결과적으로 총 직접프로그램비용은 2011-12년 1,173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56억캐나다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2-Ⅶ-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 | | | | | | |
|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 347 | 363 | 381 | 401 | 423 | 445 | 467 |
|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216 | 211 | 194 | 188 | 185 | 186 | 189 |
|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 123 | 130 | 134 | 137 | 138 | 139 | 139 |
| 소계(A) | 686 | 703 | 709 | 726 | 747 | 770 | 795 |
|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 | | | | | | |
|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 357 | 372 | 387 | 407 | 427 | 447 | 470 |
|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 162 | 164 | 169 | 177 | 186 | 195 | 203 |
|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 -27 | -29 | -31 | -33 | -35 | -37 | -39 |

SECTION 2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 19 | 20 | 20 | 20 | 20 | 20 | 20 |
| 기타 | 60 | 5 | 0 | 0 | 0 | 0 | 0 |
| 소계(B) | 570 | 533 | 545 | 571 | 598 | 624 | 654 |
|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 | | | | | | |
|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 399 | 401 | 357 | 331 | 318 | 303 | 305 |
| Capital amortization | 43 | 45 | 48 | 50 | 52 | 54 | 55 |
|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 217 | 219 | 232 | 243 | 253 | 258 | 267 |
|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 534 | 564 | 536 | 539 | 550 | 563 | 578 |
| 소계(C) | 1,192 | 1,229 | 1,173 | 1,163 | 1,172 | 1,177 | 1,205 |
| 총프로그램지출(A+B+C) | 2,448 | 2,466 | 2,427 | 2,461 | 2,517 | 2,572 | 2,654 |
|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 4.5 | 4.4 | 4.2 | 4.2 | 4.0 | 4.0 | 3.9 |
| 정부부문 간 주요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 3.7 | 3.3 | 3.2 | 3.2 | 3.2 | 3.2 | 3.2 |
|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 7.8 | 7.6 | 7.0 | 6.6 | 6.3 | 6.0 | 5.9 |
| 총프로그램지출 | 16.0 | 15.3 | 14.4 | 13.9 | 13.5 | 13.2 | 13.0 |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나.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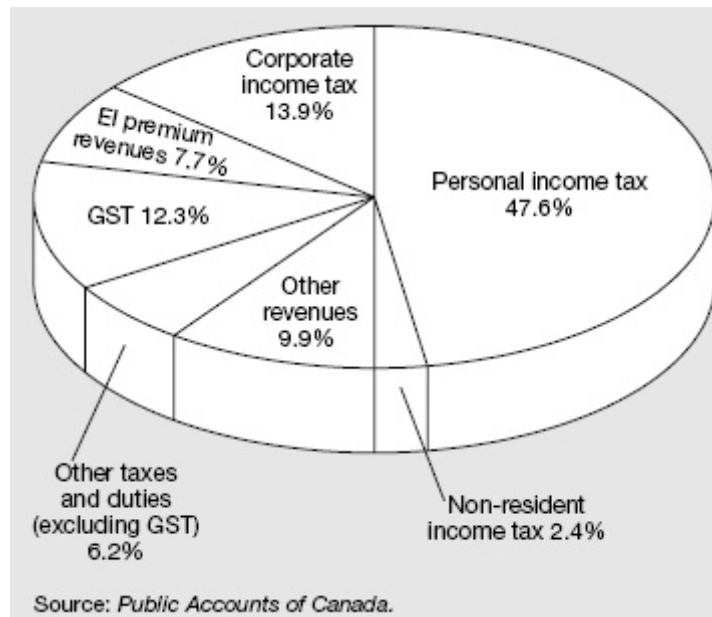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2009-10년 결산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2009-10년 재정적자는 55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6%) 정부부채는 5,19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4%)로 집계, 재정적자 중 CEAP 정책지원금 관련 지출이 210억캐나다달러에 육박 (2010.10.12)
 - (총세입) 2009-10년 총세입은 개인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감소 등으로 2,186억캐나다 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 대비 6.2% 또는 145억 캐나다달러 하락

- (개인소득세) 총세입의 47.6%인 1,039억캐나다달러를 차지한 개인소득세는 경기 부양책을 통한 일시적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전년 대비 121억캐나다달러 또는 10.4% 하락한 규모
- (법인세) 2009-10년 총세입의 13.9%, 304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 상승
- (실업보험) 고용률 감소 및 실업보험료율을 100캐나다달러당 1.73달러로 동결하면서 전체수입은 전년 대비 0.7%하락
- (총지출) 2009-10년 총지출 규모는 2,742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54억캐나다달러 또는 14.8% 상승, 이 중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과 정부부문간 이전지출이 각각 25.0%와 20.8%를 차지

[그림 2-Ⅶ-1] 2009-10년 총세입 구성



SECTION 2 >>

〈표 2-VII-5〉 2009-10년 총세입 결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 | 2009-10 전망 ¹⁾ | 2008-09 실적 | 2009-10 실적 | 증감 | % |
|----------------------------|-----------------------------|----------------|----------------|----------------|-------------|
| 세수 | | | | | |
| 소득세 | | | | | |
| 개인소득세 | 110,275 | 116,024 | 103,947 | -12,077 | -10.4 |
| 법인세 | 26,385 | 29,476 | 30,361 | 885 | 3.0 |
| 기타소득세 | 4,875 | 6,298 | 5,293 | -1,005 | -16.0 |
| 소계(A) | 141,540 | 151,798 | 139,601 | -12,197 | -8.0 |
| 기타세금 및 관세 | | | | | |
| 재화및용역세 | 25,785 | 25,740 | 26,947 | 1,207 | 4.7 |
| 에너지세 | n/a | 5,161 | 5,178 | 17 | 0.3 |
| 관세 | 4,150 | 4,036 | 3,490 | -546 | -13.5 |
| 기타소비세 등 | 10,175 | 4,869 | 4,958 | 89 | 1.8 |
| 소계(B) | 40,115 | 39,806 | 40,573 | 767 | 1.9 |
| 총조세수입(C=A+B) | 181,650 | 191,604 | 180,174 | -11,430 | -6.0 |
| 실업보험수익(D) | 16,795 | 16,887 | 16,761 | -126 | -0.7 |
| 기타세입 | | | | | |
| 정부산하 공사(Crown corporation) | n/a | 7,760 | 7,622 | -138 | -1.8 |
| 기타프로그램 | n/a | 15,105 | 12,396 | -2,709 | -17.9 |
| 순 외국환 | n/a | 1,736 | 1,647 | -89 | -5.1 |
| 소계(E) | 26,460 | 24,601 | 21,665 | -2,936 | -11.9 |
| 총세입(C+D+E) | 224,905 | 233,092 | 218,600 | -14,492 |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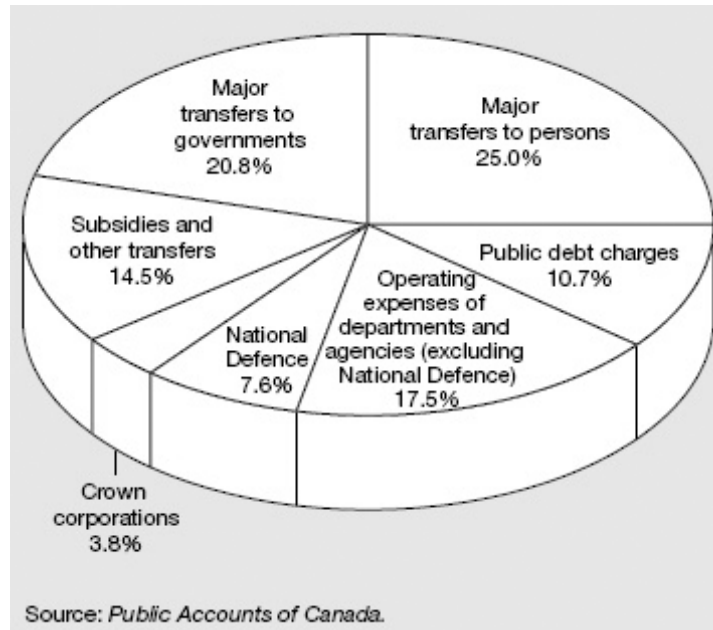
주: "Budget 2009"에 수록된 2009-10년 총세입 전망, 캐나다재무부, 2009년 1월

자료: "Annual Financial Report,"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2009-10년 686억 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70억 캐나다달러, 11.4% 상승
 - 인구고령화 대응에 따른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등 노후관련 혜택이 13억캐나다달러 상승
 - 일반혜택 및 특별혜택으로 구성된 실업보험 지출은 실업률의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억캐나다달러, 32.4%가 증가
 - 아동보조금 역시 전년 대비 4억캐나다달러 상승
- (정부부문간 이전지출) 2009-10년 570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05억캐나다달러 또는 22.5% 증가

- 주·지방정부의 보건·교육·사회복지 지원금인 보건의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및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 규모는 전년 대비 총 24억캐나다달러 증가
- 온타리오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통합판매세(HST) 도입으로 59억캐나다달러의 정부 간 이전지출 발생
- 보조금 및 기타 이전지출 규모는 해외원조, 장학금 지급, 장애인지원, 보건 및 인프라 관련 지원의 증가로 97억캐나다달러 또는 32.1% 상승
- (직접지출) 기타 직접지출은 정부산하 공사(Crown Corporation), 국방비 및 행정 관련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793억캐나다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 대비 98억캐나다달러 또는 14.0% 증가

[그림 2-Ⅶ-2] 2009-10년 총지출 구성



SECTION 2 >>

〈표 2-VII-6〉 2009-10년 총지출 결산

(단위: 100만 캐나다달러, %)

| | 2009-10 전망 ¹⁾ | 2008-09 실적 | 2009-10 실적 | 증감 | % |
|---|-----------------------------|----------------|----------------|---------------|-------------|
|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 | | | | |
| 노후혜택 | 35,160 | 33,377 | 34,653 | 1,276 | 3.8 |
| 실업보험 | 18,920 | 16,308 | 21,586 | 5,278 | 32.4 |
| 아동보조금 | 12,270 | 11,901 | 12,340 | 439 | 3.7 |
| 소계(A) | 66,350 | 61,586 | 68,579 | 6,993 | 3.7 |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 | | | | |
| 보건 및 기타사회 프로그램 | 35,100 | 33,327 | 35,678 | 2,351 | 7.1 |
| 재정협정 | 16,045 | 15,138 | 16,193 | 1,055 | 7.0 |
|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 2,000 | 985 | 1,872 | 887 | 90.1 |
| 기타 주요 이전 | - | 39 | 5,950 | 5,911 | n/a |
| 상설프로그램의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 -3,080 | -2,974 | -2,703 | 271 | -9.1 |
| 소계(B) | 50,065 | 46,515 | 56,990 | 10,475 | 22.5 |
| 직접 프로그램지출 | | | | | |
| 보조금 및 기타 이전지출(C) | n/a | 30,192 | 39,892 | 9,700 | 32.1 |
| 기타 직접프로그램지출 | | | | | |
| 정부산하 공사 | n/a | 8,066 | 10,428 | 2,362 | 29.3 |
| 국방 | n/a | 18,770 | 20,863 | 2,093 | 11.2 |
| 기타 부서 및 기관 | n/a | 42,728 | 48,032 | 5,304 | 12.4 |
| 소계(D) | n/a | 69,564 | 79,323 | 9,759 | 14.0 |
| 직접프로그램지출 합계(E=C+D) | 112,670 | 99,756 | 119,215 | 19,459 | 19.5 |
| 총프로그램지출(F=A+B+E) | 229,085 | 207,875 | 244,784 | 36,927 | 17.8 |
| 공채(Public Debt) (G) | 29,500 | 30,990 | 29,414 | -1,576 | -5.1 |
| 총합계(F+G) | 258,600 | 238,847 | 274,198 | 35,351 | 14.8 |

주: "Budget 2009"에 수록된 2009-10년 총지출 전망, 캐나다재무부, 2009년 1월
 자료: "Annual Financial Report,"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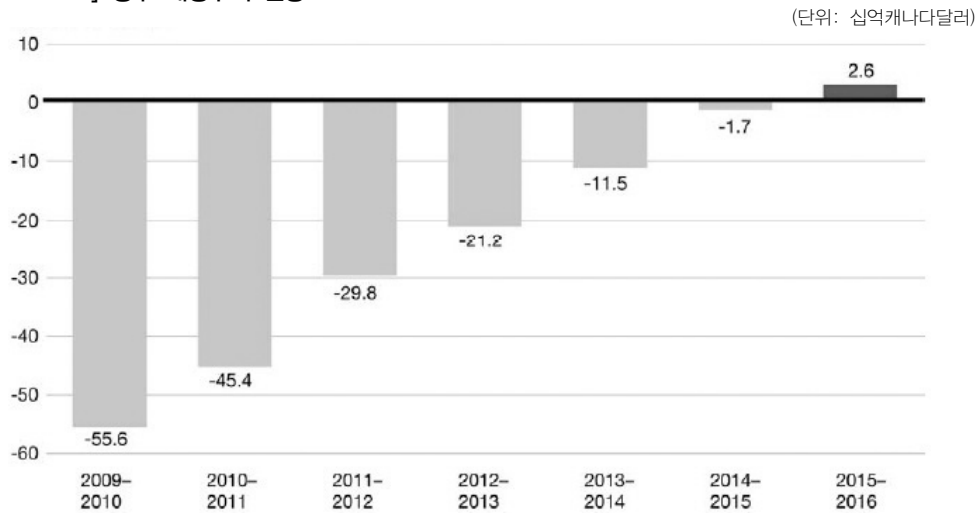
○ (정부부채) 캐나다정부의 부채규모는 5,191억캐나다달러 또는 GDP대비 34.0%로 전년 대비 554억캐나다달러 증가, 이는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캐나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 방편으로 “Budget 2010”에 1) CEAP 및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 2) 각 프로그램에 정책목표를 설정해 지출 증가율을 억제, 3) 행정부 기능 및 경상비용의 검토를 통해 재원낭비를 줄이고 서비스체계 효율화에 주력할 것을 명시, 재정적자를 2009-10년 55.6억 캐나다달러에서 2015-16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2010년 10월 12일)

[그림 2-Ⅶ-3] 정부 재정수지 전망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캐나다의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의 6차보고서가 발표. 캐나다국민 세금부담 경감조치, 실업자 혜택증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미래경제 구축,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수록 및 세목별 지원금 일부 조정, 2년간 총지원금은 621억캐나다달러로 불변 (2010년 9월 27일)
- 정부는 CEAP를 통해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2만 3천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

2010년 10월 현재 97%의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

- 캐나다 국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조치로 31.8억캐나다달러 투입
 - 세금감면 혜택 : 개인소득세 감면, 보육보조금 및 자녀양육보조금, 근로소득세금 혜택 등
 - 주택지원 및 법인세 혜택 : 주택수리세금환급(Home Renovation Tax Credit), 첫주택구입자 세금환급(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컴퓨터 구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100% 자본비 세금공제 등
- 실업자에게 총 53.5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세목별로는 캐나다 근로자 혜택 15.5억캐나다달러, 교육기회 확대 9.9억캐나다달러, 실업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동결에 28억캐나다달러 지원
 - 실업보험 수혜기간 5주 연장, 일자리나누기 확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2010년 실업보험료율 동결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으로 88.7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 중 기반시설 투자로 57.7억캐나다달러, 주택분야 31억캐나다달러 지원
 - 주·지방정부 : 정부간 이전지출, 인프라건설촉진펀드(Infrastructure Stimulus Fund)를 통한 사업지원, 커뮤니티 지원 프로젝트 등
 - 캐나다원주민(First Nations) 인프라 지원 : 학교건물 공사, 상·하수도, 보건기관 지원 등
 - 연방 기반시설 : 철도개선 작업, 연방건물 복원, 항만·교량 시설 개선 등
 - 사회 주거시설 : 주·지방 사회 주거시설 개조, 원주민 주거시설 확대, 저소득노인 주택시설 마련, 지방정부에 주택관련 대출 등
- 미래경제 구축에 23.2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 중 고등교육 및 연구에 11.5억캐나다달러, 과학기술 개발에 11.7억캐나다달러 투입
 - 고등교육 및 연구 : 대학교 인프라 개선, 대학원 장학금지원 프로그램, 북극지역 연구 인프라 지원 등
 - 과학기술 지원 : 연방 실험실 개선, 클린에너지 펀드, 우주산업 지원, 캐나다국민 의료정보 전자화 추진, 지역 광대역 확대 보급 등
- 산업 및 커뮤니티(Industries and Communities)에 22.7억캐나다달러 투입, 이 중 산업

분야에 12.5억캐나다달러, 커뮤니티에 10.1억캐나다달러 지원

- 산업지원 : 농림분야 지원, 광물탐험 세금환급, 중소기업 지원, 관광·문화관련 정책지원 등
- 커뮤니티 지원 : 지역개발 프로젝트, 원주민 보건 및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등

〈표 2-Ⅶ-7〉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단위: 억캐나다달러)

| | 2009-10 | 2010-11 | 합계 |
|---|--------------|--------------|--------------|
| •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 30.2 | 31.8 | 62.0 |
| • 실업자에게 혜택 | 37.3 | 53.5 | 90.8 |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 68.0 | 88.7 | 156.7 |
| • 미래 경제 구축 | 15.5 | 23.2 | 38.7 |
| •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 109.8 | 22.7 | 132.5 |
| 총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출 | 260.8 | 219.9 | 480.7 |
| 지방정부 경기부양(Assum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actions) | 70.6 | 69.7 | 140.3 |
| 총 경기부양지출(Total Economic Action Plan stimulus) | 331.9 | 289.6 | 621.0 |

자료: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Year 2, 6th Report,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다. 기타 정책이슈

- 캐나다정부는 세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일부항목의 개정된 안을 발표 (2010년 11월 5일)
 - 입법 제안된 내용으로는 파트너십, 연금관련 규정의 개정, 캐나다 광물탐험비용, 캐나다중소기업지원펀드(Labour 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 중소기업 자본이득 세금면제 규정의 개정 등

1. 세제개편

- 첫주택마련 예금계좌(The First Home Saver Account)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 추진 (2010. 10. 6)
 - 첫주택마련 예금계좌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금 및 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8년 10월에 시행됨
 - 연간 최소 1,000호주달러에서 최고 5,500호주달러의 예금에 대해 17%의 정부 기여금(최고 935호주달러)을 제공
 -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이는 은행에서 지불하므로 사실상 면세 혜택이 주어짐
 - (현행) 예금주는 예치기간(4년) 동안 예금액을 유지해야 하나 예치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잔고 전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개정) 예치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어 최소 예치기간이 지나면 예금액을 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Wayne Swan 재무부장은 관련규정 개정이 첫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이자소득 감세 및 정부 출연금의 기존 혜택을 누리면서 자금이용에 더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0-11 예산안은 2010년 5월 11일에 발표
 - 동 예산안 내용은 『재정동향』 3호 참조

나. 수정예산안

- 총선을 대비하여 예산안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수정예산안(Economic Statements) 발표 (2010. 7. 14)
 - 수정예산안 내용은 재정동향 3호 참조

-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갱신된 정보를 수록한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표 (2010. 7. 26)
 -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내용은 『재정동향』 3호 참조

- 흑자예산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담은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발표 (2010. 11. 9)
 - (경제전망)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의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0-11연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전망치보다 소폭 개선된 3.25%로 전망
 - 경기부양조치로 약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하여 FY2011-12에 4.5%를 기록할 전망

SECTION 2 >>

〈표 2-Ⅷ-1〉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 | 2010-11 | | | 2011-12 | | | 2012-13 | | | 2013-14 | | |
|-------|---------|-----------|-------|---------|-----------|-------|---------|-----------|-------|---------|-----------|-------|
| | Budget | ES / PEFO | MYEFO | Budget | ES / PEFO | MYEFO | Budget | ES / PEFO | MYEFO | Budget | ES / PEFO | MYEFO |
| 경제성장률 | 3.25 | 3.0 | 3.25 | 4.0 | 3.75 | 3.75 | 3.0 | 3.0 | 3.0 | 3.0 | 3.0 | 3.0 |
| 고용증가율 | 2.25 | 2.25 | 2.5 | 2.0 | 2.0 | 2.0 | 1.5 | 1.5 | 1.5 | 1.75 | 1.5 | 1.5 |
| 실업률 | 5.0 | 5.0 | 4.75 | 4.75 | 4.75 | 4.5 | 5.0 | 5.0 | 5.0 | 5.0 | 5.0 | 5.0 |
| CPI | 2.5 | 2.75 | 2.75 | 2.5 | 2.75 | 3.0 | 2.5 | 2.5 | 2.5 | 2.5 | 2.5 | 2.5 |
| 경상성장률 | 8.25 | 9.25 | 9.0 | 5.75 | 5.25 | 5.0 | 5.5 | 5.25 | 5.25 | 5.5 | 5.25 | 5.25 |

자료: Budget 2010-11, 2010, 5
 Economic Statements, 2010, 7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재정전망) FY2010-11의 예산수지는 415억호주달러(GDP 대비 3%)로 예산안보다 7.1억호주달러,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전망보다 7.8억호주달러 적자폭 확대
 - 이는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등 연방정부 세수가 감소한 데 기인
 - 지난 5월 예산책정 시 호주달러 대비 미국달러는 90센트 수준이었으나 최근 호주달러 대비 미국달러가 1.01달러로 급등
 - 그러나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FY2012-13에는 31억호주달러(GDP대비 0.2%) 흑자예산으로 전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재정수입) 발생주의 기준의 FY2010-11의 재정수입은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발표 이후보다 21억호주달러 감소한 수준으로, 정책결정 효과보다 경제적 변수 변화 효과의 영향이 큼
 - 원천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률 증가로 FY2010-11에 13억호주달러, FY2011-12에 18억호주달러 상향 조정
 - 법인세는 호주달러 가치 급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FY2010-11에 32억호주달러, FY2011-12에 31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재정지출)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지출은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발표 이후보다 FY2010-11에 약 3억호주달러 증가하나 이후 4년 동안 약 56억호주달러의 재정지출

감소

- 정책결정효과로 인하여 FY2010-11에 2.2억호주달러 및 이후 4년간 15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최우선 지역인프라 프로그램(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도입으로 FY2011-12부터 약 3년간 6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의 자동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협의에 대한 비용으로 FY2010-11부터 약 4년간 3.5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지역사회 정신건강 개선 및 자살 방지를 위해 FY2010-11부터 약 4년 동안 2.7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의한 효과로 인하여 FY2010-11에는 0.8억호주달러 증가하나 이후 4년간 71억호주달러의 지출 감소(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약 34억호주달러 수준의 비용 삭감 포함)
 - 서호주 정부에 근해 석유 특허권(Offshore Petroleum Royalties) 지급으로 FY2010-11에 3억호주달러(향후 4년간 8.8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장애지원연금비용은 수급자 및 평균 지급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FY2010-11에 2.4억호주달러(향후 4년간 8.9억호주달러) 지출 증가
 - 노동시장여건 개선으로 호주 고용서비스 비용이 FY2010-11에 3.9억호주달러(향후 4년간 17억호주달러) 감소
 - FY2009-10에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서비스의 이용실적 저조를 반영하여 메디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비용을 FY2010-11에 0.6억호주달러(향후 4년간 6억호주달러) 지출 감소

SECTION 2 >>

〈표 2-Ⅷ-2〉 예산안 및 PEFO와 MYEFO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총 합계 |
|---------------------------|----------------|----------------|----------------|----------------|----------|
| 2010-11예산안 재정지출 | 354,644 | 364,573 | 380,997 | 397,981 | - |
| 예산안과 PEFO와의 차이 | -593 | -1,834 | -2,234 | -2,290 | -6,951 |
| 정책결정효과 ¹⁾ | 3 | -674 | -656 | -621 | -1,948 |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 효과 | -596 | -1,160 | -1,578 | -1,670 | -5,004 |
| 2010 PEFO 재정지출 | 354,051 | 362,739 | 378,763 | 395,690 | - |
| PEFO와 MYEFO와의 차이 | 297 | -738 | -1,975 | -3,179 | -5,595 |
| 정책결정효과 ²⁾ | 217 | 571 | 236 | 448 | 1,472 |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 효과 | 81 | -1,308 | -2,211 | -3,628 | -7,066 |
| •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동 | 212 | -666 | -320 | -316 | -1,090 |
| - 실업급여 | 93 | -196 | 71 | 15 | -17 |
| - 가격지수 및 임금 | 29 | 112 | 248 | 271 | 660 |
| - 이자 및 환율 | -41 | -52 | -50 | -52 | -195 |
| - 주정부에 대한 GST 지급 | 130 | -530 | -590 | -550 | -1,540 |
| • 공공채무 이자 | 36 | -198 | 2 | 110 | -50 |
| • 프로그램의 특정요인 변동분 | 1,005 | 485 | 331 | 161 | 1,982 |
| • 기타 변동분 | -1,172 | -929 | -2,224 | -3,583 | -7,908 |
| 2010-11 MYEFO 재정지출 | 354,348 | 362,002 | 376,789 | 392,512 | - |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표 2-Ⅷ-3〉 예산안과 MYEFO의 기능별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 | 2010-2011 | | 2011-2012 | | 2012-2013 | | 2013-2014 | |
|----------------------------|--------------|--------------|--------------|--------------|--------------|--------------|--------------|--------------|
| | BUDGET | MYEFO | BUDGET | MYEFO | BUDGET | MYEFO | BUDGET | MYEFO |
| 일반공공서비스 | 20.1 | 21.2 | 20.9 | 21.1 | 21.7 | 21.8 | 22.7 | 22.7 |
| 국방 | 21.0 | 21.1 | 20.5 | 19.9 | 21.3 | 20.7 | 22.9 | 22.1 |
| 공공질서 및 안전 | 3.9 | 3.9 | 3.9 | 3.9 | 3.9 | 3.9 | 4.0 | 4.0 |
| 교육 | 33.0 | 33.0 | 29.6 | 29.4 | 30.3 | 30.1 | 31.3 | 31.0 |
| 보건 | 56.9 | 57.4 | 72.0 | 72.1 | 75.8 | 76.0 | 80.1 | 80.3 |
| 사회보장 및 복지 | 115.0 | 115.7 | 119.8 | 120.5 | 125.2 | 126.2 | 130.5 | 131.1 |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 5.4 | 5.8 | 4.2 | 4.5 | 4.2 | 4.4 | 4.2 | 4.2 |
| 문화 | 3.2 | 3.3 | 3.2 | 3.2 | 3.1 | 3.2 | 3.2 | 3.2 |
| 에너지·연료 | 7.6 | 7.2 | 7.3 | 7.4 | 7.1 | 7.1 | 6.8 | 6.8 |
| 농림수산 | 3.6 | 3.7 | 3.0 | 3.0 | 2.6 | 2.4 | 2.3 | 2.1 |
| 광업·건설·제조 | 2.0 | 2.0 | 2.5 | 2.0 | 2.5 | 2.0 | 2.6 | 2.0 |
| 교통·통신 | 4.9 | 5.1 | 6.7 | 6.7 | 8.2 | 7.3 | 7.0 | 6.2 |
|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 9.1 | 8.9 | 8.6 | 8.4 | 8.5 | 8.2 | 8.5 | 8.3 |
| 기타 지출 | 68.8 | 65.9 | 62.5 | 59.7 | 66.5 | 63.6 | 72.0 | 68.6 |
| 총지출 | 354.6 | 354.3 | 364.6 | 362.0 | 381.0 | 376.8 | 398.0 | 392.5 |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표 2-Ⅷ-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 | 2010-11 | | | 2011-12 | | | 2012-13 | | | 2013-14 | | |
|--|---------|-------|-------|---------|-------|-------|---------|-------|-------|---------|-------|-------|
| | Budget | PEFO | MYEFO | Budget | PEFO | MYEFO | Budget | PEFO | MYEFO | Budget | PEFO | MYEFO |
| 재정수입 ¹⁾ (Revenue) | 321.8 | 321.8 | 319.7 | 356.4 | 358.1 | 355.4 | 381.9 | 383.0 | 380.3 | 407.2 | 404.9 | 400.5 |
| GDP대비 비율 | 22.9 | 22.7 | 22.8 | 24.0 | 24.0 | 24.2 | 24.3 | 24.4 | 24.5 | 24.6 | 24.4 | 24.5 |
| 재정지출 ¹⁾ (Expenses) | 354.6 | 354.1 | 354.3 | 364.6 | 362.7 | 362.0 | 381.0 | 378.8 | 376.8 | 398.0 | 395.7 | 392.5 |
| GDP대비 비율 | 25.2 | 25.0 | 25.3 | 24.5 | 24.3 | 24.6 | 24.3 | 24.1 | 24.3 | 24.0 | 23.9 | 24.0 |
| 재정수지 ²⁾ (Fiscal balance) | -39.6 | -39.4 | -41.9 | -12.1 | -8.7 | -10.9 | 2.0 | 0.1 | 4.2 | 6.3 | 6.1 | 4.3 |
| GDP대비 비율 | -2.8 | -2.8 | -3.0 | -0.8 | -0.6 | -0.7 | 0.1 | 0.3 | 0.3 | 0.4 | 0.4 | 0.3 |
| 예산수지 ³⁾ (Underlying cash balance) | -40.8 | -40.7 | -41.5 | -13.0 | -10.4 | -12.3 | 1.0 | 3.5 | 3.1 | 5.4 | 4.5 | 3.3 |
| GDP대비 비율 | -2.9 | -2.9 | -3.0 | -0.9 | -0.7 | -0.8 | 0.1 | 0.2 | 0.2 | 0.3 | 0.3 | 0.2 |
| 순채무 (Net debt) | 78.5 | 80.6 | 79.6 | 90.5 | 89.4 | 94.4 | 93.7 | 89.5 | 93.6 | 90.8 | 87.1 | 92.5 |
| GDP대비 비율 | 5.6 | 5.7 | 5.7 | 6.1 | 6.0 | 6.4 | 6.0 | 5.7 | 6.0 | 5.5 | 5.2 | 5.7 |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기준.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10-11, 2010, 5

Economic Statements, 2010, 7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다. 결산

□ 예산안 발표 당시의 전망보다 좀 더 개선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FY2009-10 결산(Final Budget Outcome) 발표 (2010. 9. 24)

○ (예산수지) FY2009-10 예산수지 적자는 548억호주달러(GDP대비 4.2%)를 기록

– 호주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재정지출증가율 제한 노력으로 인해 전망 대비 23억호주달러 적자폭 감소

–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FY2012-13 흑자재정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입) 발생주의 기준의 FY2009-10 재정수입은 2,928억호주달러(GDP 대비 22.5%)로 전망 대비 14억호주달러 감소

- 세외수입은 전망보다 약 8,100만호주달러 증가하였으나 조세수입이 15억호주달러 감소한 것에 기인
 - 자본이익실적의 저조로 기타 개인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들어 소득세수에서만 11억 2,400만호주달러 감소
 - 담배 및 석유제품 소비 위축으로 소비 및 관세수입에서 4억 2,500만호주달러 감소
 - 예상보다 낮은 유가로 인해 석유자원임대세가 전망 대비 1억 8,300만호주달러 감소
- (재정지출) 발생주의 기준의 FY2009-10 재정지출은 3,392억호주달러(GDP 대비 26.1%)로 전망 대비 39억호주달러 감소
 - 재화용역세(Good and Services Tax) 세수 감소로 약 4.4억호주달러 정도의 주 및 준주의 일반세입보조 축소
 - 호주의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일환인 주택단열재 설치계획의 지출이 예상보다 적어 2.3억호주달러 감소
 -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이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메디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2.5억호주달러 감소
 - 국채발행 구성의 변화 및 물가연동채의 적절한 발행으로 2.1억호주달러 정도의 공공채무이자비용을 절감
- (순채무) FY2009-10의 순채무(Net debt)는 423억호주달러(GDP 대비 3.3%)로 전망 대비 4.5억호주달러 증가한 수준임
 - 이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 정부채권의 시장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

<표 2-Ⅷ-5> FY2009-10 결산 요약

(단위: 십억호주달러)

| | 2008-09 | | 2009-10 | | |
|--|-----------------|-----------------|-----------------|-----------------|-------------------------------|
| | 예산 | 실적 | 예산 | 전망 | 실적 |
| 재정수입(Revenue) ¹⁾ (GDP 대비 비율) | 319.5 (25.9) | 298.9 (23.8) | 290.6 (24.7) | 294.2 (22.7) | 292.8 (22.5) |
| 재정지출(Expenses) ¹⁾ (GDP 대비 비율) | 292.5 (23.8) | 324.6 (25.9) | 338.2 (28.7) | 343.1 (26.5) | 339.2 (26.1) |
|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GDP 대비 비율) | 23.1 (1.9) | -29.7 (-2.4) | -53.1 (-4.5) | -54.8 (-4.2) | -52.9 (-4.1) |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GDP 대비 비율) | 21.7 (1.8) | -27.1 (-2.2) | -57.6 (-4.9) | -57.1 (-4.4) | -54.8 (-4.2) |
| 순채무(Net debt) (GDP 대비 비율) | -45.0 (-3.7) | -16.1 (-1.3) | 53.7 (4.6) | 41.8 (3.2) | 42.3 (3.3) |

-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08-09, 2008, 5
 Budget 2009-10,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표 2-Ⅷ-6> FY2009-10의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십억호주달러, %)

| | 2008-09 | | 2009-10 | | | 증감률 | |
|----------------------------|--------------|--------------|--------------|--------------|--------------|------------|-------------|
| | 예산 | 실적 | 예산 | 전망 | 실적 | 전년대비 | 전망대비 |
| 일반 공공서비스 | 17.3 | 17.2 | 17.2 | 18.9 | 19.2 | 11.6 | 1.8 |
| 국방 | 17.9 | 19.2 | 21.0 | 20.6 | 20.2 | 5.0 | -2.2 |
| 공공질서 및 안전 | 3.8 | 3.6 | 3.9 | 3.9 | 3.6 | 1.0 | -8.6 |
| 교육 | 18.8 | 22.6 | 35.2 | 34.9 | 34.9 | 54.4 | 0.0 |
| 보건 | 46.0 | 49.1 | 51.2 | 52.8 | 51.4 | 4.6 | -2.6 |
| 사회보장 및 복지 | 102.4 | 124.6 | 111.0 | 109.7 | 109.2 | -12.3 | -0.4 |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 3.2 | 5.1 | 9.1 | 9.3 | 9.0 | 77.7 | -2.6 |
| 문화 | 2.9 | 3.1 | 3.1 | 3.2 | 3.3 | 5.6 | 2.2 |
| 에너지·연료 | 5.6 | 5.8 | 8.4 | 9.0 | 8.5 | 46.1 | -5.6 |
| 농림수산 | 3.1 | 2.7 | 3.4 | 3.3 | 2.8 | 3.4 | -15.4 |
| 광업, 건설·제조 | 1.8 | 1.9 | 1.7 | 1.7 | 1.6 | -14.7 | -3.6 |
| 교통·통신 | 4.7 | 6.9 | 5.5 | 6.8 | 6.6 | -4.3 | -2.9 |
|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 6.8 | 6.5 | 8.2 | 8.8 | 8.6 | 32.6 | -1.9 |
| 기타 지출 | 58.2 | 56.2 | 58.8 | 60.2 | 60.3 | 7.2 | 0.1 |
| 총지출 | 292.5 | 324.6 | 338.2 | 343.1 | 339.2 | 4.5 | -1.1 |

자료: Budget 2008-09, 2008, 5
 Budget 2009-10,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변동사항 없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변동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2010년 8월 21일 총선결과 Julia Gillard 총리가 당선되면서 ‘책임있는 경제운용’에 대한 공약을 거듭 선언 (2010. 9. 7)
 - Gillard 노동당 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경제운용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 다음 3가지 요소에 주력함을 발표
 - 3년 이내에 흑자재정으로의 전환
 - 예산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
 - 호전된 경제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입여력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2007-08년도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유지
 -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제고 및 물가 안정에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제공한 것을 기반으로 신뢰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
 - 재정전략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체계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
 - 호주 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 개혁 실행
 - 교통, 의료, 교육 등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호주 경제 능력을 더욱 강화

- 호주 전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광역네트워크사업 및 낙후지역의 보건 및 교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노력
- 또한 퇴직연금의 고용주 의무분담률 상향 조정, 저소득근로자의 퇴직연금분담금 지원 등 은퇴 후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저축계획(national savings plan) 실행
-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오염 절감을 위해 노력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I. 미 국 (2010년 9월 기준)

II. 일 본 (2010년 8월 기준)

III. 영 국 (2010년 9월 기준)

IV. 프랑스 (2010년 9월 기준)

V. 독 일 (2010년 9월 기준)

VI. 캐나다 (2010년 8월 기준)

VII. 호 주 (2010년 8월 기준)

I 미국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09.10~2010.9)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약 1,230억달러 (8.7%)가량이 감소한 1조 2,940억달러 기록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재정수입은 약 571억달러(2.7%) 증가하고 총재정지출이 약 503억달러(1.4%)가량 감소하면서 2010년도 재정수지가 작년에 비해 개선

〈표 3-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FY2008 ¹⁾ | | FY2009 ¹⁾ | | FY2010 ¹⁾ | |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 | FY2011 (추정) ²⁾ |
|--------------------------------|----------------------|----------------------------|----------------------|----------------------------|----------------------|----------------------------|-------------------|-------------|------------------------------|
| | 9월 | 누계 (2007.10- 2008.9) | 9월 | 누계 (2008.10- 2009.9) | 9월 | 누계 (2009.10- 2010.9) | 변동분 | % | |
| 총재정수입 | 272,445 | 2,523,858 | 218,902 | 2,104,613 | 245,206 | 2,161,745 | 57,132 | 2.7 | 2,567,181 |
| 예산(on-Budget) | 218,361 | 1,865,813 | 166,682 | 1,450,603 | 194,528 | 1,530,057 | 79,454 | 5.5 | 1,893,113 |
| 예산 외(off-Budget) ³⁾ | 54,083 | 658,045 | 52,220 | 654,010 | 50,678 | 631,688 | -22,322 | -3.4 | 674,068 |
| 총재정지출 | 2,978,664 | 2,942,377 | 3,521,734 | 3,653,290 | 3,455,835 | 3,602,955 | -50,335 | -1.4 | 3,833,860 |
| 예산 | 169,755 | 2,503,903 | 208,071 | 3,004,716 | 216,552 | 2,901,150 | -103,566 | -3.4 | 3,255,667 |
| 예산 외 | 56,963 | 474,761 | 57,436 | 517,018 | 63,147 | 554,685 | 37,667 | 7.3 | 578,193 |
| 재정수지 | 45,726 | -454,806 | -46,605 | -1,417,121 | -34,493 | -1,294,090 | 123,031 | -8.7 | -1,266,679 |
| 예산 | 48,606 | -638,090 | -41,390 | -1,554,113 | -22,024 | -1,371,093 | 183,020 | -11.8 | -1,362,554 |
| 예산 외 | -2,880 | 183,284 | -5,216 | 136,992 | -12,468 | 77,003 | -59,989 | -43.8 | 95,875 |
| 총재원조달 규모 | -45,726 | 454,806 | 46,605 | 1,417,121 | 1,294,090 | 1,471,300 | 54,179 | 3.8 | 1,266,679 |
| 채무 | 334,887 | 767,722 | 69,802 | 1,743,352 | 97,373 | 1,474,069 | -269,283 | -15.4 | 1,200,671 |
|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 -364,735 | -296,371 | 19,951 | 96,343 | -32,366 | -34,567 | -130,910 | -135.9 | 200,000 |
| 기타 | -15,878 | -16,545 | -43,148 | -422,575 | -30,514 | -145,412 | 277,163 | -65.6 | -133,992 |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11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예산안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9월, 2009.9월, 2010.9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9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약 2조 1,620억달러로 '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71억 달러(2.7%)가 증가
- 이는 주로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법인세 및 기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법인세는 약 532억달러(38.5%), 기타 재정수입은 약 441억(85.3%)가량 증가
 - 이외에도 소비세와 관세 관련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약 44억달러(7.1%), 28억달러(12.7%) 증가
 - 반면 개인소득세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고, 실업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세입 역시 감소
 - 개인소득세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약 168억달러(1.8%) 줄었고,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은 약 261억달러(2.9%) 감소한 8,648억달러 규모

〈표 3-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FY2008 ¹⁾ | | FY2009 ¹⁾ | | FY2010 ¹⁾ | | 전년대비 증감(누계기준) | |
|-----------------------------|----------------------|----------------------------|----------------------|----------------------------|----------------------|----------------------------|------------------|------------|
| | 9월 | 누계 (2007.10- 2008.9) | 9월 | 누계 (2008.10- 2009.9) | 9월 | 누계 (2009.10- 2010.9) | 변동분 | % |
| 개인소득세 | 131,597 | 1,145,748 | 102,437 | 915,308 | 107,327 | 898,549 | -16,759 | -1.8 |
| 법인세 | 53,631 | 304,346 | 28,793 | 138,229 | 49,040 | 191,437 | 53,208 | 38.5 |
|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 | | | | | | | |
|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 54,083 | 658,045 | 52,220 | 654,010 | 50,678 | 631,688 | -22,322 | -3.4 |
|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 17,224 | 198,412 | 15,992 | 194,876 | 15,658 | 184,208 | -10,668 | -5.5 |
| 실업보험 | 207 | 39,741 | 458 | 37,889 | 705 | 44,823 | 6,934 | 18.3 |
| 기타퇴직연금 | 327 | 4,165 | 329 | 4,142 | 316 | 4,076 | -66 | -1.6 |
| 소비세 | 7,684 | 67,334 | 6,978 | 62,484 | 8,361 | 66,909 | 4,425 | 7.1 |
| 유산세 및 증여세 | 2,044 | 28,844 | 1,637 | 23,482 | 1,108 | 18,885 | -4,597 | -19.6 |
| 관세 | 2,483 | 27,568 | 1,983 | 22,454 | 2,626 | 25,298 | 2,844 | 12.7 |
| 기타 재정수입 | 3,165 | 49,654 | 8,074 | 51,738 | 9,386 | 95,872 | 44,134 | 85.3 |
| 총재정수입 | 272,445 | 2,523,858 | 218,902 | 2,104,613 | 245,206 | 2,161,745 | 57,132 | 2.7 |
| 예산 | 218,361 | 1,865,813 | 166,682 | 1,450,603 | 194,528 | 1,530,057 | 79,454 | 5.5 |
| 예산 외 | 54,083 | 658,045 | 52,220 | 654,010 | 50,678 | 631,688 | -22,322 | -3.4 |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9월, 2009.9월, 2010.9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 9월(누계) 재정지출은 약 3조 4,55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659억달러(1.9%) 감소

- 상업 및 주택금융(housing credit) 부문의 지출에서 약 3,807억달러(130.1%)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
 - 이외에도 지역개발 부문에서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14억달러(5.2%)가 감소
- 나머지 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하였지만 상업 및 주택금융 부문에서의 지출 감소분을 상쇄시키지는 못함
 - 소득보장과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지출은 각각 약 900억달러(16.9%), 약 469억달러(59.9%) 증가
 - 에너지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약 147.5%(69억달러)가량 큰 폭으로 증가

〈표 3-1-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FY2008 ¹⁾ | | FY2009 ¹⁾ | | FY2010 ¹⁾ | |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 |
|-----------------------|----------------------|----------------------------|----------------------|----------------------------|----------------------|----------------------------|-------------------|-------------|
| | 9월 | 누계 (2007.10- 2008.9) | 9월 | 누계 (2008.10- 2009.9) | 9월 | 누계 (2009.10- 2010.9) | 변동분 | % |
| 국방 | 54,651 | 624,065 | 62,975 | 662,794 | 64,637 | 696,052 | 33,258 | 5.0 |
| 외교 | 750 | 28,823 | 4,969 | 36,874 | 5,644 | 45,196 | 8,322 | 22.6 |
| 과학, 우주, 기술 일반 | 2,514 | 23,951 | 3,129 | 29,900 | 3,161 | 30,904 | 1,004 | 3.4 |
| 에너지 | 718 | 531 | 3,253 | 4,653 | 1,604 | 11,514 | 6,861 | 147.5 |
| 천연자원 및 환경 | 2,834 | 30,184 | 2,935 | 45,760 | 9,424 | 46,632 | 872 | 1.9 |
| 농업 | 3,340 | 22,056 | 1,524 | 14,010 | 1,522 | 23,215 | 9,205 | 65.7 |
| 상업 및 주택금융 | 3,178 | 27,814 | -7,998 | 292,751 | -8,770 | -87,981 | -380,732 | -130.1 |
| 교통 | 7,910 | 77,660 | 9,053 | 84,349 | 9,551 | 92,493 | 8,144 | 9.7 |
| 지역개발 | 2,000 | 22,535 | 1,642 | 26,255 | 2,428 | 24,897 | -1,358 | -5.2 |
|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 7,345 | 89,120 | 5,142 | 78,210 | 14,143 | 125,075 | 46,865 | 59.9 |
| 보건 | 23,276 | 280,616 | 28,881 | 334,303 | 30,834 | 369,002 | 34,699 | 10.4 |
| 메디케어 | 21,626 | 390,755 | 36,532 | 430,093 | 38,593 | 451,636 | 21,543 | 5.0 |
| 소득보장 | 25,612 | 432,733 | 45,963 | 533,903 | 44,284 | 623,910 | 90,007 | 16.9 |
| 사회보장 | 52,156 | 617,030 | 57,828 | 682,993 | 59,593 | 706,738 | 23,745 | 3.5 |
| 보훈 | 4,265 | 84,687 | 8,250 | 95,463 | 9,173 | 108,382 | 12,919 | 13.5 |
| 법무행정 | 4,600 | 47,418 | 4,794 | 53,840 | 4,816 | 55,223 | 1,383 | 2.6 |
| 일반행정 | 1,053 | 16,025 | 776 | 17,313 | 989 | 18,099 | 786 | 4.5 |
| 순이자지급 | 14,713 | 248,902 | 1,517 | 190,907 | -6,175 | 196,965 | 6,058 | 3.2 |
| 상계계정수입 | -5,821 | -86,242 | -5,657 | -92,638 | -5,751 | -82,116 | 10,522 | -11.4 |
| 합계 | 226,718 | 2,978,664 | 265,507 | 3,521,734 | 279,698 | 3,455,835 | -65,899 | -1.9 |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9월, 2009.9월, 2010.9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10월 31일 기준 공공채무⁹⁾는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7,757억 달러(14.9%)가 증가하여 약 13조 6,688억달러 기록
 - 이는 시장성 채권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 중 중기채가 큰 폭으로 증가
 - 시장성 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조 5,950억달러(23.0%)가 증가하였고 이 중 중기채가 약 1조 4,781억달러(38.7%)가량 증가
 - 비시장성 채권은 '09년 10월에 비해 약 1,800억달러(3.7%) 증가한 5조 1,260억달러 규모
 - 비정부부문 소유 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조 5,819억달러(21.1%) 증가한 약 9조 달러 규모를 보였고, 정부부문 소유 채권의 경우, 약 1,937억달러(4.4%) 증가한 4조 5,989억 달러를 기록

9) 공공채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표 3-1-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08.10.31 | | | '09.10.31 | | | '10.10.31 | | |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비정부부 소유 채무 | 정부부 소유 채무 | 합계 | 비정부부 소유 채무 | 정부부 소유 채무 | 합계 | 비정부부 소유 채무 | 정부부 소유 채무 | 합계 | 비정부부 소유 채무 | | 정부부 소유 채무 | | 합계 | |
| | | | | | | | | | | 변동분 % | 변동분 % | 변동분 % | 변동분 % | 변동분 % | 변동분 % |
| 시장성: | 5,704,139 | 25,221 | 5,729,360 | 6,924,930 | 22,703 | 6,947,633 | 8,521,058 | 21,661 | 8,542,719 | 1,596,128 | 23.0 | -1,042 | -4.6 | 1,595,086 | 23.0 |
| 단기채(T-Bills) | 1,904,060 | 5,675 | 1,909,736 | 1,852,331 | 6,176 | 1,858,507 | 1,764,088 | 4,372 | 1,768,460 | -88,243 | -4.8 | -1,804 | -29.2 | -90,047 | -4.8 |
| 중기채(T-Notes) | 2,685,691 | 913 | 2,686,604 | 3,816,792 | 1,432 | 3,818,224 | 5,293,330 | 3,015 | 5,296,345 | 1,476,538 | 38.7 | 1,583 | 110.5 | 1,478,121 | 38.7 |
| 장기채(T-Bonds) | 578,915 | 3,955 | 582,870 | 689,021 | 2,867 | 691,888 | 859,206 | 3,816 | 863,022 | 170,185 | 24.7 | 949 | 33.1 | 171,134 | 24.7 |
|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 535,472 | 678 | 536,150 | 566,786 | 308 | 567,094 | 604,435 | 219 | 604,653 | 37,649 | 6.6 | -89 | -28.9 | 37,559 | 6.6 |
| Federal Financing Bank | 0 | 14,000 | 14,000 | 0 | 11,921 | 11,921 | 0 | 10,239 | 10,239 | 0 | - | -1,682 | -14.1 | -1,682 | -14.1 |
| 비시장성: | 598,655 | 4,246,080 | 4,844,734 | 562,957 | 4,382,501 | 4,945,458 | 548,821 | 4,577,286 | 5,126,106 | -14,136 | -2.5 | 194,785 | 4.4 | 180,648 | 3.7 |
| Domestic Series | 29,995 | 0 | 29,995 | 29,995 | 0 | 29,995 | 29,995 | 0 | 29,995 | 0 | 0.0 | 0 | - | 0 | 0.0 |
| Foreign Series | 3,986 | 0 | 3,986 | 4,386 | 0 | 4,386 | 4,186 | 0 | 4,186 | -200 | -4.6 | 0 | - | -200 | -4.6 |
| R.E.A. Series | 1 | 0 | 1 | 1 | 0 | 1 | - | - | - | - | - | - | - | - | - |
| State and Local overmment Series | 254,564 | 0 | 254,564 | 215,785 | 0 | 215,785 | 195,009 | 0 | 195,009 | -20,776 | -9.6 | 0 | - | -20,776 | -9.6 |
|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 194,236 | 0 | 194,236 | 192,172 | 0 | 192,172 | 188,674 | 0 | 188,674 | -3,498 | -1.8 | 0 | - | -3,498 | -1.8 |
| Government Account Series | 112,814 | 4,245,589 | 4,358,403 | 119,127 | 4,382,008 | 4,501,135 | 129,594 | 4,576,793 | 4,706,387 | 10,467 | 8.8 | 194,785 | 4.4 | 205,252 | 4.6 |
| Hope Bonds | 0 | 491 | 491 | 0 | 492 | 492 | 0 | 493 | 493 | 0 | - | 1 | 0.2 | 1 | 0.2 |
| Other | 3,058 | 0 | 3,058 | 1,492 | 0 | 1,492 | 1,363 | 0 | 1,363 | -129 | -8.6 | 0 | - | -129 | -8.6 |
| 합계 | 6,302,794 | 4,271,301 | 10,574,094 | 7,487,887 | 4,405,204 | 11,893,091 | 9,069,879 | 4,598,946 | 13,688,825 | 1,581,992 | 21.1 | 193,742 | 4.4 | 1,775,734 | 14.9 |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8.10월, 2009.10월, 2010.10월

II

일본 (2010년 8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일반회계) 2010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50억엔(4.3%)가량 개선
 - 재정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2조 9,310억엔(12.0%) 감소하였지만 재정지출이 이보다 큰 폭(약 3조 5,360억엔, 9.1%)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적자 수준이 개선
- (특별회계) 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증가 규모는 약 15조 1,570억엔 수준
 - 전년 동기에 비해 재정수입은 약 12조 5,310억엔(8.0%)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정지출은 2조 6,260억엔(1.6%)이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 구분 | FY2008-09 | | FY2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FY2010 예산액 |
|---------------|-----------|---------------------------|----------|---------------------------|-----------|---------------------------|----------|--------|---------------|
| | 8월 | 누계 (2008.4~ 2008.8) | 8월 | 누계 (2009.4~ 2009.8) | 8월 | 누계 (2010.4~ 2010.8) | 누계 기준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재정수입 | 1,849 | 17,512 | 6,882 | 24,526 | 4,365 | 21,595 | -2,931 | -12.0 | 102,558 |
| 재정지출 | 3,158 | 29,409 | 5,979 | 38,717 | 3,899 | 35,181 | -3,536 | -9.1 | 107,069 |
| 수지 | -1,309 | -11,897 | 902 | -14,191 | 466 | -13,586 | 605 | -4.3 | -4,511 |
| 〈특별회계〉 | | | | | | | | | |
| 재정수입 | 24,989 | 175,359 | 23,436 | 157,247 | 28,260 | 169,779 | 12,531 | 8.0 | 381,673 |
| 재정지출 | 28,749 | 177,968 | 26,853 | 168,477 | 27,642 | 165,851 | -2,626 | -1.6 | 378,566 |
| 수지 | -3,760 | -2,610 | -3,417 | -11,229 | 619 | 3,928 | 15,157 | -135.0 | 3,107 |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 8월 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8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0% 감소한 21조 5,950억엔 수준
 - 이는 정부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3조 4,950억엔(18.3%) 감소한 것이 주요인
 -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조세수입 중 소득세는 '09년에 비해 870억엔(6.7%) 감소하여 1조 2,160억엔 기록
 - 반면 기타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690억엔(23.6%) 가량 큰 폭으로 상승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FY2010 예산액 |
|--------------------|-----------|---------------------------|-----------|---------------------------|-----------|---------------------------|----------|-------|---------------|
| | 8월 | 누계 (2008.4~ 2008.8) | 8월 | 누계 (2009.4~ 2009.8) | 8월 | 누계 (2010.4~ 2010.8) | 누계 기준 | % | |
| 조세 및 인지수입 | 1,787 | 2,697 | 1,620 | 2,506 | 1,607 | 2,408 | -98 | -3.9 | 37,396 |
| 조세 | 1,705 | 2,378 | 1,537 | 2,199 | 1,530 | 2,114 | -86 | -3.9 | 36,372 |
| 소득세 | 928 | 1,385 | 828 | 1,303 | 822 | 1,216 | -87 | -6.7 | 12,614 |
| 법인세 | 124 | 124 | - | - | 5 | 5 | - | - | 5,953 |
| 상속세 | 107 | 146 | 101 | 126 | 106 | 131 | 5 | 4.2 | 1,271 |
| 소비세 | - | - | - | - | - | - | - | - | 9,638 |
| 주세 | 119 | 126 | 125 | 133 | 123 | 131 | -2 | -1.1 | 1,383 |
| 담배세 | 71 | 138 | 67 | 137 | 62 | 127 | -10 | -7.4 | 827 |
| 휘발류세 | 160 | 161 | 231 | 231 | 237 | 238 | 7 | 2.9 | 2,576 |
| 석유가스세 | 1 | 1 | 1 | 1 | 1 | 1 | 0 | -0.7 | 12 |
| 항공기연료세 | 7 | 14 | 7 | 13 | 6 | 12 | -1 | -4.1 | 77 |
| 석유석탄세 | 40 | 40 | 44 | 44 | 41 | 41 | -2 | -5.4 | 480 |
| 전원개발촉진세 | 27 | 55 | 25 | 51 | 27 | 55 | 4 | 8.0 | 330 |
| 자동차증량세 | 52 | 52 | 49 | 49 | 37 | 37 | -12 | -25.1 | 447 |
| 관세 | 69 | 135 | 59 | 109 | 62 | 116 | 8 | 6.9 | 756 |
| 톤세 | 1 | 2 | 1 | 2 | 1 | 2 | 0 | 17.3 | 8 |
| 토지세 | 0 | 0 | 0 | 0 | 0 | 0 | 0 | -84.6 | - |
| 구세(旧税) | 0 | 0 | 0 | 0 | 0 | 0 | 0 | -72.8 | - |
| 인지수입 | 81 | 318 | 83 | 307 | 77 | 294 | -13 | -4.2 | 1,024 |
| 국영기업수입 | 1 | 7 | 1 | 6 | 1 | 6 | 0 | -7.4 | 16 |
| 정부자산매각수입 | 20 | 152 | 12 | 48 | 14 | 41 | -6 | -12.8 | 826 |
| 국유재산매각 | 9 | 62 | 3 | 29 | 5 | 19 | -10 | -34.9 | 129 |
| 회수금 등 수입 | 11 | 90 | 9 | 19 | 9 | 23 | 4 | 21.5 | 698 |
| 기타수입 | 41 | 2,309 | 74 | 2,829 | 113 | 3,498 | 669 | 23.6 | 9,758 |
| 국유재산이용수입 | 4 | 35 | 4 | 40 | 3 | 42 | 2 | 5.4 | 74 |
| 납부금 | 20 | 240 | 26 | 199 | 36 | 240 | 40 | 20.2 | 632 |
| 기타 | 18 | 2,033 | 45 | 2,590 | 73 | 3,217 | 627 | 24.2 | 9,052 |
| 정부채권발행(公債金) | - | 12,348 | 5,173 | 19,137 | 2,630 | 15,642 | -3,495 | -18.3 | 44,303 |
| 전년도 잉여금수입 | - | - | - | - | - | - | - | - | - |
| 총계 | 1,849 | 17,512 | 6,882 | 24,526 | 4,365 | 21,595 | -2,931 | -12.0 | 92,299 |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 5월 말

SECTION 3 >>

- 2010년 8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약 12조 6,480억엔(8.0%) 증가한 169조 7,790억엔을 기록
 - 이는 국채정리기금과 연금부문에서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 국채정리기금과 연금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조 1,960억엔(12.6%), 3조 7,130억엔(11.3%) 증가한 109조 130억엔, 36조 6,400억엔을 기록
 - 전년동기 대비 재정투융자 수입이 약 4조엔(37.3%), 사회자본정비사업 수입이 7,540억엔(25.9%)가량 크게 감소하였지만 수입 증가분을 상쇄하지는 못함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 구분 | FY2008-09 | | FY2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FY2010 예산액 |
|--------------------------|---------------|---------------------------|---------------|---------------------------|---------------|---------------------------|---------------|------------|---------------|
| | 8월 | 누계 (2008.4~ 2008.8) | 8월 | 누계 (2009.4~ 2009.8) | 8월 | 누계 (2010.4~ 2010.8) | 누계 기준 | % | |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 74 | 8,548 | 87 | 8,643 | 332 | 9,873 | 1,230 | 14.2 | 87 |
| 등기 | 8 | 90 | 8 | 83 | 7 | 73 | -10 | -12.3 | 8 |
| 지진재보험 | 4 | 22 | 4 | 22 | 4 | 23 | 1 | 2.9 | 4 |
| 국채정리기금 | 14,046 | 113,087 | 10,686 | 96,818 | 14,619 | 109,013 | 12,196 | 12.6 | 10,686 |
| 외국환자금 | 93 | 417 | 29 | 167 | 0 | 499 | 332 | 198.7 | 29 |
| 재정투융자 ¹⁾ | 2,757 | 14,214 | 1,768 | 10,914 | 669 | 6,846 | -4,068 | -37.3 | 1,768 |
| 에너지대책 | 232 | 774 | 242 | 686 | 235 | 643 | -43 | -6.2 | 242 |
|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 10 | 77 | 15 | 90 | - | - | - | - | - |
| 노동보험 | 233 | 3,445 | 160 | 2,647 | 85 | 2,836 | 189 | 7.2 | 160 |
| 선원보험 ²⁾ | 2 | 23 | 6 | 27 | - | - | - | - | - |
| 연금 | 6,284 | 30,080 | 9,353 | 32,926 | 11,941 | 36,640 | 3,713 | 11.3 | 45 |
| 식량안정공급 | 75 | 729 | 45 | 652 | 38 | 573 | -78 | -12.0 | 2 |
| 농업공제재보험 | 4 | 17 | 2 | 17 | 3 | 19 | 2 | 14.6 | 0 |
| 삼림보험 | 0 | 10 | 0 | 9 | 0 | 1 | -8 | -84.0 | 71 |
| 국유임야사업 | 58 | 188 | 71 | 190 | 82 | 194 | 4 | 1.9 | 0 |
|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 0 | 6 | 1 | 6 | 1 | 7 | 0 | 2.0 | 9 |
| 무역재보험 | 2 | 165 | 0 | 120 | 3 | 66 | -54 | -44.9 | 947 |
| 특허 | 11 | 216 | 9 | 227 | 10 | 227 | 0 | 0.1 | 4 |
| 사회자본정비사업 | 1,092 | 3,142 | 947 | 2,908 | 225 | 2,154 | -754 | -25.9 | 9 |
| 자동차안전 | 5 | 108 | 4 | 96 | 6 | 91 | -4 | -4.6 | 7 |
| 계 | 24,989 | 175,359 | 23,436 | 157,247 | 28,260 | 169,779 | 12,648 | 8.0 | 14,077 |

주: 1) 산업투자와 재정투융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 8월 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0년 8월(누계) 기준 재정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5,360억엔 (9.1%) 가량 감소한 35조 1,810억엔 수준
 - 이는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에서의 지출 감소가 주요인이고 경제산업성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출이 감소
 - 전년동기 대비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의 지출은 각각 1조 1,560억엔(10.9%), 1조 300억엔(42.0%) 감소하였고, 경제산업성은 6,620억엔(68.3%)가량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후생노동성은 지난해에 비해 지출이 2,300억엔(1.9%) 증가한 12조 4,010억엔을 기록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FY2010 예산액 |
|-----------------|--------------|---------------------------|--------------|---------------------------|--------------|---------------------------|---------------|-------------|---------------|
| | 8월 | 누계 (2008.4~ 2008.8) | 8월 | 누계 (2009.4~ 2009.8) | 8월 | 누계 (2010.4~ 2010.8) | 누계 기준 | % | |
| 황실비 | 0.2 | 1 | 0.2 | 1 | 0.2 | 1.1 | 0.1 | 4.7 | 7 |
| 국회 | 7 | 46 | 6 | 44 | 8 | 50 | 6 | 13.8 | 163 |
| 재판소 | 21 | 119 | 21 | 117 | 21 | 120 | 4 | 3.3 | 338 |
| 회계검사원 | 1 | 6 | 1 | 6 | | 6 | 0.1 | 1.5 | 18 |
| 내각 | 3 | 15 | 3 | 13 | 3 | 27 | 13 | 100.4 | 110 |
| 내각부 | 29 | 163 | 28 | 150 | 23 | 148 | -2 | -1.3 | 599 |
| 총무성 | 30 | 7,766 | 71 | 10,601 | 21 | 9,445 | -1,156 | -10.9 | 19,897 |
| 법무성 | 39 | 240 | 37 | 239 | 41 | 253 | 14 | 5.9 | 758 |
| 외무성 | 31 | 284 | 27 | 296 | 24 | 284 | -12 | -4.0 | 718 |
| 재무성 | 205 | 5,066 | 1,481 | 6,492 | 104 | 6,027 | -464 | -7.2 | 23,876 |
| 문부과학성 | 181 | 2,034 | 209 | 2,093 | 238 | 2,225 | 132 | 6.3 | 6,167 |
| 후생노동성 | 2,035 | 8,812 | 2,702 | 12,171 | 2,808 | 12,401 | 230 | 1.9 | 27,720 |
| 농림수산성 | 81 | 759 | 450 | 1,062 | 124 | 616 | -447 | -42.1 | 2,895 |
| 경제산업성 | 9 | 168 | 371 | 969 | 29 | 307 | -662 | -68.3 | 1,226 |
| 국토교통성 | 164 | 2,099 | 255 | 2,454 | 166 | 1,424 | -1,030 | -42.0 | 6,594 |
| 환경성 | 3 | 25 | 4 | 150 | 3 | 41 | -109 | -72.5 | 252 |
| 방위성 | 320 | 1,808 | 314 | 1,858 | 285 | 1,805 | -53 | -2.8 | 4,901 |
| 재정지출(합계) | 3,158 | 29,409 | 5,979 | 38,717 | 3,899 | 35,181 | -3,536 | -9.1 | 96,240 |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 8월 말

SECTION 3 >>

- 특별회계 2010년 8월 기준 지출(누계)은 전년동기 대비 2조 6,260억엔(1.6%) 감소하여 165조 8,510억엔을 기록
 - 재정투융자 부문에서 지출이 '09년에 비해 약 4조엔(38.5%)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이외에도 무역재보험, 자동차안전 부문에서의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72.7%(40억엔), 17.1%(30억엔)가량 크게 감소
 - 일본의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1조 2,240억엔(3.6%)이 증가한 35조 6,660억엔의 규모를 보임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 구분 | FY2008-09 | | FY2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FY2010 예산액 |
|--------------------------|---------------|---------------------------|---------------|---------------------------|---------------|---------------------------|---------------|-------------|---------------|
| | 8월 | 누계 (2008.4~ 2008.5) | 8월 | 누계 (2009.4~ 2009.5) | 8월 | 누계 (2010.4~ 2010.5) | 누계 기준 | % | |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 3,863 | 39,111 | 3,866 | 39,637 | 4,095 | 40,503 | 865 | 2.2 | 3,866 |
| 등기 | 9 | 45 | 10 | 48 | 11 | 47 | -1 | -2.0 | 10 |
| 지진재보험 | 0 | 0 | 0 | 0 | 0 | 0 | 0 | 4.9 | 0 |
| 국채정리기금 | 11,170 | 85,132 | 9,625 | 77,167 | 11,234 | 76,642 | -525 | -0.7 | 9,625 |
| 외국환자금 | 47 | 271 | 15 | 93 | 11 | 407 | 315 | 340.1 | 15 |
| 재정투융자 ¹⁾ | 2,456 | 13,304 | 1,676 | 10,405 | 584 | 6,397 | -4,007 | -38.5 | 1,676 |
| 에너지대책 | 243 | 1,676 | 273 | 1,642 | 238 | 1,570 | -72 | -4.4 | 273 |
|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 9 | 44 | 10 | 47 | - | - | - | - | - |
| 노동보험 | 464 | 2,680 | 508 | 2,844 | 333 | 2,654 | -190 | -6.7 | 508 |
| 선원보험 ²⁾ | 5 | 21 | 5 | 21 | - | - | - | - | - |
| 연금 | 10,095 | 33,441 | 10,502 | 34,442 | 10,764 | 35,666 | 1,224 | 3.6 | 10,502 |
| 식량안정공급 | 119 | 1,089 | 95 | 852 | 109 | 766 | -86 | -10.1 | 95 |
| 농업공제재보험 | 3 | 14 | 2 | 14 | 3 | 15 | 1 | 3.7 | 2 |
| 삼림보험 | 0.14 | 1.23 | 0.04 | 0.41 | 0.03 | 0.32 | -0.09 | -21.5 | 0.04 |
| 국유임야사업 | 67 | 198 | 79 | 208 | 87 | 208 | 0 | 0.0 | 79 |
|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 1 | 6 | 1 | 4 | 1 | 5 | 1 | 12.9 | 1 |
| 무역재보험 | 1 | 1 | 1 | 6 | 0 | 2 | -4 | -72.7 | 1 |
| 특허 | 6 | 32 | 7 | 35 | 7 | 34 | -1 | -2.0 | 7 |
| 사회자본정비사업 | 190 | 879 | 174 | 993 | 164 | 920 | -73 | -7.3 | 174 |
| 자동차안전 | 3 | 25 | 2 | 18 | 2 | 15 | -3 | -17.1 | 2 |
| 계 | 28,749 | 177,968 | 26,853 | 168,477 | 27,642 | 165,851 | -2,626 | -1.6 | 26,838 |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년도 8월 말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6월 30일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약 904조엔으로 '09년 6월에 비해 5.1% 증가한 수준
 - 국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49조엔(7.2%)이 증가한 733조 8,080억엔 규모
 - 정부채권이 51조엔(9.3%)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 장기채무 증가액이 약 24조엔 (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3조 2,210억엔(2.5%) 감소
 -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6,490억엔(2.9%) 감소한 약 55조엔 수준
 - 재정어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조 8,970억엔(3.3%) 감소한 115조 2,090억엔 규모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6월 30일 기준)

(단위: 십억 엔)

| 구분 | 2008 | 2009 | 2010 | 전년대비 증감 | |
|------------------------------|----------------|----------------|----------------|---------------|-------------|
| | 6월 | 6월 | 6월 | 증감액 | % |
| 국채 | 685,213 | 684,441 | 733,808 | 49,368 | 7.2 |
| 정부채권 | 545,009 | 554,424 | 605,752 | 51,328 | 9.3 |
| 장기(10년 이상) | 355,441 | 358,499 | 382,831 | 24,332 | 6.8 |
| 중기(2~5년) | 155,827 | 164,048 | 179,844 | 15,796 | 9.6 |
| 단기(1년 미만) | 33,742 | 31,877 | 43,076 | 11,200 | 35.1 |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 137,348 | 127,040 | 123,819 | -3,221 | -2.5 |
| 장기(10년 이상) | 91,362 | 95,323 | 101,172 | 5,849 | 6.1 |
| 중기(2~5년) | 45,986 | 31,717 | 22,646 | -9,070 | -28.6 |
| 교부채권(Subsidy bond) | 526 | 459 | 382 | -77 | -16.9 |
| 출자채권 등 | 2,299 | 1,792 | 1,781 | -12 | -0.6 |
| 기타 채권 ¹⁾ | 32 | 725 | 2,075 | 1,350 | 186.1 |
| 차입금 | 56,488 | 56,709 | 55,060 | -1,649 | -2.9 |
| 장기(1년 초과) | 21,574 | 21,969 | 20,594 | -1,375 | -6.3 |
| 단기(1년 이하) | 34,914 | 34,740 | 34,466 | -274 | -0.8 |
| 재정어음(Financing Bills) | 106,741 | 119,106 | 115,209 | -3,897 | -3.3 |
| 총계 | 848,442 | 860,256 | 904,077 | 43,822 | 5.1 |
| 정부보증채무 | 46,984 | 45,677 | 45,979 | 302 | 0.7 |

주: 1) 기타 채권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함. 2008년은 석유채권승계채권, 2009년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
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20, 21, 22 각 년도 6.30 기준

Ⅲ

영국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9.30 기준 공공부문의 순부채규모는 8,429억파운드로, GDP의 57.2%를 기록
 - 작년동기 부채규모에 비해 22.6% 증가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부채는 9,520억파운드, GDP의 64.6%임
 - 2010년 9월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162억파운드 규모로 전년 9월보다 약 7억파운드 증가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차입은 156억파운드
 - 공공부문 FY2010-11 4~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584억파운드
 - 2010년 9월 재정적자는 132억파운드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억파운드 증가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 4~9월 | 9월 | 4~9월 | 9월 | 4~9월 | 4~9월 누계기준 | % |
| 재정수지 | -6.8 | -23.7 | -11.7 | -62.2 | -13.2 | -58.4 | 3.8 | -6.1 |
| 순차입 | 12.4 | 37.3 | 15.5 | 77.4 | 16.2 | 73.5 | -3.8 | -4.9 |
| 순부채 | 566.0 | | 687.5 | | 842.9 | | 155.4 | 22.6 |
| GDP 대비 순부채 | 39.5 | | 49.0 | | 57.2 | | 8.2 | |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9)';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0.15)

□ 중앙정부의 FY2010-11 4~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624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13억파운드(2.1%) 감소

- 이는 재정수입 증가율(9.2%)이 재정지출 증가율(6.8%)보다 높기 때문
- 순투자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7억파운드(22.3%) 감소한 163억파운드를 기록
- 순차입 규모도 787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7.1% 감소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 파운드)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 4~9월 | 9월 | 4~9월 | 9월 | 4~9월 | 4~9월 누계기준 | % |
| 재정수입¹⁾ | 38.8 | 244.2 | 35.3 | 221.0 | 38.0 | 241.5 | 20.4 | 9.2 |
| 생산물과세(VAT포함) | 14.4 | 88.7 | 14.0 | 82.0 | 15.3 | 95.4 | 13.4 | 16.4 |
| 소득세 및 재산세 | 13.6 | 92.5 | 11.1 | 79.4 | 12.3 | 85.7 | 6.2 | 7.9 |
| 기타과세 | 1.1 | 6.6 | 1.2 | 6.2 | 1.1 | 6.4 | 0.2 | 3.1 |
| 사회보장기여금 | 8.0 | 47.4 | 7.6 | 45.7 | 7.9 | 46.9 | 1.2 | 2.6 |
| 이자 및 배당금 | 1.0 | 5.0 | 0.7 | 3.5 | 0.7 | 2.7 | -0.8 | -21.5 |
| 기타 재정수입 | 0.7 | 4.0 | 0.7 | 4.2 | 0.7 | 4.3 | 0.1 | 2.8 |
| 재정지출 | 43.6 | 266.1 | 46.0 | 281.3 | 50.7 | 300.3 | 19.0 | 6.8 |
| 이자 | 1.3 | 16.0 | 0.9 | 12.0 | 2.3 | 21.6 | 9.5 | 79.3 |
| 순 사회복지급여 | 12.5 | 74.7 | 13.8 | 82.4 | 14.5 | 85.2 | 2.8 | 3.4 |
| 기타 재정지출 | 29.8 | 175.4 | 31.3 | 186.8 | 33.8 | 21.6 | -165.2 | -88.4 |
| 감가상각 | -0.5 | -3.3 | -0.6 | -3.4 | -0.6 | -3.6 | -0.1 | 3.9 |
| 재정수지 | -5.3 | -25.1 | -11.3 | -63.7 | -13.3 | -62.4 | 1.3 | -2.1 |
| 투자 ²⁾ | 6.5 | 18.6 | 4.6 | 24.4 | 4.6 | 19.9 | -4.5 | -18.6 |
| less Depreciation | 0.5 | 3.3 | 0.6 | 3.4 | 0.6 | 3.6 | 0.1 | 3.9 |
| 순투자 | 6.0 | 15.3 | 4.0 | 21.0 | 4.0 | 16.3 | -4.7 | -22.3 |
| 순차입 | 11.3 | 40.4 | 15.3 | 84.7 | 17.2 | 78.7 | -6.0 | -7.1 |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 = 자본형성 + 토지순취득 + 순투자보조금 - 자본자산매각

투자 FY2007-08은 ONS에 항목 없음. '투자 = 순투자+less Depreciation'으로 산출.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9)';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0.15)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4~9월까지 누적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에 비해 204억파운드(9.2%) 증가
 - 전 분기에 이어 부가가치세 인하 종료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
 - FY2008-09 4~9월 부가가치세 수입보다는 약 1억파운드 증가
 - 반면,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전년대비 8억파운드(21.5%) 감소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 4~9월 | 9월 | 4~9월 | 9월 | 4~9월 | 4~9월 누계기준 | % |
| 생산물과세 | 14.4 | 88.7 | 14.0 | 82.0 | 15.3 | 95.4 | 13.4 | 16.4 |
| 부가가치세 | 7.6 | 46.8 | 6.7 | 39.3 | 7.9 | 46.9 | 7.6 | 19.4 |
| 소득세 및 재산세 | 13.6 | 92.5 | 11.1 | 79.4 | 12.3 | 85.7 | 6.2 | 7.9 |
| 소득세 ¹⁾ | 10.5 | 69.0 | 9.7 | 63.9 | 9.9 | 65.8 | 1.9 | 3.0 |
| 법인세 등 ²⁾ | 3.1 | 23.5 | 1.3 | 15.5 | 2.4 | 19.8 | 4.3 | 27.8 |
| 기타 과세(tax) | 1.1 | 6.6 | 1.2 | 6.2 | 1.1 | 6.4 | 0.2 | 3.1 |
|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 8.0 | 47.4 | 7.6 | 45.7 | 7.9 | 46.9 | 1.2 | 2.6 |
| 이자 및 배당금 | 1.0 | 5.0 | 0.7 | 3.5 | 0.7 | 2.7 | -0.8 | -21.5 |
| 기타 재정수입(receipts) | 0.7 | 4.0 | 0.7 | 4.2 | 0.7 | 4.3 | 0.1 | 2.8 |
| 재정수입 | 38.8 | 244.2 | 35.3 | 221.0 | 38.0 | 241.5 | 20.4 | 9.2 |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9)';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0.15)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11 4~9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3,003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3.4%(28억파운드) 증가
- 이자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95억파운드(79.3%)만큼 크게 증가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 4~9월 | 9월 | 4~9월 | 9월 | 4~9월 | 4~9월 누계기준 | % |
| 이자 | 1.3 | 16.0 | 0.9 | 12.0 | 2.3 | 21.6 | 9.5 | 79.3 |
| 순 사회복지급여 | 12.5 | 74.7 | 13.8 | 82.4 | 14.5 | 85.2 | 2.8 | 3.4 |
| 기타 재정지출 | 29.8 | 175.4 | 31.3 | 186.8 | 33.8 | 21.6 | -165.2 | -88.4 |
| 재정지출 | 43.6 | 266.1 | 46.0 | 281.3 | 50.7 | 300.3 | 19.0 | 6.8 |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9)';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0.15)

4. 국가채무 동향

- FY2010-11 4~9월까지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735억파운드
 - 중앙정부의 순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7.1% 감소
 -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순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59.5%, 94.5%만큼 큰 폭으로 감소

- 2010년 9월 말,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전년에 비해 8.2%p 증가하여 57.2% 기록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 |
|-------------|------------------|-----------|-------------|-------------|-------------|-------------|-------------|-------------|-------------|-------------|
| | 9월 | 4~9월 | 9월 | 4~9월 | 9월 | 4~9월 | 4~9월 누계기준 | % | | |
| 재정수지 | -6.8 | -23.7 | -11.7 | -62.2 | -13.2 | -58.4 | 3.8 | -6.1 | | |
| 순투자 | 5.6 | 13.6 | 3.7 | 15.2 | 3.0 | 15.2 | -0.1 | -0.4 | | |
| 순 차 입 | 공공부문(A+B) | | 12.4 | 37.3 | 15.5 | 77.4 | 16.2 | 73.5 | -3.8 | -4.9 |
| | 정부 (A) | 중앙정부 | 11.3 | 40.4 | 15.3 | 84.7 | 17.2 | 78.7 | -6.0 | -7.1 |
| | | 지방정부 | 0.6 | -2.4 | 0.1 | -3.1 | -1.2 | -4.9 | -1.8 | 59.5 |
| | | 합계 | 11.8 | 38.0 | 15.4 | 81.6 | 16.1 | 73.8 | -7.8 | -9.6 |
| | 공기업(B) | 0.5 | -0.7 | 0.1 | -4.2 | 0.1 | -0.2 | 4.0 | -94.5 | |
| 순국가채무 | 566.0 | | 687.5 | | 842.9 | | 155.4 | | | |
| GDP 대비 국가채무 | 39.5 | | 49.0 | | 57.2 | | 8.2 | | | |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9)';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10.15)

IV

프랑스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재정수지는 1,242억유로 적자로 작년동기 대비 1.1% 개선
 - 일반회계 재정지출(누적)은 전년 대비 17.5%가 증가하였고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
 - 2010년 재정수지는 약 1,520억유로 적자를 전망하며, 2011년 재정수지는 이보다 40% 감소한 920억유로로 전망(Ⅱ. 주요국의 재정동향 참고)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1.2%, 2008년(9월 누적) 대비 42.7%만큼 크게 개선되었음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Md€))

| 구분 | 2008 | | 2009 ²⁾ | | 2010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누계 기준 | % |
| 일반회계 재정수지 | -11.7 | -34.3 | -2.2 | -94.2 | 5.2 | -105.8 | -11.6 | 12.2 |
|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 -25.4 | 255.9 | -26.0 | 263.9 | -40.0 | 310.1 | 46.2 | 17.5 |
|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 -37.1 | 221.6 | -28.1 | 169.7 | -34.9 | 204.4 | 34.7 | 20.5 |
| 특별회계 재정수지 | 0.7 | -22.0 | 0.4 | -31.4 | -3.1 | -18.4 | 13 | -41.2 |
|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 0.3 | -22.8 | -0.4 | -25.5 | -2.7 | -10.6 | 14.9 | -58.4 |
| 재정수지 | -11.0 | -56.3 | -1.8 | -125.6 | 2.0 | -124.2 | 1.4 | -1.1 |

주: 1) 9월 수치는 (9월 누계 - 8월 누계)로 산출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09년 통계는 2008년 통계에서 제외수입으로 분류되었던 세입을 재분류하였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년도 8, 9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1월~9월까지(누계) 세입은 전년 대비 321억유로(20.5%) 증가한 1,889억유로
 - 2009년 경기부양책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 2009년 기업지원을 위한 환급확대정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일정수준 회복
 - 법인세는 2009년 9월(누적)에 비해 106.4% 크게 증가
 -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9.6% 증가
 - 기타 세수는 227억유로로 전년 대비 122.4% 증가

〈표 3-IV-2〉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Md€))

| 구분 | 2008 | | 2009 | | 2010 | | 전년대비 증감 | | 2010 전망치 |
|--------------------|------------------|--------------|------------------|--------------|------------------|--------------|-------------|-------------|--------------|
|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누계 기준 | % | |
| 세수 | 35.4 | 204.7 | 26.7 | 156.8 | 33.3 | 188.9 | 32.1 | 20.5 | 255.3 |
| 소득세 | 12.6 | 42.6 | 10.5 | 39.5 | 10.1 | 39.9 | 0.4 | 1.0 | 48.9 |
| 법인세 | 11.4 | 38.8 | 7.7 | 10.6 | 8.5 | 21.9 | 11.3 | 106.4 | 34.9 |
| TIPP ²⁾ | 1.37 | 12.1 | 1.3 | 11.0 | 1.3 | 10.6 | -0.3 | -2.8 | 14.5 |
| 부가가치세 | 11.1 | 97.7 | 9.3 | 85.6 | 9.9 | 93.8 | 8.2 | 9.6 | 127.4 |
| 기타 | -1.0 | 13.4 | -2.2 | 10.2 | 3.5 | 22.7 | 12.5 | 122.4 | 29.5 |
| 세외수입 | 1.5 | 15.0 | 1.4 | 11.3 | 1.3 | 13.4 | 2.0 | 18.0 | 16.1 |
| 소계 | 37.0 | 219.6 | 28.0 | 168.1 | 34.6 | 202.2 | 34.1 | 20.3 | 271.3 |
| 기타 수입 | 0.1 | 2.0 | 0.1 | 1.6 | 0.3 | 2.15 | 0.6 | 38.0 | 3.1 |
| 총 재정수입 | 37.1 | 221.6 | 28.1 | 169.7 | 34.9 | 204.4 | 34.7 | 20.5 | 274.5 |

주: 1) 9월 수치는 (9월 누계 - 8월 누계)로 산출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년도 8, 9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1월~9월 누적 세출은 전년 대비 25.6억유로(12.4%) 증가한 2327억유로 기록
 - 운용비와 국채이자 각각 306억유로 (9.4%), 264억유로(9.2%)로 증가
 - 반면, 투자비는 73억유로(29.5%), 재정운용비용이 2억유로(40.8%)로 감소

- 보조금(PSR, Prélèvements Sur Recettes)은 사업소세 개편 보상이 추가되면서 2010년 9월(누계) 774억유로로 전년 대비 36.4% 증가
 - 2010년 1월부터 사업소세 개편에 따른 보상으로 매월 약 27억유로 지급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 (Md€))

| 구분 | 2008 | | 2009 | | 2010 | | 전년대비 증감 | |
|---------------------|------------------|--------------|------------------|--------------|------------------|--------------|-------------|-------------|
|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9월 ¹⁾ | 누계 (1-9월) | 누계 기준 | % |
| 세출 | 20.0 | 204.9 | 20.4 | 207.1 | 31.4 | 232.7 | 25.6 | 12.4 |
| 예비비 | 0.0 | 1.0 | 0.0 | 1.0 | 0.0 | 1.0 | 0.0 | 0.0 |
| 인건비 | 9.7 | 89.6 | 9.2 | 89.3 | 10.0 | 88.5 | -0.8 | -0.9 |
| 운용비 | 1.7 | 24.7 | 2.0 | 28.0 | 2.3 | 30.6 | 2.6 | 9.4 |
| 국채이자 | 1.6 | 31.1 | 1.0 | 24.1 | 0.7 | 26.4 | 2.2 | 9.2 |
| 투자비 | 1.0 | 9.4 | 0.8 | 10.4 | 1.1 | 7.3 | -3.1 | -29.5 |
| 이전비 ²⁾ | 6.0 | 48.7 | 7.3 | 54.0 | 7.5 | 54.5 | 0.5 | 1.0 |
| 재정운용비용 | 0.0 | 0.3 | 0.1 | 0.3 | 0.0 | 0.2 | -0.1 | -40.8 |
|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출 | 0.0 | - | 0.0 | - | 9.8 | 24.2 | - | - |
| 보조금(PSR) | 5.4 | 51.0 | 5.6 | 56.8 | 8.7 | 77.4 | 20.6 | 36.4 |
| 지방정부보조금 | 4.3 | 38.4 | 4.4 | 43.0 | 4.4 | 39.9 | -3.1 | -7.1 |
| 사업소세 개편(폐지)에 따른 보상금 | 0.0 | - | 0.0 | - | 2.6 | 23.8 | - | - |
| EU보조금 | 1.1 | 12.6 | 1.1 | 13.8 | 1.6 | 13.6 | -0.1 | -0.9 |
| 총재정지출 | 25.4 | 255.9 | 26.0 | 263.9 | 40.0 | 310.1 | 46.2 | 17.5 |

주: 1) 9월 수치는 (9월 누계 - 8월 누계)로 산출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3) 표에서 0은 단위 미만 값, -는 데이터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년도 8, 9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채는 1조 2,230억유로로 전년 대비 7.8% 증가
 - 1년 미만 단기채권이 전년 대비 50억유로(2.4%) 감소한 반면에 OAT/Bons 등 장기채권은 860억유로(12%) 증가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단위: 십억유로 (Md€))

| 구분 | 2008 | 2009 | 2010 | 전년대비 증감 | |
|-------------------------------------|------------|------------|------------|---------|------|
| | 2008.9.30. | 2009.9.30. | 2010.9.30. | 증감액 | % |
| 중앙정부국채 | 988 | 1,134 | 1,223 | 89 | 7.8 |
| OAT/Bons : 장기채권(10-50년) | 683 | 715 | 801 | 86 | 12.0 |
| BTAN/Treasury Notes : 중기채권(2-5년) | 187 | 209 | 215 | 6 | 2.9 |
| BTF/Treasury Bills : 단기채권(1년 미만) | 118 | 211 | 206 | -5 | -2.4 |
| 평균만기기간 | 7년4일 | 6년242일 | 7년8일 | | |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No.233) 2008~2010 각년도 9월호

V 독일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 수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9월(누계) 재정적자는 494억유로로 전년 대비 61.4%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6% 감소,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
 - 연말 기준 신규 차입을 500억~550억유로로 예상

<표 3-V-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 구분 | FY2008 | | FY2009 | | FY2010 | | 전년대비증감 (누계기준) | | FY2010 (추정) |
|------|--------|------------------|--------|------------------|--------|------------------|------------------|------|----------------|
| | 9월 | 누계 ¹⁾ | 9월 | 누계 ¹⁾ | 9월 | 누계 ¹⁾ | 변동분 | % | |
| 재정지출 | 20.1 | 216.8 | 22.2 | 218.6 | 20.8 | 230.7 | 12.1 | 5.5 | 319.5 |
| 재정수입 | 21.7 | 192.2 | 21.4 | 188.0 | 20.6 | 181.2 | -6.8 | -3.6 | 238.9 |
| 세수 | 20.7 | 171.1 | 20.2 | 164.5 | 19.4 | 158.8 | -5.7 | -3.5 | 211.9 |
| 재정수지 | 1.6 | -24.5 | -0.9 | -30.6 | -0.2 | -49.4 | -18.8 | 61.4 | -80.6 |

주: 1) 각 해 1월~9월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8~9월, 2009.8~9월, 2010.8~9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1월~9월까지 누계 연방정부 총재정수입은 약 1,812억유로로 전년보다 약 68억 유로(3.6%) 감소
 - 9월(누계)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약 1,588억유로로 전년 대비 3.4%(57억유로) 감소
 - 9월(누계) 기타수입은 약 224억유로로 전년 대비 4.7%(11억유로) 감소

〈표 3-V-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 구분 | FY2008 | | FY2009 | | FY2010 | | 전년대비증감 (누계기준) | | FY2010 (추정) |
|----------------------------|---------------|----------------|---------------|----------------|---------------|----------------|------------------|-------------|----------------|
| | 9월 | 누계 (1~9월) | 9월 | 누계 (1~9월) | 9월 (1~9월) | 누계 | 변동분 | % | |
| I. 조세수입 | 20,672 | 171,088 | 20,162 | 164,480 | 19,394 | 158,813 | -5,667 | -3.4 | 211,887 |
| 공통세: | 18,883 | 141,377 | 17,284 | 132,125 | 17,088 | 130,546 | -1,579 | -1.2 | 171,884 |
| 소득세 및 법인세 | 11,092 | 69,597 | 9,859 | 61,001 | 9,190 | 59,533 | -1,468 | -2.4 | 73,391 |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 4,465 | 41,802 | 4,274 | 39,641 | 4,047 | 37,457 | -2,184 | -5.5 | 53,083 |
| 소득세(연말정산분) | 3,782 | 9,759 | 3,340 | 8,008 | 3,558 | 9,841 | 1,833 | 22.9 | 10,179 |
| 소득세(분리과세분) | 202 | 6,560 | 163 | 5,508 | 228 | 5,490 | -18 | -0.3 | 5,343 |
|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 279 | 4,648 | 265 | 4,485 | 160 | 3,060 | -1,425 | -31.8 | 5,060 |
| 법인세 | 2,364 | 6,828 | 1,124 | 2,666 | 1,195 | 3,684 | 1,018 | 38.2 | 3,595 |
| 부가가치세 | 64,728 | 71,053 | 8,116 | 70,519 | 7,881 | 70,333 | -186 | -0.3 | 97,274 |
| 수입부가가치세 | -11 | 727 | 1 | 605 | 17 | 679 | 74 | 12.2 | 1,219 |
| 에너지세 | 3,444 | 24,045 | 3,523 | 24,718 | 3,506 | 24,213 | -505 | -2.0 | 39,400 |
| 담배세 | 1,148 | 9,463 | 1,073 | 9,424 | 1,175 | 9,397 | -27 | -0.3 | 13,590 |
|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 1,443 | 9,754 | 1,243 | 8,886 | 1,273 | 8,571 | -315 | -3.5 | 10,950 |
| 보험세 | 496 | 8,568 | 510 | 8,597 | 539 | 8,665 | 68 | 0.8 | 10,450 |
| 전기세 | 487 | 4,605 | 536 | 4,711 | 557 | 4,631 | -80 | -1.7 | 6,350 |
| 자동차세 | - | - | 668 | 1,907 | 641 | 6,592 | 4,685 | 245.7 | 8,240 |
| 주세 | 171 | 1,595 | 170 | 1,561 | 166 | 1,455 | -106 | -6.8 | 2,082 |
| 커피세 | 81 | 721 | 79 | 722 | 87 | 747 | 25 | 3.5 | 1,010 |
| 추가 주정부 교부금 | -3,834 | -11,093 | -3,354 | -10,245 | -3,383 | -9,731 | 514 | -5.0 | -12,694 |
|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 -905 | -10,452 | -919 | -8,694 | -1,561 | -13,326 | -4,632 | 53.3 | -22,030 |
|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 -221 | -2,840 | -118 | -1,519 | -153 | -1,379 | 140 | -9.2 | -1,930 |
|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 -4,561 | -5,006 | -564 | -5,081 | -573 | -5,158 | -77 | 1.5 | -6,877 |
|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 - | 0 | -2,285 | 0 | -6,744 | -4,459 | 195.1 | -8,992 |
| II. 기타 수입 | 19,112 | 21,124 | 1,194 | 23,517 | 1,215 | 22,416 | -1,101 | -4.7 | 27,037 |
| 경제활동 수입 | 10 | 4,218 | 157 | 4,219 | 13 | 4,132 | -87 | -2.1 | 4,279 |
| 이자수입 | 27 | 584 | 14 | 495 | 34 | 289 | -206 | -41.6 | 395 |
|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 83 | 3,266 | 60 | 3,323 | 26 | 3,363 | 40 | 1.2 | 4,147 |
| 총 재정수입 | 21,676 | 192,212 | 21,356 | 187,996 | 20,610 | 181,230 | -6,766 | -3.6 | 238,924 |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8~9월, 2009.8~9월, 2010.8~9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9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121억유로(5.5%) 증가한 약 2,307억유로
 -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및 전쟁배상금 지출이 전년 대비 152억유로(13.6%) 증가하여 총재정지출 증가를 주도

- (참고) 204억유로 규모 경기부양책(2009년~2011년) 중 2010년 9월까지 102억유로 집행
 - 배기가스 기준 총족 신차구입 보조금(car-scraping bonus)에 49억유로, 주 및 지방정부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약 36억유로, 연방정부의 투자에 약 14억유로 집행
 - 2010년 6월 집행 실적에 비해 신차구입 보조금은 약 1억유로, 미래지향적 투자 약 12억유로, 연방정부 투자 약 4억유로 증가

SECTION 3 >>

〈표 3-V-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 구분 | FY2008 | | FY2009 | | FY2010 | | 전년대비증감 (누계기준) | | FY2010 (추정) |
|--|---------------|----------------|---------------|----------------|---------------|----------------|------------------|-------------|----------------|
| | 9월 | 누계 (1~9월) | 9월 | 누계 (1~9월) | 9월 | 누계 (1~9월) | 변동분 | % | |
| 일반공공서비스 | 3,676 | 36,660 | 4,123 | 38,889 | 3,959 | 38,991 | 102 | 0.3 | 54,219 |
| 경제협력 및 개발 | 257 | 4,012 | 281 | 4,313 | 364 | 4,246 | -67 | -1.6 | 6,000 |
| 국방 | 2,231 | 21,764 | 2,851 | 23,047 | 2,351 | 23,046 | -1 | 0.0 | 31,188 |
| 연방행정 | 492 | 4,412 | 496 | 4,679 | 457 | 4,454 | -225 | -4.8 | 6,258 |
| 세무행정 | 275 | 2,289 | 330 | 2,654 | 304 | 2,706 | 52 | 2.0 | 3,944 |
|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 1,130 | 8,693 | 1,329 | 9,785 | 1,050 | 9,733 | -52 | -0.5 | 15,402 |
|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 80 | 905 | 73 | 1,021 | 90 | 1,057 | 36 | 3.5 | 1,382 |
| R&D | 768 | 4,653 | 905 | 5,281 | 568 | 5,242 | -39 | -0.7 | 9,124 |
|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 11,405 | 110,321 | 12,640 | 111,473 | 12,307 | 126,664 | 15,191 | 13.6 | 173,074 |
| 사회보장 | 6,219 | 61,869 | 6,281 | 62,518 | 6,417 | 63,979 | 1,461 | 2.3 | 78,088 |
| 실업보험 | 632 | 5,688 | 510 | 510 | 0 | 7,927 | 7,417 | 1454.3 | 7,927 |
| 기초실업급여 | 2,974 | 25,758 | 3,048 | 26,671 | 2,895 | 26,897 | 226 | 0.8 | 38,311 |
| :실업급여 II | 1,819 | 16,568 | 1,912 | 16,927 | 1,811 | 17,076 | 149 | 0.9 | 23,900 |
| 실업급여 II, 주택 및 난방보조 | 326 | 2,936 | 322 | 2,651 | 245 | 2,440 | -211 | -8.0 | 3,400 |
| 주거보조 | 37 | 686 | 71 | 582 | 71 | 673 | 91 | 15.6 | 791 |
| 육아양육비 | 393 | 3,725 | 382 | 3,420 | 377 | 3,488 | 68 | 2.0 | 4,485 |
|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 207 | 1,847 | 190 | 1,682 | 176 | 1,550 | -132 | -7.8 | 1,908 |
| 보건, 환경, 체육 | 67 | 637 | 76 | 726 | 72 | 738 | 12 | 1.7 | 1,414 |
|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 91 | 958 | 102 | 1,010 | 128 | 1,200 | 190 | 18.8 | 2,034 |
| 주택 | 46 | 728 | 54 | 813 | 81 | 960 | 147 | 18.1 | 1,286 |
|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 250 | 4,065 | 323 | 3,733 | 301 | 3,766 | 33 | 0.9 | 7,100 |
| 지역발전 | 65 | 518 | 60 | 435 | 52 | 410 | -25 | -5.7 | 684 |
| 석탄채굴 | 0 | 1,816 | 0 | 1,375 | 0 | 1,319 | -56 | -4.1 | 1,351 |
| 보증 | 29 | 443 | 61 | 386 | 37 | 514 | 128 | 33.2 | 2,050 |
| 교통, 통신 | 810 | 7,321 | 926 | 7,856 | 769 | 7,340 | -516 | -6.6 | 12,351 |
|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 521 | 3,697 | 613 | 4,095 | 547 | 3,710 | -385 | -9.4 | 6,335 |
|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 1,371 | 11,588 | 1,472 | 11,267 | 1,448 | 11,550 | 283 | 2.5 | 16,374 |
| 연방 철도기금 | 477 | 2,801 | 486 | 3,847 | 456 | 3,737 | -110 | -2.9 | 5,330 |
|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 319 | 2,049 | 374 | 2,739 | 386 | 2,758 | 19 | 0.7 | 4,328 |
| 금융 일반 | 1,344 | 36,552 | 1,191 | 33,870 | 789 | 30,712 | -3,158 | -9.3 | 37,532 |
| 이자지출 | 1,284 | 35,561 | 1,102 | 32,837 | 704 | 29,813 | -3,024 | -9.2 | 36,751 |
| 총재정지출 | 20,143 | 216,794 | 22,182 | 218,608 | 20,822 | 230,693 | 12,085 | 5.5 | 319,500 |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8~9월, 2009.8~9월, 2010.8~9월

4. 국가채무 동향 (8월 말 기준)

- 2010.8.31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조 930억유로를 기록
 - 전년에 비해 물가연동국채 90억유로(36.0%), 연방재무부중기채권 220억유로(19.0%), 특별연방채권 180억유로(10.5%) 증가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약 6,200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약 253억유로(4.2%) 증가

〈표 3-V-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 구 분 | '08.08.31 | '09.08.31 | '10.08.31 | 전년대비 증감 | |
|---|----------------|------------------|------------------|---------------|------------|
| | | | | 변동분 | % |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 22,000 | 25,000 | 34,000 | 9,000 | 36.0 |
| 연방채권(Federal bonds) ¹⁾ | 593,468 | 594,718 | 619,986 | 25,268 | 4.2 |
|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 169,000 | 172,000 | 190,000 | 18,000 | 10.5 |
|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 9,568 | 9,427 | 9,196 | -231 | -2.5 |
|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 115,000 | 116,000 | 138,000 | 22,000 | 19.0 |
|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 35,475 | 109,502 | 84,839 | -24,663 | -22.5 |
|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 ²⁾ | 1,914 | 1,545 | 689 | -856 | -55.4 |
|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 - | 2,918 | 2,086 | -832 | -28.5 |
|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 14,266 | 12,935 | 12,344 | -591 | -4.6 |
| Treuhand medium-term notes | 205 | 51 | 51 | 0 | 0.0 |
|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 - | - | 1,830 | - | - |
| 합계 | 961,298 | 1,044,097 | 1,093,020 | 48,923 | 4.7 |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9월, 2009,9월, 2010,9월

VI

캐나다 (2010년 8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4월~8월까지 재정적자는 약 135억캐나다달러(CAD)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2억 달러(42.9%) 감소
 - 경기부양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따른 적자는 70억CAD 이상으로, 총 재정적자액의 약 51.9%를 차지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7%(58억CAD) 증가한 928억CAD으로, 이는 비거주자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
 - 프로그램지출은 이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보다 4.3%(43억CAD) 감소한 936억 CAD이며,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0.7%(1억CAD) 감소한 127억CAD

〈표 3-V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CAD,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 |
|-------------------|-----------|--------------|-----------|--------------|-----------|--------------|-------------------|-------|
|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변동분 | % |
| 예산(발생주의) | | | | | | | | |
| 재정수입 | 17,112 | 96,969 | 15,287 | 86,991 | 17,203 | 92,798 | 5,807 | 6.7 |
| 재정지출 | | | | | | | | |
| 프로그램 지출 | -16,164 | -81,979 | -17,970 | -97,847 | -20,517 | -93,593 | 4,254 | -4.3 |
| 이자지출 | -2,811 | -13,905 | -2,659 | -12,812 | -2,496 | -12,718 | 94 | -0.7 |
| 재정수지(a) | -1,863 | 1,085 | -5,342 | -23,668 | -5,810 | -13,513 | 10,155 | -42.9 |
| 예산외(b) | 2,536 | -20,705 | 62 | -21,845 | 48 | -21,764 | 81 | -0.4 |
| 필요/잉여 자원규모(a+b=c) | 673 | -19,620 | -5,280 | -45,513 | -5,762 | -35,277 | 10,236 | -22.5 |
| 순재원조달 규모(d) | 3,396 | 17,600 | 5,219 | 25,015 | 10,435 | 19,655 | -5,360 | -21.4 |
| 순현금수지 변화분(c+d) | 4,069 | -2,020 | -61 | -20,498 | 4,673 | -15,622 | 4,876 | -23.8 |
| 기말 현금수지 | | 9,223 | | 24,533 | | 10,001 | -14,532 | -59.2 |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8월, 2010.8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8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7%(58억CAD) 증가한 928억CAD
 - (소득세) 개인소득세(3.9%, 17억CAD) 및 법인세(12.0%, 10억CAD)의 증가분이 비거주자 소득세(12.4%, 3억CAD) 감소분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4.6%(25억CAD) 증가
 - (소비세) GST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25억CAD, 27.7%)하고, 그 외 에너지세와 수입관세 및 기타 소비세도 모두 증가하여, 총소비세는 전년동기 대비 19.5%(29억CAD) 증가
 - (고용보험료 및 기타)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3억CAD)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2억CAD) 증가

〈표 3-V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CAD,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8월 | |
|---------------------------------|---------------|---------------|---------------|---------------|---------------|---------------|---------------|------------|
|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변동분 | % |
| 조세수입 | | | | | | | | |
| 소득세 | 10,873 | 62,844 | 9,183 | 54,912 | 10,633 | 57,422 | 2,510 | 4.6 |
| 개인소득세 | 9,038 | 46,790 | 8,544 | 44,111 | 9,143 | 45,831 | 1,720 | 3.9 |
| 법인세 | 1,277 | 13,769 | 273 | 8,733 | 1,171 | 9,779 | 1,046 | 12.0 |
| 비거주자 | 558 | 2,285 | 366 | 2,068 | 319 | 1,812 | -256 | -12.4 |
| 소비세 | 3,166 | 17,256 | 3,138 | 14,755 | 3,388 | 17,639 | 2,884 | 19.5 |
| GST (Goods and services tax) | 1,846 | 11,247 | 1,955 | 9,059 | 2,067 | 11,564 | 2,505 | 27.7 |
| 에너지세 | 436 | 2,076 | 442 | 2,037 | 455 | 2,115 | 78 | 3.8 |
| 수입관세 | 370 | 1,722 | 313 | 1,512 | 350 | 1,521 | 9 | 0.6 |
| 기타소비세 | 514 | 2,211 | 428 | 2,147 | 516 | 2,439 | 292 | 13.6 |
| 조세수입 소계 | 14,039 | 80,100 | 12,321 | 69,667 | 14,021 | 75,061 | 5,394 | 7.7 |
| 고용보험료 | 1,129 | 7,398 | 964 | 7,396 | 1,156 | 7,649 | 253 | 3.4 |
| 기타 수입 | 1,944 | 9,471 | 2,002 | 9,928 | 2,026 | 10,088 | 160 | 1.6 |
| 총재정수입 | 17,112 | 96,969 | 15,287 | 86,991 | 17,203 | 92,798 | 5,807 | 6.7 |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8월, 2010.8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8월(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9%(43억CAD) 감소한 1,063억CAD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4.3%(43억CAD) 감소한 936억CAD를 기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인급여 및 자녀수당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급여의 감소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1%(3400만CAD) 감소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은 CHT 및 CST 등의 증가로 4.8%(10억CAD) 증가
 -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있었던 기타 이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7.7%(51억CAD) 감소
 - 기타 프로그램 지출은 국방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5%(1.5억CAD) 감소
 -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0.7%(1억CAD) 감소한 127억CAD를 기록

<표 3-VI-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CAD,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 |
|---|-----------|--------------|-----------|--------------|-----------|--------------|-------------------|-------|
|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8월 | 누계 (4~8월) | 변동분 | % |
| 이전지출 | | | | | | | | |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 | | | | | | | |
| 노인급여 | 2,723 | 13,525 | 2,874 | 14,284 | 2,975 | 14,642 | 358 | 2.5 |
| 고용보험급여 | 1,132 | 5,835 | 2,010 | 8,984 | 1,928 | 8,393 | -591 | -6.6 |
| 자녀수당 | 956 | 5,043 | 993 | 5,127 | 1,014 | 5,326 | 199 | 3.9 |
| 소계 | 4,811 | 24,403 | 5,877 | 28,395 | 5,917 | 28,361 | -34 | -0.1 |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 | | | | | | | |
|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 | | | | | | | |
| CHT(Canada Health Transfer) | 1,886 | 9,429 | 2,039 | 10,198 | 2,173 | 10,803 | 605 | 5.9 |
| CST(Canada Social Transfer) | 880 | 4,399 | 906 | 4,600 | 932 | 4,658 | 58 | 1.3 |
| 소계 | 2,766 | 13,828 | 2,945 | 14,798 | 3,105 | 15,461 | 663 | 4.5 |
| 재정이전 | 1,237 | 6,623 | 1,320 | 7,079 | 1,833 | 7,636 | 557 | 7.9 |
| 지역사회 | 6 | 481 | 0 | 957 | 0 | 858 | -99 | -10.3 |
| Quebec주CHT, CST운영비 용대체지급 ¹⁾ | -254 | -1,166 | -236 | -1,143 | -246 | -1,229 | -86 | 7.5 |
| 소계 | 3,755 | 19,766 | 4,029 | 21,691 | 4,692 | 22,726 | 1,035 | 4.8 |
| 기타 이전지출 | | | | | | | | |
| 농업 및 농식품 | 107 | 412 | 216 | 563 | 355 | 676 | 113 | 20.1 |
| 외교·통상 | 240 | 1,136 | 218 | 1,220 | 285 | 1,369 | 149 | 12.2 |
| 보건 | 96 | 881 | 77 | 1,049 | 191 | 1,104 | 55 | 5.2 |
|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 104 | 924 | 178 | 1,240 | 153 | 1,369 | 129 | 10.4 |
|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 343 | 2,006 | 330 | 2,150 | 736 | 2,620 | 470 | 21.9 |
| 산업 | 240 | 808 | 287 | 889 | 330 | 983 | 94 | 10.6 |
| 기타 | 800 | 3,654 | 831 | 11,310 | 1,411 | 5,195 | -6,115 | -54.1 |
| 소계 | 1,930 | 9,821 | 2,137 | 18,421 | 3,461 | 13,316 | -5,105 | -27.7 |
| 이전지출 소계 | 10,496 | 53,990 | 12,043 | 68,507 | 14,070 | 64,403 | -4,104 | -6.0 |
| 기타 프로그램 지출 | | | | | | | | |
| 국영기업 | 542 | 3,286 | 704 | 3,991 | 863 | 4,360 | 369 | 9.2 |
| 국방 | 1,706 | 7,279 | 1,618 | 7,673 | 1,792 | 6,983 | -690 | -9.0 |
| 부처별 사업비 | 3,420 | 17,424 | 3,605 | 17,676 | 3,792 | 17,847 | 171 | 1.0 |
|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 5,668 | 27,989 | 5,927 | 29,340 | 6,447 | 29,190 | -150 | -0.5 |
| 총프로그램 지출 | 16,164 | 81,979 | 17,970 | 97,847 | 20,517 | 93,593 | -4,254 | -4.3 |
| 이자지출 | 2,811 | 13,905 | 2,659 | 12,812 | 2,496 | 12,718 | -94 | -0.7 |
| 총재정지출 | 18,975 | 95,884 | 20,629 | 110,659 | 23,013 | 106,311 | -4,348 | -3.9 |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8월, 2010.8월

4. 국가채무 동향¹⁰⁾

- 2010.3.31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채무는 5,107억CAD로 전년 대비 10.1% 증가
 - 총부채는 8,761억CAD로 작년 대비 6.3% 증가
 - 시장성채권 및 이자부 부채가 각각 727억AD, 525CAD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 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5,747억CAD

〈표 3-VI-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CAD, %)

| 구분 | 08.3.31 (누계) | 09.3.31 (누계) | 10.3.31 (누계) | 전년대비 증감 | |
|-----------------------|-----------------|-----------------|-----------------|---------------|-------------|
| | | | | 변동분 | % |
| 부채 | | | | | |
| 미지급 부채 계정 | 110,463 | 113,999 | 113,443 | -556 | -0.5 |
| 이자부 부채 | | | | | |
| 만기 전 채무 | | | | | |
| 자국통화표시 채권 | | | | | |
| 시장성 채권 | 253,550 | 295,186 | 367,877 | 72,691 | 24.6 |
| Treasury bills | 116,936 | 192,275 | 175,675 | -16,600 | -8.6 |
| Retail debt | 13,068 | 12,532 | 11,860 | -672 | -5.4 |
| 기타 | 1,042 | 523 | 452 | -71 | -13.6 |
| 소계 | 384,596 | 500,516 | 555,864 | 55,348 | 11.1 |
| 외국통화표시 채권 | 9,498 | 10,381 | 8,242 | -2,139 | -20.6 |
| 이중통화 스왑 재평가 계정 | -1,420 | 3,690 | -4,233 | -7,923 | -214.7 |
|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 -6,213 | -4,751 | -5,092 | -341 | 7.2 |
|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 4,236 | 4,184 | 4,163 | -21 | -0.5 |
| 만기 전 채무 소계 | 390,697 | 514,020 | 558,944 | 44,924 | 8.7 |
| 연금 및 기타 채무 | | | | | |
| 공공부문 연금 | 137,371 | 139,909 | 143,113 | 3,204 | 2.3 |
|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 47,901 | 50,311 | 54,122 | 3,811 | 7.6 |
| 기타 채무 | 5,895 | 5,923 | 6,461 | 538 | 9.1 |
|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 191,167 | 196,143 | 203,696 | 7,553 | 3.9 |
| 이자부 부채 소계 | 581,864 | 710,163 | 762,640 | 52,477 | 7.4 |
| 총 부채 | 692,327 | 824,162 | 876,083 | 51,921 | 6.3 |
| 금융자산 | | | | | |
| 현금 및 미수금 계정 | 82,878 | 122,147 | 103,223 | -18,924 | -15.5 |
| 외국환 계정 | 42,299 | 51,709 | 46,614 | -5,095 | -9.9 |
| 차관, 투자 및 선금금(순 급여) | 50,869 | 125,093 | 151,531 | 26,438 | 21.1 |
| 총 금융자산 | 176,046 | 298,949 | 301,368 | 2,419 | 0.8 |
| 순채무 | 516,281 | 525,213 | 574,715 | 49,502 | 9.4 |
| 비재정자산 | 58,644 | 61,503 | 64,049 | 2,546 | 4.1 |
|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 457,637 | 463,710 | 510,666 | 46,956 | 10.1 |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3월, 2010.3월

10) 캐나다 채무통계는 2010년 3월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음

VII

호주 (2010년 8월 기준, FY2009-10: 2009.7~2010.6)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7~2010.8월 예산적자는 약 113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16.8%(78억호주달러)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6%(51억호주달러)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13.6%(72억호주달러) 증가하였기 때문
 - FY2010-11 연간 재정수입은 약 3,218억호주달러, 지출은 약 3,546억호주달러로 전망

- 미래기금(Future Fund)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278.6%(124억호주달러) 증가한 127억호주달러

- 2010년 8월(누계기준) 순채무는 548억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15.1% 증가
 - 총자산은 3,104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9%(125억호주달러) 감소하였고, 총부채는 3,685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23.3%(698억호주달러) 증가

SECTION 3 >>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연간 전망치 |
|--------------------------|---------------|---------------------------|---------------|---------------------------|----------------|---------------------------|---------------|---------------|----------------|
| | 8월 | 누계 (2008.7~ 2008.8) | 8월 | 누계 (2009.7~ 2009.8) | 8월 | 누계 (2010.7~ 2010.8) | 누계기준 | % | FY 2010-11 |
| 수입 | 20,112 | 53,557 | 23,086 | 53,021 | 18,473 | 47,923 | -5,098 | -9.6 | 321,822 |
| 지출 | 22,812 | 48,620 | 25,889 | 52,871 | 28,273 | 60,050 | 7,179 | 13.6 | 354,644 |
| 순운영수지 | -2,700 | 4,937 | -2,802 | 149 | -9,800 | -12,127 | -12,276 | -8,238.9 | -32,823 |
| 순자본투자 | -77 | -201 | -41 | 439 | 799 | 571 | 132 | 30.1 | 6,775 |
| 재정수지 ¹⁾ | -2,622 | 5,138 | -2,761 | -290 | -10,599 | -12,698 | -12,408 | 4,278.6 | -39,598 |
| 예산수지²⁾ | -5,201 | 1,675 | -4,563 | -3,581 | -10,594 | -11,346 | -7,765 | 216.8 | -40,756 |
| 총자산 | -8,184 | 276,975 | - | 322,839 | - | 310,366 | -12,473 | -3.9 | 339,761 |
| 총부채 | -4,706 | 202,402 | - | 298,778 | - | 368,529 | 69,751 | 23.3 | 396,231 |
| 순채무 | 6,120 | -41,803 | - | -10,638 | - | 54,798 | 65,436 | -615.1 | 78,520 |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수입-지출) - 순자본투자 (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8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7~2010.8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 대비 9.6%(51억호주달러) 감소한 479억호주달러
 - 소득세는 원천징수세 증가(7.7%, 15억호주달러) 및 환급금 감소(17.9%, 18억호주달러) 등 개인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5억호주달러) 증가
 - 개인소득세 중 기타개인소득세는 38.7%(26억호주달러) 감소하였고, 기타소득세도 2.1%(2.8억호주달러) 감소
 - 간접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 및 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3.6%(5억호주달러) 증가
 - 배당소득이 93.5%(59억호주달러) 크게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5.0%(61억호주달러) 감소

SECTION 3 >>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연간 전망치 |
|----------------------------|---------------|---------------|---------------|---------------|---------------|---------------|---------------|--------------|----------------|
| | 8월 | 누계 (7월~8월) | 8월 | 누계 (7월~8월) | 8월 | 누계 (7월~8월) | 누계 기준 | % | FY 2010-11 |
| 총재정수입 | 20,112 | 53,557 | 23,086 | 53,021 | 18,473 | 47,923 | -5,098 | -9.6 | 321,822 |
| 조세수입 | 17,123 | 49,099 | 15,053 | 43,689 | 16,503 | 44,660 | 971 | 2.2 | 302,456 |
| 소득세 | 10,927 | 35,838 | 8,714 | 29,755 | 9,872 | 30,218 | 463 | 1.6 | 216,630 |
| 개인소득세 | 7,652 | 17,872 | 7,499 | 16,464 | 8,057 | 17,207 | 743 | 4.5 | 137,070 |
| 원천징수 | 10,120 | 20,601 | 10,033 | 19,959 | 11,182 | 21,486 | 1,527 | 7.7 | 130,620 |
| 기타 개인소득세 | 1,726 | 5,269 | 2,798 | 6,784 | 3,121 | 4,161 | -2,623 | -38.7 | 31,530 |
| 환급 | 4,194 | 7,998 | 5,332 | 10,279 | 6,246 | 8,441 | -1,838 | -17.9 | 25,080 |
| 기타소득세 | 3,275 | 17,966 | 1,214 | 13,292 | 1,815 | 13,011 | -281 | -2.1 | 216,630 |
| 법인세 | 1,960 | 13,955 | 682 | 10,677 | 720 | 10,616 | -61 | -0.6 | 66,520 |
| 국민연금기금 | 644 | 2,693 | 289 | 1,583 | 751 | 1,381 | -202 | -12.8 | 7,170 |
| 석유세 | 630 | 630 | 175 | 214 | 293 | 301 | 87 | 40.7 | 1,860 |
| 간접급여세 | 42 | 689 | 69 | 818 | 51 | 713 | -105 | -12.8 | 4,010 |
| 간접세 | 6,196 | 13,261 | 6,339 | 13,934 | 6,632 | 14,442 | 508 | 3.6 | 85,826 |
| 재화·서비스세(GST) ¹⁾ | - | - | 3,472 | 8,231 | 3,602 | 8,533 | 302 | 3.7 | 50,000 |
| 소비세 | 1,649 | 3,524 | 2,193 | 4,068 | 2,283 | 4,269 | 201 | 4.9 | 25,230 |
| 관세 | 490 | 1,034 | 475 | 990 | 472 | 928 | -62 | -6.3 | 6,770 |
| 기타 간접세 | 4,058 | 8,702 | 200 | 645 | 276 | 711 | 66 | 10.2 | 3,826 |
| 세외수입²⁾ | 2,989 | 4,457 | 8,033 | 9,332 | 1,969 | 3,264 | -6,068 | -65.0 | 19,366 |
| 재화 및 서비스매출 | 504 | 963 | 700 | 1,219 | 628 | 1,266 | 47 | 3.9 | 8,047 |
| 이자 | 599 | 1,209 | 498 | 693 | 401 | 749 | 56 | 8.1 | 5,155 |
| 배당소득 | 1,495 | 1,508 | 6,334 | 6,350 | 390 | 412 | -5,938 | -93.5 | 1,326 |
| 기타 | 391 | 777 | 501 | 1,070 | 550 | 837 | -233 | -21.8 | 4,838 |

주: 1) 재화·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함.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8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8월(누계)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3.6%(72억호주달러) 증가한 601억호주달러
 - 교육(16억호주달러, 30.2%)과 사회보장 및 복지(24억호주달러, 12.4%)부문 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임
 - 교통 및 통신(2.5억호주달러, 41.0%), 연료 및 에너지(1.7억호주달러, 13.1%)부문은 지출이 감소하였음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 구분 | FY2008-09 | | FY2009-10 | | FY2010-11 | | 전년대비 증감 | | 연간 전망치 |
|-------------|---------------|---------------------------|---------------|---------------------------|---------------|---------------------------|--------------|-------------|----------------|
| | 8월 | 누계 (2008.7~ 2008.8) | 8월 | 누계 (2009.7~ 2009.8) | 8월 | 누계 (2010.7~ 2010.8) | 누계 기준 | % | FY 2010-11 |
| 공공서비스 | 1,342 | 2,566 | 773 | 2,059 | 1,389 | 2,817 | 758 | 36.8 | 20,137 |
| 국방 | 1,524 | 3,148 | 1,879 | 3,526 | 2,041 | 3,489 | -37 | -1.0 | 21,000 |
| 공공질서 및 안전 | 280 | 617 | 112 | 494 | 275 | 588 | 94 | 19.0 | 3,878 |
| 교육 | 1,144 | 3,600 | 2,260 | 5,260 | 1,500 | 6,846 | 1,586 | 30.2 | 32,996 |
| 의료 | 3,293 | 7,595 | 4,301 | 8,515 | 4,675 | 9,077 | 562 | 6.6 | 56,880 |
| 사회보장 및 복지 | 8,392 | 17,105 | 9,364 | 19,348 | 10,744 | 21,742 | 2,394 | 12.4 | 114,961 |
|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 557 | 763 | 574 | 803 | 504 | 902 | 99 | 12.3 | 5,432 |
| 여가 및 문화 | 108 | 408 | 224 | 468 | 223 | 461 | -7 | -1.5 | 3,246 |
| 연료 및 에너지 | 458 | 854 | 738 | 1,269 | 603 | 1,103 | -166 | -13.1 | 7,607 |
| 농업, 산림, 어업 | 165 | 358 | 164 | 299 | 237 | 375 | 76 | 25.4 | 3,587 |
| 광업 | 186 | 275 | 195 | 328 | 207 | 354 | 26 | 7.9 | 1,990 |
| 교통 및 통신 | 357 | 577 | 486 | 605 | 293 | 357 | -248 | -41.0 | 4,932 |
| 기타 경상비 | 548 | 1,098 | 314 | 937 | 766 | 1,358 | 421 | 44.9 | 9,150 |
| 기타 목적 | 4,456 | 9,656 | 4,505 | 8,961 | 4,817 | 10,581 | 1,620 | 18.1 | 68,846 |
| 공공채무 지급이자 | 310 | 628 | 455 | 885 | 687 | 1,369 | 484 | 54.7 | 9,606 |
| 연금 지급이자 | 176 | 353 | 204 | 759 | 584 | 1,168 | 409 | 53.9 | 7,065 |
| 정부간 이전 | 3,966 | 8,669 | 3,755 | 7,226 | 3,546 | 8,044 | 818 | 11.3 | 50,403 |
| 자연재해 구조비용 | 0 | 1 | 91 | 91 | 0 | 0 | -91 | -100.0 | 577 |
| 긴급예비비1 | 4 | 5 | 0 | 0 | 0 | 0 | 0 | | 1,195 |
| 총지출 | 22,812 | 48,620 | 25,889 | 52,871 | 28,273 | 60,050 | 7,179 | 13.6 | 354,644 |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년도 8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8월말 일반정부 순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341.7%(822억호주달러) 감소한 -582억 호주달러 기록
 - 자산은 125억호주달러(3.9%) 감소하였고, 부채는 698억호주달러(23.3%)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
 - － 부채 중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부채 규모는 1,748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6.2%(464억호주달러) 증가

- 2010년 8월말 순채무 규모는 548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15.1%(654억호주달러) 크게 증가(채무구조 악화)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 구분 | FY2008-09 | FY2009-10 | FY2010-11 | 전년대비 증감 | | 연간 전망치 |
|-------------------------|------------|------------|------------|---------|--------|------------|
| | 2008.8.31. | 2009.8.31. | 2010.8.31. | 증감액 | % | 2011.6.30. |
| 자산 | 276,975 | 322,839 | 310,366 | -12,473 | -3.9 | 339,761 |
| 금융자산 | 187,847 | 229,476 | 209,227 | -20,249 | -8.8 | 235,607 |
| 비금융자산 | 89,129 | 93,364 | 101,139 | 7,775 | 8.3 | 104,154 |
| 부채 | 202,402 | 298,778 | 368,529 | 69,751 | 23.3 | 396,231 |
| 이자발생부채 | 65,408 | 128,370 | 174,786 | 46,416 | 36.2 | 220,742 |
| 예치금 | 333 | 396 | 211 | -185 | -46.7 | 230 |
| 정부채권 | 57,250 | 115,169 | 163,264 | 48,095 | 41.8 | 209,436 |
| 차입 | 7,356 | 11,907 | 10,484 | -1,423 | -12.0 | 10,156 |
| 기타 | 470 | 898 | 827 | -71 | -7.9 | 919 |
| 의무지급금 | 136,994 | 170,408 | 193,743 | 23,335 | 13.7 | 175,489 |
| 순자산¹⁾ | 74,573 | 24,061 | -58,162 | -82,223 | -341.7 | -56,470 |
| 순금융자산 ²⁾ | -14,556 | -69,302 | -159,302 | -90,000 | 129.9 | -160,624 |
| 순금융부채 ³⁾ | 36,344 | 98,909 | 182,716 | 83,807 | 84.7 | 188,770 |
| 순채무⁴⁾ | -41,803 | -10,638 | 54,798 | 65,436 | 615.1 | 78,520 |

주: 1)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2)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 (비금융자산 제외)

3)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4)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년도 8월 보고서